

다. 홍대무변(鴻大無變)한 성려(聖慮)에 실로 감사하고 감격해 마지않으며, 오직 충성으로써 천황폐하의 마음에 보답해드릴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나 현하 조선의 국민교육 사정은 그 확충계획의 미완성으로 미취학 아동이 다수임에 비추어 다소 불안감이 없지 않습니다. 생각건대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과 실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반도 청소년에게 송고한 병역의 본의와 황도정신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광휘한 장래를 개척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방의 대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날에 대비하시길 갈망합니다.

2. 중의원의원선거법의 실시

시정 이래 33년간 역대 위정당국의 최선의 지도하에 우리 반도인이 황국신민이란 사실을 들어 응당 노력해온 바, 만주사변을 계기로 국민적 자각이 더욱 현저해졌고, 다시 지나사변으로 더 한층 확대되었으며, 내선일체에 대한 천황의 뜻을 익찬하여 받들고자 하는 애국적 지성은 실로 열렬합니다. 특히 대동아전쟁 발발 후에 반도인의 애국열은 일대 비약을 이루어 내지인과 똑같이 일신을 군국에 받칠 것을 학수고대하는 자 적지 않습니다. 명실공히 황국신민으로서 지성을 다하려는 기운이 팽배하여 반도 방방곡곡에 넘쳐흐르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번에 중앙정부가 반도인에게 징병제 실시 방침을 결정한 까닭도 이에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의 민중 실정에 비추어 차제에 만난을 물리치고 조선에 중의원의원의 선거법을 조속히 실시하여 2400만인으로 하여금 황국신민도의 실천 기회와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염원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출전 : 德山南鎮 參議, 『第23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2년〉

13) 참의 이갑용(大田一夫)

1. 일본정신의 침투 촉진

반도 민중은 종래부터 조상승배 관념이 두텁고, 또한 경신(敬神)의 강한 신앙심은 타에 뒤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신앙심을 신사참배의 관습으로 이끌고, 홍대무변한 황恩(皇恩)에 보답해드릴 일본정신을 침투시켜, 황국신민으로서의 반도 동포의 정신의 정화와 양양을 촉진함은 징병제실시와 국민사상 통일상에 이바지하는 바 크다고 믿습니

다. 그러므로 현재 신사(神社)와 신사(神祠)가 없는 곳은 급속히 이를 건립하고, 더욱 더 경신승조의 염(念)을 훈육하여 항상 호국 영령에 감사는 마음과 필승의 신념을 갖도록 함으로써 국가 목적에 협력케 하는 것은 반도 통치상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중략)

3. 의무교육령 실시의 긴급함

이번에 역사적인 징병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참으로 반도 동포에게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황민화의 내선일체 실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은 경하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징병령 실시와 함께 반도에서도 의무교육령이 시급하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래에 대동아 10억 국민의 지도자의 입장에 서야 할 황국신민인 반도인이 국어의 완전한 해독과 일본정신을 이해습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학식이 없어서는 황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장차 황군으로서 제일선에 서야 할 반도 청소년들에게 군사교육을 받을 정도의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병사의 직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소생은 종래 징병제도 실시 전에 의무교육령을 실시하고 병사로서 국사교육을 받을 정도의 기초 지식을 습득케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징병제 실시 발표를 보기에 이른 금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의무교육 실시는 솔선하여 행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의 실시를 위해서는 제반의 준비와 다큐의 경비가 요구되겠지만 자체들을 대동아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 민중들도 다대한 희생과 간난을 극복해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내선일체의 구현과 일본정신의 체득, 완전한 황민화, 국방 제일선의 병사를 만드는 것 그리고 대동아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도 교육이요, 둘째도 교육이라는 것을.

〈출전 : 大田一夫 參議, 『第23回中権院會議參議答申書』, 1942년〉

14) 참의 최형직(佳山定義)

1. 의무교육제도의 급속실시

병합 이래 33년, 그간 역대 위정당국은 내선의 사이에 혼연일체의 관계를 창조하기 위

해 예의 시설 개선에 힘을 다했다. 민간 역시 보조를 맞추어 누습을 타파하고 내선일체의 이념을 점점 현실하고 있다. 그리하여 반도 민중도 사심을 버리고 봉공하여 폐하의 인민으로서 자각을 철저히 하고 만민보익(萬民輔翼)의 신절(臣節)을 완수하려는 경향이 현저하다. 만주사변을 계기로 하여 지나사변(支那事變)·대동아전쟁 하에 있어서 반도에 늘어나는 애국심의 발로를 돌이켜보건대 명료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가 다르고 현재의 사정 역시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는 관계이다. 내선일체가 아직 완전하게 실시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현재의 시국을 감안해서 하루라도 빨리 내선일체의 결실을 올리고 조국의 정신을 발양하여 일본이 분담해야 할 세계적 대 사명의 일부분을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선일체의 근본전제는 황국신민화에 있다. 때문에 황국신민의 연성은 현재의 긴박한 일로서 황국신민을 연성하는 데 있어서 우선 교육의 보급을 도모하고 민도의 향상을 기하여야 한다.

의무교육제도는 가까운 장래에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당국은 예의 준비중이다. 시국 하에 반도 민정을 감안할 때 징병제도의 실시를 1944년도부터 실행시키는 것을 가장 합당한 생각이라고 본다.

2. 군(郡)을 단위로 하는 법적 지주회 조직과 농사경영의 통제화

현재 전시태세 하에 국책에 순응하여야 할 모든 방면에서 통제해야만 하는 오늘의 실정을 감안해 농사경영의 통제를 등한하게 여기는 것은 진실로 유감스럽다. 원래 각 지주의 영농상황을 보면 그 가운데는 합리적인 경농(經農)에 노력하고 생산확충에 유의하는 지주도 적지 않으나, 많은 사람들이 낡은 태도로 경영에 인순고식(因循姑息)하고 적극적인 개량발달을 기도하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비료의 배급 미곡의 공출 등에도 지장을 초래한 것은 많은 사실이 증명한 바이다. 때문에 현재의 군 농회(農會)를 발전적으로 해소시키고 군을 단위로 10정보 이상의 지주를 전무 망라하여 법적지주회를 조직하고 이 지주회에서 회원의 토지전부를 공동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영농하면 농경지의 적정하고 당국의 농사지도를 단순화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은 개량발달되어 생산은 자연히 확충되고 또 미곡의 통제, 비료배급의 공정, 세금조정 등 모든 점에 편익이 많아진다. 이는 실로 일석이조로서 시국 하에서 가장 적합하고 긴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출전 : 佳山定義 參議, 『第23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2년〉

15) 참의 이승구(三島承一)

현재 반도 민중은 일시동인의 성택을 입에 폐하의 적자로서 순일무구(純一無垢)한 황국신민으로서 욕구를 불태우고 있다. 옛날 지나사변 발발직후 지원병제도의 감행을 매진하고 오늘 또 대동아전쟁 하에 징병제도를 실시결정으로, 청년체력검사, 포로감시원 응모상황 혹은 국방기재, 훌병문안금(恤兵問安金) 등에 나타난 대단한 격증 등 물심양면으로 애국의 적성을 피력하고 있다. 즉 이것을 이하에서 보겠다.

이리하여 현재 반도의 민정에 요구되는 장래 시정 상 고려를 필요로 할 점들이 많이 있다. 팔굉일자(八絃一字)의 조국정신에 의해 우리 황군이 숭고한 희생으로 그 기초를 쌓아갔다. 현재 대 전쟁을 완수하고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성업성취에 있어서 우리 반도 민중은 황국의 일원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책임 완수에 있어 긴급을 요하는 시책의 일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서술하여 답신한다.

1. 내선일체화 왕민정신의 연성(鍊成)

내선일체화 촉진의 방도는 많이 있지만 황민정신의 파악이 그 요점이라고 생각한다.

1) 신사(神社), 신사(神祠)의 보급

숭고한 국체관념과 경신승조(敬神崇祖)의 미풍을 함양하고 황민정신을 체득시키기 위해 신사신사의 보급은 극히 유효한 것이다. 우리 반도 민중들 사이에는 고유한 신앙이라고는 없다. 있으면 기독교 외는 인습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다. 신앙에 의해 기력을 배양하는 것은 극히 긴요하다. 그리하여 신사신사가 원래부터 종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신사상으로 하여 기백을 양상하고 그로 인하여 내선일체화의 첨경이 되어야 신사신사의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2) 황민연성도장(皇民鍊成道場)의 증설

각지에 도장이 설치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 성과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국민 재교육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대에도 필요하다. 특히 현재 세계역사가 일대 전환기에 있는 비상시에 그 필요를 통감한다. 그 중에서 반도의 상황은 교육이 아직 보급되지 않아 일반 대중의 인격연성 등의 기회가 극히 적었음으로 그 기관을 확충하여 유사즉응(有事即應)의 인물을 연성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교육의 보급촉진(국어의 보급)

조선교육기관은 최근 급속히 증설되었다. 그 중에서도 초등교육에 있어서 제2차 확충 계획을 종료하였다. 취학률은 50%를 넘어 더욱 의무교육제 실시를 기획 중에 있다. 참 말로 감사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 반도의 민중은 폐하의 적자로서 황국의 일원으로서 대동아의 지도자로 중책을 완수하는 것은 교육의 보급을 제1의(第一義)로 하는 것은 물론 일시동인의 성택(聖澤)에 의해 곧 실시하게 될 징병제도에 복무함에 있지만, 교육기관의 보급확충은 초미의 급선무라고 믿고 있는 바이다. 하루라도 빨리 기관의 확충정비를 도모하기를 원하는 바이다.

(하략)

〈출전 : 三島承一 參議, 『第23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2년〉

16) 참의 권덕용(田原德龍)

지나사변 발발 아래 이미 만 5년이 지났고 대동아전쟁 발발 후 만 6년 수개월 지났다. 육해공의 황군장병은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충심과 용감함을 다해 후방의 국민 역시 내선일체, 고도국방체제 건설에 일치 협력하여 지금은 대동아공영권 확립의 대사업이 촉착 진척되고, 황군장병에 대한 감사감격과 함께 정전(征戰) 관철에 매진해야 할 이때 반도의 2,400만 민중은 더욱더 자각을 새롭게 하고 국책에 순응하여 총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국 하에서 민정을 감안해 고려해야 할 것을 한두 가지 서술하려고 한다.

1. 내선일체의 강화

1) 국어상용의 철저

일국민이 반드시 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내선일체 역시 국어를 상용함으로써 철저를 기할 수 있다. 특히 조선인도 대동아공영권 여러 민족을 지도하여야 지위에 있다. 더욱이 징병제도의 실시에 따라 국어의 상용은 절실하다. 국민학교 훈도는 수업시간 외에 반드시 국어강습소의 강사로서 각 리(里)에 국어강습소를 설치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어를 가르쳐 습득시킨다. 이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식한다.

2) 내선공학의 촉진 및 내선결혼의 장려

일본인 및 조선인은 원래 동종동근이라는 것을 말 할 나위도 없다. 일한합병 후, 역대의 총독은 정치를 쉽게 폐기 위해 대체로 내선일체라는 데 동경(同慶)하였으나 풍속·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내선간의 일체감이 부족하다. 내선아동의 공학을 촉진시켜 어렸을 때부터 혼을 서로 접촉하여 풍속습관을 상통시키고 내선동화를 도모한다. 또는 내선인의 결혼을 장려하여 그의 혈통을 섞어 진정한 내선일체로 대외진출에 협력하는 것은 시국 하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믿는다.

3) 황도유학(皇道儒學)의 진흥

조선은 예로부터 유교를 숭상하고 또 이것으로 국가를 다스렸다. 소화 14년 말에 유학과 관계가 깊은 유림 200만명의 총의로 조선유도연합회를 조직하고 각 도·군에 걸쳐 황도정신에 기초한 유학의 진흥을 도모해 국책에 대응하는 많은 실시계획을 진행하여 실적을 거두었다. 일반민중이 연합회의 활약을 기대하는 바가 많으면, 황도유학을 더욱 천명해, 백년대계 및 내선동체의 성과를 올리는 것은 시국 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내선차별의 철폐

일본인·조선인은 같은 국민이지만 여러 관계에 의해 시기와 정황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병합 후 이미 33년의 긴 시간을 걸쳐 조선의 육성 및 심전(心田) 개발에 종사함으로써 따라 금일에 와서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게 되고, 1944년부터 징병의 은전(恩典)을 받아 국방의 제일선에 설 수 있어 감격에 마다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내선간에 개재하는 여러 가지 제도상의 차별을 철저하게 폐지해 진정한 일본신민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였다.

(하략)

〈출전 : 田原德龍 參議, 『第23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2년〉

17) 참의 조상옥(古山尙鉉)

1. 의무교육촉진과 학무행정확충

1) 일시동인의 성지 하에서 내선일체의 구현은 반도통치의 근본방침으로 두말할 필요가 없다. 기정방침대로 진행함에 따라 의무교육제도 자연스럽게 완성의 날이 멀지 않음을 확신하지만 현재의 정세는 대동아의 지도자인 대일본국민의 일지체(一枝體)로서 현하와 같은 정도의 요철과 낮은 자질로서는 대동아건설로의 활약을 억제하고 대일본 국민전체의 위신에 큰 영향을 주는 동시에 징병의무 이행상에도 결함과 지장을 가져오는 우려가 있다. 때문에 이 교육문제는 무엇보다도 일단 초미에 급무로서 하루빨리 완성을 촉진해야 한다.

2) 현재 총독부 각 기관 중에서 학무 행정기관을 일별(一瞥)하면 본부 학무국을 비롯해 각도 학무과 내지 부(府) · 군(郡)의 학무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은 막상 모르고 그 외 주요 기관은 제외시킬 만큼 미약하다. 이같은 것은 학무행정운영에 결함과 지장을 일으킴과 동시에 교육지도정신의 취약성을 폭로하는 증거로 되었다. 때문에 금후 빨리 대확충하여 국민교육의 만전을 기대할 바이다.

2. 조선기독교에 대한 대책과 천명

조선기독교는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교도가 30만이나 되는 대단체이다. 이들 교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 · 미인의 선교사에게서 교육을 받아 최근까지 교양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적 신앙은 별도의 문제로 하고 지도자계급 중에는 정치적 민족사상 또는 영 · 미 승배관념이 매우 강한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이 용서할 수 없는 사상도 당국의 장기간 부심선도(腐心善導)의 결과 또 세계 정세 추이에 따라 대전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책에 협력하여 대동아전쟁이 발발이 후부터는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을 크게 깨우치게 된 것은 까지는 국가를 위해 축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후에 어떤 대책으로 대응할 것인가인데, 그 대책이란 것이 과거의 대책 그대로라면 모처럼 후회하고 전환해 국책에 협력하고 있는 교도의 대중 사상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가져올 우려도 있었다. 때문에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나라 국체와 맞지 않는 교리로서 어떻게 하여도 영원히 허락할 수 없는 교리라고 하지 말고 이 시점에서 새롭게 가야할 길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만약 그 존속을 허락할 방침이라면 유효하고

적절하게 지도·조장하여 명랑하게 국가사업에 활약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긴급하다.
(하략)

〈출전 : 古山尙鉉 參議, 『第23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2년〉

18) 참의 이익화(西原翊華)

1. 지도자계급의 자각촉진

지도자계급으로서 국체의 본의에 투철히 하고 팔굉위우(八絃爲宇)의 대 이상의 첨단에 서서 대동아에 신질서를 수립하는 지도국민다운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제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조선은 우리나라의 정신인 팔굉위우의 대 이상을 실현시키는 지역인 것만큼, 조선민중은 일본국민으로서 팔굉위우의 대이상을 대동아에 더 나아가 세계에 선양해야 할 중요한 지위에 있다. 우리의 국체 및 팔굉위우의 이상을 직접 조선의 일반 민중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힘들지만, 적어도 지도자계급은 우리 국체(國體)의 본의에 투철히 하고, 이 대 이상 실현의 제일선에 설 것을 자각하고 이의 실현에 입각하여 가까운 곳에서부터 한명이라도 많은 황국신민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인으로서 종종 조선을 식민지적으로 생각하는 자가 적지 않고, 조선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이상을 외국식의 식민지 정책으로 오해하는 자 역시 적지 않으며, 이와 함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는 일본 3천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정신을 배워, 고전을 연구하며 더욱이 널리 모든 외국사정을 알며 일본적 세계관의 신념으로 대동아 나아가서는 세계의 신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대경론자(大經論者) 다운 자각을 촉진할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2. 시국의식의 철저

지나사변 발발이래의 5년간, 대동아 전쟁발발이래의 반년정도, 황군(皇軍)의 무위(武威)는 혁혁하지만, 총후국민의 일치단결은 아직 그 활동을 더욱 촉진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조선인의 정신적 경제적 부면(部面)에 있어서의 대동아전쟁 완수에 향한 적극적인 협력이야말로 현재 조선에 있어서 가장 절실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산간벽지에 노인이나 부녀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지방민중 중에도 전쟁의 상황을 모르는 자가 있

어 실로 유감스럽다. 전 조선에서 이런 정황의 보편적 존재는 우려 할 바이다. 종종 지도자는 자신이 시국을 인식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역시 인식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시국을 인식하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이것에 기초하여 국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려는 자가 많다.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 창의로운 시책을 강구하고, 정확한 시국인식을 철저하도록 노력해 산간벽지의 한 개인에 이르기까지 대동아전쟁의 완수를 향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총력운동의 더욱 강력하고 철저한 전개를 촉진 할 것이다.

3. 청년운동의 활발화

차세대의 세계를 짊어질 자는 청년이라고 한다. 나아가, 현재의 세계를 좌우지하는 자가 청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조선에 있어서는 오래 된 권위는 더욱 강력하여, 낡은 시대의 형식적 유교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더욱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통찰력이 없어 현재의 조선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실로 현재의 조선을 통치목표로 추진시키는 데는 청년의 힘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에도 청년단 등 조직이 있으나 청년운동의 전개가 활발하지 못하다. 청년의 힘을 믿고, 명랑하고 활발하며 청신하고 열렬한 청년운동을 전개하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조선에 징병제도를 발표할 오늘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러하다.

4. 구체적 생활 일체화의 연구기관 특설

내선일체는 조선통치의 大 목표이다. 하지만 내선일체는 천황에 귀일하여 봉(奉)하는 정신적 일체를 종국의 이상으로 하며, 더욱이 정신은 생활을 기반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내선일체의 실현을 위해 먼저 구체적 생활의 일체화를 가져올 것을 요구한다. 조선에 있어서의 신일본의 생활문화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조선의 의식주 등의 개선을 도모하는 신생활문화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옷·식품·건축 등의 구체적인 생활양식 개선을 연구해야 한다. 그 결과를 점차 행동에 옮겨, 생활의 일체화에 따르는 신일본 생활문화의 수립과 내선일체의 이념 실시방안을 절실히 바란다.

(하략)

〈출전 : 西原翊華 參議, 『第23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2년〉

친
일
반
민
족
행
위
관
계
사
료
집
IV

2부

IV. 기타
중추원 관계 자료

1. 중추원 개혁에 관한 의견서

I. 총설

1. 중추원 개혁의 급무

민의를 채택하여 민정(民情)에 적합한 행정을 실시하는 것이 시정의 요체이다. 중추원 설치의 취지 역시 여기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중추원의 기능을 보건대, 1921년의 제도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의 면모를 약간 일신했다고는 하지만, 조직과 권한 및 실제의 운용 등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아직 최고 자문기관으로서의 직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세간에서는 중추원을 평하여 양로원 혹은 고등유민구제원(高等遊民救濟院)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비유가 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중추원이 무기력하여 통치상에 실효가 별로 없는 일면을 지적하는 평가로서는 경청할 만하다.

지금은 시정 아래 이미 20여 년이 흘러 반도의 문화가 크게 약진하였고 각종 정책도 해가 갈수록 면목을 일신하고 있다. 유독 중추원만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져, 구태의연하게도 겉모습은 최고 자문기관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그 내용은 무용지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많은 식자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민의창달이라는 취지 아래 지방제도의 대개정이 실시되어 도(道), 부(府), 읍(邑) 등의 단체에는 이미 거의 완전한 자치제가 인정됨으로써 지방행정상 획기적인 진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에서는 유일한 자문기관인 중추원이 아직 그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일부 인사 중에는 중추원의 현 상황에 염증을 느껴 개혁을 부르짖거나 혹은 나아가서 참정권획득 운동으로 이행하려는 자도 있다. 당국이 현재 상태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끝내 민중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는 통치상 결코 득책(得策)이라고 할 수 없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중추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겉모습과 내용 모두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는 최고자문기관으로 만들도록써 민의창달의 기회를 더욱 풍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추원 조직을 개선하여 권한을 확장함으로써 강력한 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민의창달의 취지에서 보자면 하나의 진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정자 측에서 보면 일견 시정을 더욱 번잡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번잡함은 사전에 사안을 심의·처리하게 함으로써 사후에는 오히려 각종 정책을 한 층 더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는 중추원 설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일부 유식자 사이에서는 현재 중추원이 무기력하여 시정상의 효과가 별로 없는 한쪽 면만을 보고 차라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다. 이는 근대정치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폭론(暴論)으로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주장이다. 하물며 조선처럼 시정의 객체인 민중 대부분이 민족·역사·풍속·습관이 다른 조선인으로서 특히 유력한 자문기관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부 조선인 중에는 지금도 여전히 총독정치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긍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이 신정(新政)을 구가하고 여기에 공명하며 항상 총독부의 시정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렇게 기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의 중추원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이번 기회에 중추원의 조직을 개선하여 권한을 확장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민론(民論)의 대표기관답게 만들어야 한다. 이는 중앙행정상 긴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민심의 안정과 사상 선도를 위해서도 매우 절실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추원의 조직을 개선하고 그 권한을 확장시켜 현재보다 강력한 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기회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참정권 부여의 조건은 조선인의 문화, 국민정신 보급의 정도 여하에 달린 것이고 중추원의 개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중추원을 현 상태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총독부는 인민이 정치에 관여하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오히려 통치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중추원을 개혁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현재보다 풍부하게 하면, 훗날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훈련으로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요컨대 어느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중추원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며 폐단은 조금도 없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 개혁안의 기조(基調)

중추원의 개혁을 주장하는 자들 중에는 ‘중추원을 폐지하여 조선의회로 만들어야 한다.’ ‘자문기관을 개선하여 결의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또 ‘중추원에 정치적 기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현 상태 그대로가 좋으며 개정의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조선의 민정 또는 각종 제도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혀되어 이상을 쓰는 급진론자도 있고, 반대로 시대의 추세와 민심의 동향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보수적 논자도 있다. 본 안(案)은 양자를 절충하는 입장을 채택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시대의 흐름과 민심의 경향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어디까지나 현실에 입각하여 조선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였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요점은,

- (1) 일본인 의관의 선임
- (2) 지방 참의의 증원
- (3) 지방 참의 배당 수의 개정
- (4) 참의 전형(銓衡)방침의 확립
- (5) 보선 의관의 임기 개정
- (6) 참의의 대우 및 수당의 개선
- (7) 자문 사항 및 보고 사항의 명기
- (8) 건의권의 부여

등의 여덟 가지 항목이다. 개정안에서는 중추원을 결의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조선의 현 상황에 비추어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자문기관으로서 존속하도록 했지만, 그 내용을 일신하여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입안하였다. 따라서 위의 여덟 가지 항목 중 일본인 의관의 선임, 지방 참의의 증원, 심의 사항의 명기 및 건의권의 부여는 본 개혁안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3. 개혁의 호기(好機)

1933년 6월 2일에는 중앙 참의 45명 중 34명, 지방 참의 28명 중 15명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중추원 참의 거의 대부분이 이날까지 개선(改選)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가 각종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매우 좋은 기회이므로 올해 안에 관제 등의 개정을 완료하여 참의가 개선된 이후부터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안과 같이 개혁을 시행하게 된다면 관제 및 취급방침을 다소 변경해야 하지만 경비는 증액할 필요가 없다.

II. 개혁의 요향

1. 일본인 의관의 선임

현재

의관(고문 및 참의)은 모두 조선인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안

- (1) 의관은 조선인에 한정하지 않고 조선에 재주하는 일본인 중에서도 선임할 것.
- (2) 만약 별향과 같이 참의의 증원이 실현된다면 중앙 참의 43명 중 5명 내외의 일본인 참의를, 그리고 지방 참의 42명 중 15인 내외의 일본인 참의(한 도의 참의가 2명인 곳은 조선인 1명, 일본인 1명으로, 한 도의 참의가 3명인 곳은 조선인 2명, 일본인 1명으로, 한 도의 참의가 4명인 곳은 조선인 2명 혹은 3명, 일본인 2명 혹은 1명, 한 도의 참의가 5명인 곳은 조선인 3명, 일본인 2명)를 두어, 참의 총수 85명 중에 20명 내외의 일본인 참의를 선임할 것.

개정 이유

총독의 자문기관인 중추원의관에 일본인을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제도상의 하나의 허점이다. 이미 대만총독의 자문기관인 평의회(評議會)조차 회원에 일본인을 임명하는 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인 의관의 선임은 더욱 필요하다. 특히 일본인에 대해서만 중앙 자문기관에 참여할 권한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 대우하는 것으로, 시정의 대국적 견지에서 볼 때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방자치제에서는 모두 자문기관 또는 의결기관에 일본인을 참여시켜 매년 양호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중앙 자문기관인 중추원 의관에도 일본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옳음은 논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1) 개정안에서 고문에 대해서도 참의와 마찬가지로 일본인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제 고문으로서 적당한 인물이 있는 경우에 선임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 참의 중 조선인과 일본인의 비율은 조선에서의 인물 배치 상황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각종 사정(도평의회, 부회 등의 실상 등)을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선에서 입안했다. 다만 지방 참의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비율 중에서, 1도 4명인 도에서는 그 도의 대표적인 조선인과 일본인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소 융통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정하였다.

2. 지방 참의의 증원

현재

참의 총수 65명 중 중앙 참의 45명, 지방 참의 20명

개정안

참의 총수를 85명으로 하고 그중 중앙 참의 43명, 지방 참의 42명으로 할 것.

개정 이유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 민정에 부합하는 정치를 실행하는 것이 시정의 요체이며, 중추원 설치의 목적 역시 여기에 있다. 그런데 현재 지방의 실정에 정통하고 지방 민심의 추세를 잘 알며 실질적으로 지방민을 대표해야 할 지방 참의는 중앙 참의 수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이는 중추원의 직능에 비추어볼 때 본말이 전도된 제도상의 큰 결점이기 때문에, 모름지기 지방 참의를 상당수 증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 갑자기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반드시 시의적절할 것은 아니다. 이번은 위의 안처럼 개정하는 데 그치고, 앞으로 적당한 기회를 보아 중앙 참의의 인원을 감소시키고 이를 대신할 지방 참의의 인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의 제도는 지방 참의의 수가 적은 데 반해 중앙 참의의 수는 비교적 많다. 따라서 이번 개혁에도 지방 참의의 증원과 함께 상당수 중앙 참의의 감원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별항(別項)처럼 중앙 참의 중 5명 내외(중앙, 지방을 통틀어 약 20명 내외)의 일본인 참의를 새로 임명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중앙 참의의 정원을 현저하게 감원할 때는 조선인 참의 중 상당수가 파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인 참의를 증원하기 위해 조선인 참의의 수를 감소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정책

적으로 탐탁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 참의 45명 중 2명을 감소시켜 43명으로 하고, 지방 참의의 정원을 20명에서 22명을 더 늘려 42명으로 함으로써 제도적인 결점을 시정하고 동시에 민의창달의 취지를 풍부하게 하고자 한다.

비고>

- (1) 참의는 모두 조선 총독의 주청에 의해 내각에서 임명(중추원관제 제1조 제1항)하는 것인데, 그 안에 중앙과 지방의 구별은 없지만 종래 조선 총독이 직접 주청·임명한 자를 중앙 참의, 도지사의 내신(內申)에 근거하여 주청·임명한 자를 지방 참의라고 통칭해 왔다.
- (2) 한일합병 이전 의관(議官)의 수는 시기에 따라 달랐다. 1895년 3월 처음으로 중추원 관제를 만들었을 때는 그 수가 50명 이하였고, 1898년에 50명으로 했다가 다음 해 8월 다시 40명으로 감소시켰다. 1901년 9월 다시 50명으로 복원하였고, 1905년 2월에는 찬의 15명으로 개정하였고, 같은 해 11월 다시 찬의 8명, 부찬의 15명으로 바꾸었다. 1910년 9월 중추원관제가 발포되어, 고문 15명, 찬의 20명, 부찬의 35명 등 총 70명으로 정했다. 1921년 4월에 이르러 다시 개정하여, 찬의·부찬의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참의로 바꾸었으며, 정원은 고문 5명, 참의 65명으로 결정되었다. 동시에 참의 중에 지방 참의가 새로 임명되었다.

3. 지방 참의 배당 수의 개정

현재

지방 참의의 총수는 20명으로 각 도별 배당 수는 다음과 같다.

경기, 충북, 평북, 강원, 함남, 함북	각 1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각 2명

개정안

지방 참의 총수 42명의 각 도별 배당 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

경기도	5
충청북도	2
충청남도	3
전라북도	3
전라남도	4
경상북도	4
경상남도	4
황해도	3
평안남도	3
평안북도	3
강원도	3
함경남도	3
함경북도	2

개정 이유

지방 참의는 지방민을 대표하므로 각 도에 대한 배당은 도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도읍, 도평의회원 수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방 참의의 중원을 기회로 배당 수를 개정하고자 한다.

도별	인구 (1930년 10월 현재)	도평의회 인원 수	지방 참의 인원 수
경기	2,157,413	38	5
충북	900,226	18	2
충남	1,382,886	24	3
전북	1,503,695	24	3
전남	2,332,256	34	4
경북	2,416,762	37	4
경남	2,135,716	33	4
황해	1,523,523	27	3
평남	1,331,705	24	3
평북	1,562,791	30	3

강원	1,487,715	31	3
함남	1,578,491	26	3
함북	745,124	18	2
계			42

비고)

인구 2백만 명 이상인 도 : 4명

인구 백만 이상 2백만 명 미만인 도 : 3명

인구 백만 명 미만인 도 : 2명

경기도는 특히 경성부가 소재한 도이기 때문에 위의 기준 외에 1명을 추가한다. 그리고 종래 경기도에서 중앙 참의를 많이 임명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배당이 불과 1명인데, 중앙 참의와 지방 참의와는 그 성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번에 경기도 지방 참의 수도 동일한 기준에 의해 중원·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의 안과 같이 결정했다.

4. 참의 전형 방침의 확립

현재

- (1) 중앙 참의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중임시킨다.
- (2) 지방 참의는 영예로운 지위를 골고루 누리게 한다는 의미에서 되도록 중임을 피하도록 한다.

개정안

- (1) 참의의 선임 시 인물 제일주의에 따라 널리 일반 사회에서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일류의 인물을 엄선할 것.
- (2) 중앙 참의, 지방 참의를 불문한다. 굳이 중임시키기 위하여 또는 중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인물(사회적 비중이나 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개임하거나 또는 중임할 것.
- (3) 한일합병 당시의 공로와 경력 등에 의해 임명한 의관은 되도록 이를 중임시켜 공로자 우대의 취지를 온전하게 할 것.

개정 이유

중추원으로 하여금 명실상부한 최고의 자문기관답게 하기 위하여 그 중심인 참의에는 인물과 경력이 모두 우수한 인물을 망라하기 위해서임.

전후 조치

주임대우(奏任待遇) 중앙 참의 중 다년간 공로가 있는 인물, 우수한 인물은 개임할 때 칙임대우(勅任待遇)로 승격시켜 우대할 것.

개임할 때 파면되는 참의 중 다년간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서위(敍位), 서훈(敍勳) 또는 특별상여 등의 은전을 받게 하여 그 공로에 보답할 것.

비고>

- (1) 1895년 3월의 관제에서는 의관의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 1898년 11월의 개정에 의해 비로소 임기를 12개월로 정했다가 같은 달 다시 임기를 없앴다. 이후 병합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 1921년 4월의 관제개정에 의해 임기를 3년으로 정하였고 필요에 따라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1921년 관제 개정 시 의관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한편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필요할 경우 해임할(중추원관제 제6조 제2항) 수 있도록 한 것은 의관의 신진대사를 통하여 항상 국면을 새롭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렇지만 이후의 실제 운영에서는 반드시 개정 당시의 취지대로 하고 있지만은 않다.

5. 보선(補選)의관의 임기 개정

현재

보결에 의해 임명된 의관의 임기도 임명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안

보결에 의해 임명된 의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할 것 (관제 개정을 필요로 함).

임기가 있는 자의 보결로 임명된 자는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하여 잔여 임기 동안만 재임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나, 현 제도에서는 보결 임명자라 해도 임명 다음날부터 3년간을 임기로 함으로써 임기가 일정하지가 않다. 현재의 의관 중 약 반수는 동시에 개선되겠지만 나머지 반수의 임기는 제 각각이어서, 통일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무처리상 불편함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6. 의관 대우 및 수당의 개선

현재

(1) 대우

중앙 참의 : 45명 중 칙임대우 27명, 주임대우 18명

지방 참의 : 전부 주임대우

(2) 수당(연액)

중앙 참의	칙임대우	3,000엔(1명)
		2,500엔(6명)
	주임대우	2,000엔(11명)
지방 참의		1,500엔(9명) 1,200엔(18명)
		1,200엔(18명)
		600엔(20명)

개선안

(1) 대우

중앙 참의는 전부 칙임대우로 할 것.

(2) 수당(연액)

중앙 참의의 수당은 현재대로 하고, 지방 참의의 수당은 전부 폐지 혹은 반액으로 할 것.

개정 이유

(1) 현재처럼 중앙 참의 중에 칙임대우, 주임대우의 구별이 있고, 게다가 중앙 참의 중

주임대우와 지방 참의 사이에 지급하는 수당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제도적으로 복잡한 뿐만 아니라 공평 관념에도 반하는 것이다. 원래 참의에 대한 대우 또는 그에 따른 수당은 참의의 성질에 비추어 동등하게 하고, 그 안에서는 아무런 구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지만, 중앙 참의와 지방 참의는 그 연혁상 또는 실질상으로도 차등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피해야 한다.

중앙 참의의 대부분은 이미 칙임대우이고 주임대우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차라리 모두 칙임대우로 만들어 일반적으로 그 지위를 높임으로써 제도적으로 지방 참의와 확실하게 구별함과 동시에, 중앙 참의 사이의 차별 대우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옳다.

(2) 중앙 참의의 대부분은 한국시대에 주요 지위에 있으면서 상당한 관직을 거친 인물들로 병합에 따라 관직을 잃은 자가 많다. 또 이들은 조선의 관습상 부양가족이 많고 가계가 곤란한 자가 많기 때문에 그 직위를 유지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것에는 다소의 이견이 있고 시대에 맞지 않는 감이 있지만, 이를 갑자기 고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재대로 하고 장차 균일하게 하거나 혹은 두 종류로만 구별하도록 한다.

지방 참의는 각자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가문, 덕망, 학식 등을 참작하여 임명해 왔는데, 이미 참의에 임명된 사실 하나만으로도 특별한 발탁에 해당하고 매우 명예로운 일이며, 도민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수당을 지급하여 대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방 참의는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먹고 사는 데 곤궁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 참의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고치려고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에 300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했으면 한다.

비고>

병합 전 의관의 대우는, 1895년 3월의 관제에서는 의관을 3등급으로 나누어, 1등 의관을 칙임으로, 2등·3등 의관을 주임으로 하였다. 1898년 11월에는 모두 주임으로 바꾸었고, 1899년 5월에는 의관 중 10명을 칙임으로, 48명을 주임으로 개정하였다. 1901년 9월 칙임 20명, 주임 38명으로 다시 바꾸었고, 1905년 2월 명칭을 찬의로 고치고 모두 칙임으

로 만들었다가 같은 해 11월 새롭게 부찬의를 두어, 찬의를 칙임으로 부찬의를 주임으로 하였다. 병합 후에도 이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다가 1921년 4월, 찬의, 부찬의의 구별을 폐지하고 모두 참의로 바꾸었으며, 그 대우를 칙임대우 또는 주임대우로 만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7. 자문사항 및 보고사항의 명기

현재

매년 시기를 정하여 예회(例會)를 열고, 또 긴급하거나 필요할 때 임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중요 사항을 자문하도록 한다. 자문사항의 범위는 대체로 교육, 산업, 조세, 지방제도 등에 관한 사항 및 구관(舊慣), 풍속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하고, 민사·호적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해서도 자문할 수 있다.

개정안

(1)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중추원에 자문할 것.

- ① 제령(制令)의 제정 및 개폐
- ② 중요 시설·사업의 개설

임시 자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개설할 필요가 있을 때는 중추원 의사규칙 제8조에 의해 그때마다 개설할 수 있다.

(2) 다음 사항은 반드시 중추원에 보고할 것.

- ① 조선 총독부 예산 및 결산
- ② 중요 시설·사업의 경과 또는 성적

개정 이유

중추원은 연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초에는 실직(實職)이 없는 자를 위한 기관이었지만, 점차 권한을 부여받게 되어 내각의 자문에 응하거나 혹은 인민들이 제출한 헌의(獻議)를 심사하는 곳이 되었다. 현재는 조선 총독의 자문에 응하게 되어 시정상 가장 중요한 기관의 하나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권한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운용 여하에 따라서 그 권한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기관의 기능이 항상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때그때 위정자의 의향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현실은 결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중추원 설치의 주된 취지를 명확히 하고 최고자문기관답게 만들기 위하여 이번 기회에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정함과 동시에 한층 더 권한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제령(制令)의 제정 및 중요 시설·사항에 대한 자문

제령은 일본의 법률에 해당하는 법령으로 그 내용은 민중의 이해와 직결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제령의 제정 및 개폐는 단순히 관청의 의사에 따라서만 행할 것이 아니라 우선 자문기관인 중추원에 자문하여 의견을 구한 연후에 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근래에 일반 민중의 사상의 경향, 문화의 진보 및 최근 지방자치 제도의 확립 등에 비추어 조선에서의 중앙정치도 종래와 같은 독재정치의 구태에서 벗어나 가능한 한 민의를 채택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토록 해야 하므로, 제령의 제정, 개폐 및 중요 시설 등 민중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가진 사항은 반드시 중추원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예산 결산 및 중요 시설·사업의 경과 또는 성적의 보고

조선 총독부의 예산은 중앙 시정의 기본 축을 이루는 것이므로, 사전에 최고자문기관인 중추원에 자문을 구하여 편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조선 총독부가 예산의 최후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 이전에 중추원에 자문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결정 전에 자문하는 것은 잠시 유보하고 결정 후에 널리 알린다는 의미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중요 시설·사항의 경과나 그 성적은 반드시 중추원에 보고하여 시정의 추이와 현재 상황을 항상 알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비고>

(1) 병합 전

중추원은 당초 문관(文官), 음관(陰官), 무관(武官)을 불문하고 자현대부(資憲大夫) 이상의 실직(實職)이 없는 자를 단망(單望)으로 임명하여 고문으로 삼고, 나중에 내각의 자문에 응해 심의·의정하는 곳이었다. 1898년에는 건의권을 인정받았고 또한 인민의 헌의를 심사하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2) 병합 후

오랫동안 자문을 하지 않고, 매년 수차례 총독 관저에 부의장 및 의관을 초빙하여 총독으로부터 훈시를 듣는 정도에 그치다가 1916년 1월 이후 매월 월례회(月例會)를 열게 되었다. 그때마다 총독이 당면 사무에 관한 훈시를 하고, 이를 인쇄하여 의관에 배포하였지만, 동년(同年) 11월 이후 자연스럽게 중지되었다. 1919년 9월 비로소 묘지규칙의 개정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 제1회 회의를 열었지만, 그 이후 자문을 받는 일이 없었고 회의도 개최되지 않았다. 1920년 4월 이후 매주 1회 의관의 회동 날짜를 정하여 부의장 이하가 출석하여 총독부 주무자의 강화(講話)를 듣기도 했지만 같은 해 7월 이후 중지되었다.

8. 의결권 부여

개정안

중추원에 새로이 건의권을 부여할 것(관제개정이 필요).

개정 이유

자문기관은 수동적으로는 자문사항에 대해 심의·답신하고, 능동적으로는 그 의견을 건의한다. 이 둘의 작용이 서로 맞물려야 비로소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중추원은 1898년 관제 개정에 의해 건의권을 인정받았다가 그 후의 개정으로 삭제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할 기회를 얻지 못함으로써 자문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중추원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대만총독부 평의회도 이미 이 기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관제 개정을 기회로 하여 중추원에 새로이 건의권이 인정되었으면 한다.

III. 중추원 개혁에 관한 각 방면의 의향

1.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

- (1) 유일 최고의 민의창달 기관이기 때문이다. (양반계급, 일반 조선인)
- (2) 조선인은 중추원 의관을 최고의 영예로 여겨, 이를 원하는 자가 많다. 때문에 중추원을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조선 민중은 최고 목표를 잃게 되고 불평불만의 소리가 커져 일반의 사상이 악화될 것이다. (양반계급, 일반 조선인)
- (3) 과거 총독 정치에 대한 공로자를 대우하는 하나의 방법이므로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 (양반계급)

2.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 (1) 과도기적 유물로서 현재는 위정자도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 완전히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모름지기 폐지하여 그 경비를 다른 유효한 사업에 써야 할 것이다. (일본인 측)
- (2) 원의(院議)로 총독 정치를 전혀 구속할 수 없는, 완전히 유명무실한 기관이다. (일본인 측, 일반 조선인)
- (3) 종래 중추원이 있음으로 해서 일반 민중의 복리가 증진된 것은 없다. 따라서 존치할 필요가 없다. (일반 조선인)
- (4) 특수계급에 고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쓸데없이 고등유민(高等遊民)을 구제하는 것은 진심어린 청년의 반감을 사게 되고, 나아가 일반의 사상을 악화하는 소지가 된다. (일본인 측, 일반 조선인)
- (5) 폐지하여 양로원, 고등유민구제소라는 오명을 벗어라. (일본인 측, 일반 조선인)
- (6) 현재의 의관은 이미 국가로부터 이중삼중의 영예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을 설치하여 조선인의 혐오를 부를 필요가 없다. (일본인 측, 일반 조선인)
- (7) 원래 정책적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병합 후 20년이 지난 오늘날 조선인을 회유하기 위한 이 기관은 이미 그 필요가 없어졌다. (일본인 측, 일반 조선인)
- (8) 현재와 같이 아무런 정견(定見)이 없는 조선인 유산계급에게 영예와 봉급을 주어

- 병합으로 인한 불만을 막는 것은 이미 그 필요성이 없다. (민족·사회주의자)
- (9) 노후(老朽) 관리만으로는 국정에 참여할 실력이 없다. 경비도 부족한 이때 중추원을 완전히 폐지하고 경비를 다른 곳에 써라. (일본인 측, 일반 조선인, 사회주의자)
- (10)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 바로 실행한다면 조선인의 반감을 살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인원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 (일본인 측)

3. 의관의 임용에 관한 주장

- (1) 정원의 반수를 선거로 하라. (일본인 측, 일반 조선인)
- (2) 총독부의 각 국부장(局長) 및 도지사도 의관에 임용하라. (일본인 측, 일반 조선인)
- (3) 민선 이외는 재임을 인정하지 말 것. (일본인 측)
- (4) 활동 능력이 있는 인물만을 채용하기 위하여 의관의 연령에 제한을 두라. (일본인 측)
- (5) 참의의 차별대우를 전부 폐지하라. (일반 조선인)
- (6) 의관은 도평의회 회원으로 하여금 선임케 하라. (일반 조선인)
- (7) 각 도에 1명씩 임명하고, 재원의 염출을 도모하라. (일본인 측)
- (8) 정원의 3분의 1을 민선으로 하라. (일본인 측)
- (9) 지방 참의의 정원을 52명으로 하고 각 도에서 4명씩 선임하라. (일본인 측)
- (10) 각 도에 1명 내지 2명으로 하고, 조선인과 일본인 중에서 두루 임명하라. (일반 조선인)
- (11) 조선인과 일본인을 각각 반씩 임명하라. (일본인 측)
- (12) 나이 많은 자를 정리하고 중견의 장년층을 임명하며, 지방 참의를 한 도에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라. (일반 조선인)
- (13) 현재는 중앙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각 도로부터 분산적으로 임용하라. (일반 조선인)
- (14) 현재의 의관은 모두 노후(老朽) 관리 중 퇴직한 자들로서 시대에 뒤떨어진 자들이다. 임용범위를 확장하여 신진기예를 채용하라. (일반 조선인)
- (15) 문벌 퇴관자(退官者)를 구제하기 위한 현 제도를 개선하여, 널리 조선인과 일본인 중에서 탁견이 있는 인재를 등용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 (일본인 측, 일반 조선인)

4. 권한의 확장에 관한 주장

- (1) 정무총감의 겸임의장제도를 폐지하고 자치조직으로 해야 한다. 의장이 총감이기 때문에 진의를 마음껏 토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유롭게 답신할 수 있도록 변경하라. (일반 조선인)
- (2) 조선의회(朝鮮議會)로 만들라. 이 결의를 존중하고 훗날 제국의회(帝國議會)에 의원을 파견할 소지를 만들라. (일반 조선인)
- (3) 정치의 요체는 민의의 흐름을 적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으므로, 권한을 확장하여 일본의 추밀원(樞密院)과 같은 기능을 발휘케 하라. (양반계급)
- (4) 민의를 충분히 청취하고자 한다면 회의 일수를 연장하라. (양반계급, 일반 조선인)
- (5) 결의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반 조선인, 민족주의자)
- (6) 중추원에 정치적 기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일본인 측)
- (7) 종래의 자문사항은 정치문제와 관련된 것뿐이다. 현실에 입각한 시정상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라. (양반계급, 일반 조선인)
- (8) 조선 관계 법령의 제정·심의 및 예산의 편성에 참여시켜라. (일본인 측, 일반 조선인)
- (9) 총독부의 중요 사항은 모두 중추원에 자문해야 한다. (양반계급, 일반 조선인)
- (10) 특정한 사항을 정하여 그 사항에 관해서는 반드시 자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며, 동시에 결의권을 부여할 것. (일본인 측, 일반 조선인)
- (11) 건의·건백(建白)권을 부여하여 참된 민의창달의 기관으로 만들라. (일반 조선인)

5. 수당 및 기타에 관한 주장

- (1) 수당은 1,000원 이내로 하고 일정하게 할 것. (일반 조선인)
- (2) 회의 출석 시 실비를 지급하고, 평상시의 수당은 완전 폐지해야 한다. (일반 조선인)
- (3) 구관(舊慣) 및 제도 조사의 사무는 다른 관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일반 조선인)

〈출전 : 『中樞院改革二關スル意見書』, 연도미상, 미국 하와이대학교 해밀튼도서관 소장〉

2. 중추원 관제 개정에 관한 참고자료(1933)

1. 중추원 설치의 이유(최초)

병합 당시 중추원을 설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의 문서 중에서 하등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구(舊)한국 시대 중추원의 직능 및 병합 당시의 사정, 또는 병합 후 중추원 직원에 임명된 자들의 면면 및 동 원(同院) 운용의 실제 등에 의해 미루어 짐작하건대, 당시 중추원은 일한병합의 공로자 우대 및 병합으로 인해 일단 관직을 잃게 된 구한국시대의 현관(顯官) 요직에 있던 자들에 대해 지위, 명망을 보지(保持)하게 하고 아울러 의식(衣食)의 방도를 주며, 관제에 명기된 바와 같이 조선 총독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병합 당시의 관제는 별책 『참고자료(參考資料)』 제14 참조).

2. 관제 개정의 연혁(시기, 요지, 개정의 이유)

(1) 제1차 개정

시기 : 1912년 3월 27일

요지 : 서기관장을 전임으로 하며, 통역관의 직무, 권한을 명기하다.

이유 : 서기관장을 전임으로 한 것은 사무의 형편상 겸임을 할 수 없는 까닭이다. 통역관의 직무, 권한은 관제 중 당연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빠졌기 때문에 보충하여 그것을 명기한 것뿐이다.

(2) 제2차 개정

시기 : 1915년 4월 30일

요지 : 중추원으로 하여금 새로 조선의 구관(舊慣)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또 통역관(3인)을 1인 줄여 2인으로 하고 새로 통역생을 두는 것으로 하여 屬(3인)과 합하여 8인을 두다.

이유 : 사무 형편에 기인하다.

(3) 제3차 개정

시기 : 1921년 4월 26일

요지 : 제3차의 개정은 중추원의 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개정으로서, 그 골자는 종래와 같이 단순히 중추원을 공로자 우대의 관청으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총독의 자문에 응하며 그것을 활용하여 총독정치의 성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중추원으로 하여금 자문기관 본연의 역할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그 대요(大要)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① 의관(議官)의 명칭, 수 및 대우의 변경

‘의관의 명칭’은 종래 고문(顧問), 찬의(贊議), 부찬의(副贊議)의 3종이었는데, 똑같이 참의(參議)로 고치고, 고문만 소수(5명)의 인원에 한하여 명칭을 존치시킨다. 총수는 고문 15인, 찬의 20인, 부찬의 35인이었던 것을 고문 5인, 참의 65인으로 하다. (전체 수는 증감이 없음.)

‘대우’ 고문 및 참의는 칙임대우(勅任待遇), 부찬의는 주임대우(奏任待遇)였는데, 고문을 우대해야 할 필요상 친임대우(親任待遇)로, 참의는 경력과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칙임대우 또는 주임대우의 두 종류로 하다.

② 의관의 표결권 확장

종래는 고문만 표결권을 가지고, 찬의, 부찬의는 단순히 의사(議事)에 참여하는데 불과했으나, 이를 고쳐 전원에게 표결권을 인정하다.

③ 의관의 임기 신정(新定)

의관은 종래 임기가 따로 없었는데 새롭게 3년을 기한으로 경임(更任)하는 제도로 고친다.

④ 의관의 수당 증액

부의장(副議長) 및 고문은 年 2,500원 이내, 찬의는 1,200원 이내, 부찬의는 800원 이내였는데 부의장은 4,000원 이내, 고문 및 참의는 3,000원 이내로 하다.

⑤ 지방 참의의 선임

종래 참의는 조선 총독에게 직접 상신하여 임명해 왔는데, 참의 중 약간 명에 한하여 새로이 지방의 명망 있고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들 중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후보자를 상신케 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고친다.

이유 : 시세(時勢)의 진운(進運)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끔 하려는 데서 기인하다.

(4) 제4차 개정

시기 : 1923년 5월 22일

요지 : 속(屬), 통역생(通譯生) 정원 10인을 8인으로 줄이다. 서기관장은 전임(專任)제도를 폐지하고 조선총독부의 국장, 부장 및 칙임 참사관이 겸임하도록 하다.

이유 : 경비 절약을 위해서이다.

(5) 제5차 개정

시기 : 1924년 12월 25일

요지 : 속, 통역생 8인을 7인으로 감하다. 서기관장 겸임자 중 「부장 및 칙임 참사관(參事官)」을 삭제하다.

이유 : 특기할 만한 것이 없다.

3. 부의장, 고문, 참의 선임의 내규, 관례, 선임사유

(귀족, 관리 출신, 유식자(有識者)로 구별하여 설치 당초와 다른 것)

당초 중추원을 설치한 이유는 전기(前記)한 바와 같이 병합 당시 공로자 및 당시의 현관(顯官) 요직자(要職者)들을 우대하고, 또한 총독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병합 당시의 공로에 의해 선임되었던 자는 되도록 종신토록 우대하기로 하여, 1921년 새롭게 제도를 개정하면서 그들의 공로에 대한 보상에 중추원을 활용할 방침을 세웠다. 즉 의관의 임기제를 채용한 후에도 여전히 이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중임하게 하는 방침을 세운 것 같고, 그 자손 중에서 상당한 학식, 경험을 가진 달식(達識)한 선비는 우선적으로 의관에 선임되는 경향이 있었다. 병합 당시의 공로자 이외 사람의 전형에 관해서는 중앙 참의, 지방 참의 모두 학식과 경험을 두루 갖추고 민의를 대표하여 총독의 자문에 응하기에 족한 인물을 선임할 방침이었는데, 실제 임명된 자들을 보면 관리 출신자가 너무 많아 일반 사회의 총의를 대표하는 데에 유감스러운 점이 없지 않았다. 이제 지방 참의가 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참의 후보자 3인을 정해 순위를 매기고, 각각 본인의 이력서 외에 성행(性行), 사상(思想), 문지(門地), 자산(資產), 신용(信用), 학식(學識)의 정도, 일본어의 해독 여부 및 공공에 진력했던 사실,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록한 추천조서를 첨부하여 전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921년 관제 개정 전 의관(議官)의 이동표(異動表)

출신별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귀족	17	17	17	16	16	16	13	13	13	13	9
관리	51	51	50	47	47	49	49	49	48	52	51
민간 유력자	—	—	—	—	—	—	—	—	—	—	—
합계	68	68	67	63	63	65	62	62	61	65	60

비고) 의관의 정원은 71인으로서 그 수가 다 차지 않은 것은 결원이 있는 것임.

1921년 관제 개정 후 의관의 이동표

출신별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귀족	8	8	6	7	9	10	10	9	10	10	10	9
관리	49	49	48	42	40	38	33	33	30	37	38	36
민간 유력자	14	14	14	21	20	22	22	25	25	24	23	22
합계	71	71	68	70	69	70	65	67	65	71	71	67

비고) 의관의 정원은 71인으로서 그 수가 다 차지 않은 것은 결원이 있는 것임.

1921년 관제 개정 전 의관의 이동표(사람별)

○는 재임(再任)을 나타냄.

성명	연차별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부의장												
김윤식 (金允植)	○	○	의면 (依免)									
이완용 (李完用)			○	○	○	○	○	○	○	○	○	○
고문												
이완용 (李完用)	○	○	부 의장 취임									

박제순 (朴齊純)	○	○	○	○	○	○	사망				
고영희 (高永喜)	○	○	○	○	○	○	사망				
조중응 (趙重應)	○	○	○	○	○	○	○	○	○	사망	
이용직 (李容植)	○	○	○	○	○	○	○	○	○	실관 (失官)	
이지용 (李址鎔)	○	○	의면								
권중현 (權重顯)	○	○	○	○	○	○	○	○	○	○	의면
이하영 (李夏榮)	○	○	○	○	○	○	○	○	○	○	○
이근택 (李根澤)	○	○	○	○	○	○	○	○	○	사망	
송병준 (宋秉畯)	○	의면									
임선준 (任善準)	○	○	○	○	○	○	○	○	○	사망	
이재곤 (李載崑) ¹⁾	○	○	○	○	○	○	○	○	○	○	의면
조희연 (趙羲淵)	○	○	○	○	○	의면					
이근상 (李根湘)	○	○	○	○	○	○	○	○	○	○	사망
민영기 (閔泳綺)			○	○	○	○	○	○	○	○	○
장석주 (張錫周)				○	○	○	○	○	○	○	○
조민희 (趙民熙)											○

1) 원문에는 李載崑으로 되어있음.

한창수 (韓昌洙)	○	○	○	○	○	○	○	○	○	○	의면
민상호 (閔商鎬)										○	○
찬의											
민상호 (閔商鎬)	○	○	○	○	○	○	○	○	○	○	고문 취임
홍승목 (洪承穆)	○	○	○	○	○	○	○	○	○	○	○
김만수 (金晚秀)	○	의면									
남규희 (南奎熙)	○	○	○	○	○	○	○	○	○	○	○
이재정 (李在正)	○	○	○	○	○	○	○	○	○	○	사망
조영희 (趙英熙)	○	○	○	○	○	○	○	○	○	○	○
박승봉 (朴勝鳳)	○	○	○	○	○	○	○	○	○	○	○
박이양 (朴彝陽)	○	○	○	○	○	○	사망				
유맹 (劉猛)	○	○	○	○	○	○	○	○	○	○	○
유정수 (柳正秀)	○	○	○	○	○	○	○	○	○	○	○
김영한 (金榮漢)	○	○	○	○	○	○	○	○	○	○	○
이건춘 (李建春)	○	○	○	○	○	○	○	○	○	○	○
염중모 (廉仲模)	○	○	○	○	○	○	○	○	○	○	○
이준상 (李濬相)	○	○	○	○	○	○	○	○	○	○	○
김사묵 (金思默)	○	의면									
권봉수 (權鳳洙)	○	○	의면								

정인홍 (鄭寅興)	○	○	○	○	○	○	○	○	○	○	○
홍종억 (洪鍾億)	○	○	○	○	○	○	○	○	○	○	사망
박제빈 (朴齊斌)						○	○	○	○	○	○
이시영 (李始榮)	○	의면									
윤치오 (尹致旿)	○	○	○	○	○	○	의면				
강경희 (姜敬熙)			○	○	○	○	○	○	○	○	○
박중양 (朴重陽)							○	○	○	○	의면
이겸제 (李謙濟)							○	○	○	○	○
유혁로 (柳赫魯)							○	○	○	○	○
김춘희 (金春熙)									○	○	
조희문 (趙羲聞)									○	○	

부찬의

최상돈 (崔相敦)	○	○	○	○	○	○					
정진홍 (鄭鎮弘)	○	○	○	○	○	○	○	○	○	○	○
서상훈 (徐相勛)	○	○	○	○	○	○	○	○	○	○	○
어윤직 (魚允迪)	○	○	○	○	○	○	○	○	○	○	○
허진 (許璡)	○	○	○	○	○	○	○	○	○	○	○
조병건 (趙秉健)	○	○	○	○	○	○	○	○	○	○	○
이봉로 (李鳳魯)	○	○	○	○	○	○	○	○	○	○	○

신태유 (申泰游)	○	○	○	○	○	○	○	○	○	○	○
송현빈 (宋憲斌)	○	○	○	○	○	○	○	○	○	○	○
고원식 (高源植)	○	의면									
홍운표 (洪運杓)	○	○	○	○	○	○	○	○	○	○	○
이원용 (李源鎔)	○	의면									
정동식 (鄭東植)	○	○	○	○	○	○	○	○	○	○	○
박제환 (朴齊暉)	○	○	○	○	○	○	○	○	○	○	○
권태환 (權泰煥)	○	○	○	○	○	○	○	○	○	○	○
구희서 (具羲書)	○	○	○	○	○	○	○	○	○	○	○
이도익 (李度翼)	○	○	○	○	○	○	○	○	○	○	○
김명규 (金命圭)	○	○	○	○	○	○	○	○	○	○	○
신우선 (申佑善)	○	의면									
김교성 (金敎聲)	○	○	○	○	○	○	○	○	○	○	○
오재풍 (吳在豐)	○	○	○	○	○	○	○	○	○	○	○
조제환 (趙齊桓)	○	의면									
나수연 (羅壽淵)	○	○	○	○	○	○	○	○	○	○	○
송지현 (宋之憲)	○	○	○	○	○	○	○	○	○	○	○
김한규 (金漢奎)	○	의면									

민건식 (閔健植)	○	○	○	○	○	○	○	○	○	○	○
김명수 (金明秀)	○	○	이항직 사무관 전임								
홍우석 (洪祐晳)	○	○	의면								
한동리 (韓東履)	○	의면									
김준용 (金準用)	○	○	○	○	○	○	○	○	○	○	○
박희양 (朴熙陽)	○	○	○	○	○	○	○	○	○	○	○
엄태영 (嚴台永)	○	○	사망								
성하국 (成夏國)			○	○	○	사망					
유홍세 (柳興世)			○	○	○	○	○	○	○	○	○
조재영 (趙在榮)			○	○	○	○	○	사망			
이항직 (李恒植)			○	○	○	○	○	○	○	○	○
홍재하 (洪在夏)			○	○	○	○	○	○	○	○	○
조원성 (趙源誠)			○	○	○	○	○	사망			
김필희 (金弼熙)			○	○	○	○	○	○	○	○	○
오제영 (吳悌泳)			○	○	○	○	○	○	○	○	사망
정병조 (鄭丙朝)						○	○	○	○	○	○
이만규 (李晚奎)								○	○	○	○
서회보 (徐晦輔)									○	사망	

박해령 (朴海齡)										○	○
김낙현 (金洛憲)										○	○
김한목 (金漢睦)											○
김현수 (金顯洙)											○
부의장 및 고문	16	16	16	15	15	14	12	12	12	13	9
찬의 및 부찬의	52	52	51	48	48	50	50	50	49	52	51

1921년 관제 개정 후 의관 이동표(사람별)

관직 성명	연차별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부의장												
이완용 (李完用)	○	○	○	○	○	사망						
박영효 (朴泳孝)						○	○	○	○	○	○	○
고문												
박영효 (朴泳孝)	○	○	○	○	○	부의장 취임						
송병준 (宋秉畯)	○	○	○	○	사망							
이하영 (李夏榮)	○	○	○	○	○	○	○	○	사망			
민영기 (閔泳綺)	○	○	의면 (依免)									
민병석 (閔丙奭)				○	○	○	○	○	○	○	○	○

윤덕영 (尹德榮)					○	○	○	○	○	○	○	○
이지용 (李址鎔)					○	○	○	사망	○	○	○	○
고희경 (高羲敬)					○	○	○	사망	○	○	○	○
이윤용 (李允用)								○	○	○	○	○
권중현 (權重顯)									○	○	○	○
참의(勅待)												
조민희 (趙民熙)	○	○	만료									
□민상호 (閔商鎬)	○	○	○	○	○	○	○	○	○	○	○	○
민영찬 (閔泳贊)	○	○	○	○	○	○	○	○	○	○	○	○
조희문 (趙羲聞)	○	○	○	○	○	○	○	○	○	○	○	○
유혁로 (柳赫魯)	○	○	○	○	○	○	만료			○	○	○
유성준 (俞星濬)	○	○	○	○	○	지사 전임				○	○	○
구연수 (具然壽)				○	사망							
김춘희 (金春熙)	○	○	○	만료								
남규희 (南奎熙)	○	○	○	○	○	○	만료					
조영희 (趙英熙)	○	○	○	○	○	○	만료					
유맹 (劉猛)	○	○	○	○	○	○	○	○	○	사망		
박승봉 (朴勝鳳)	○	○	○	○	○	○	참여관 전임			○	○	○
□유정수 (柳正秀)	○	○	○	○	○	○	○	○	○	○	○	○

김영한 (金榮漢)	○	○	○	○	○	○	만료					
이건춘 (李建春)	○	○	○	만료								
□염중모 (廉仲模)	○	○	○	○	○	○	○	○	○	○	○	○
이겸제 (李謙濟)	○	○	○	○	○	○	만료		○	○	○	
신석린 (申錫麟)				○	○	○	지사 전임		○	○	○	
신응희 (申應熙)				○	○	○	○	사망				
원응상 (元應常)				○	○	○	○	○	○	○	○	○
윤갑병 (尹甲炳)				○	○	○	○	○	○	○	○	○
박기양 (朴箕陽)				○	○	○	○	○	○	○	○	사망
△엄준원 (嚴俊源)	○	○	○	○	○	○	○	○	○	○	○	○
정진홍 (鄭鎮弘)	○	○	○	○	○	사망						
□서상훈 (徐相勛)	○	○	○	○	○	○	○	○	○	○	○	○
어윤적 (魚允迪)	○	○	○	○	○	○	참여관 전임	○	○	○	○	○
민형식 (閔炯植)				○	○	○	만료					
장현식 (張憲植)						○	○	○	○	○	○	○
김윤정 (金潤晶)						○	○	○	○	○	○	○
박중양 (朴重陽)						○	○	○	○	○	○	○
박의병 (朴義秉)						○	○	사망				

한상룡 (韓相龍)						○	○	○	○	○	○	○
상호 (尙灝)						○	○	○	○	○	○	○
조진태 (趙鎮泰)						○	○	○	○	○	○	○
한진창 (韓鎮昌)						○	○	○	○	○	○	○
백인기 (白寅基)						○	○	○	만료	○	○	○
박상준 (朴相駿)									○	○	○	○
김영진 (金英鎮)									○	○	○	○
이진호 (李軫鎬)									○	○	○	○
유진순 (劉鎮淳)												○
참의(奏待)												
김한복 (金漢陸)	○	○	○	○	○	○	참여관 전임					
조병건 (趙秉健)	○	○	○	사망								
신태우 (申泰游)	○	○	○	○	○	○	만료					
박제환 (朴齊贊)	○	○	○	○	○	○	만료					
정동식 (鄭東植)	○	○	○	만료								
권태환 (權泰煥)	○	○	○	○	○	○	○	○	의면 (依免)			
이도익 (李度翼)	○	○	○	만료								

김명규 (金命圭)	○	○	○	○	○	○	○	○	○	○	사망		
김교성 (金敎聲)	○	○	○	만료									
오재풍 (吳在豐)	○	○	○	○	○	○	○	○	○	○	사망		
나수연 (羅壽淵)	○	○	○	○	○	사망							
□송지현 (宋之憲)	○	○	○	○	○	○	○	○	○	○	○	○	○
□민건식 (閔健植)	○	○	○	○	○	○	○	○	○	○	○	○	○
김준용 (金準用)	○	○	사망										
박희양 (朴熙陽)	○	○	○	만료									
유홍세 (柳興世)	○	○	○	○	○	○	○	○	○	○	○	사망	
△이항직 (李恒植)	○	○	○	○	○	○	○	○	○	○	○	○	○
김필희 (金弼熙)	○	○	○	만료									
정병조 (鄭丙朝)	○	○	○	○	○	○	만료						
이만규 (李晚奎)	○	○	○	○	○	○	만료						
김현수 (金顯洙)	○	○	○	○	○	○	만료						
박이양 (朴彝陽)	○	○	○	○	사망								
현온 (玄濬)	○	○	○	○	○	○	만료						
△박종렬 (朴宗烈)	○	○	○	○	○	○	○	○	○	○	○	○	○

△한영원 (韓永源)	○	○	○	○	○	○	○	○	○	○	○	○
천장우 (千章郁)	○	○	사망									
김연상 (金然尙)	○	○	○	사망								
장인원 (張寅源)	○	○	○	만료								
유빈겸 (俞斌兼)	○	○	○	만료								
△김명준 (金明濬)	○	○	○	○	○	○	○	○	○	○	○	○
△송종현 (宋鍾憲)	○	○	○	○	○	○	○	○	○	○	○	○
△이동우 (李東雨)	○	○	○	○	○	○	○	○	○	○	○	○
유승흠 (柳承欽)	○		○	○	○	○	○	○	○	○	○	○
김창한 (金彰漢)						○	○	○	○	○	○	만료
정난교 (鄭蘭敎)						○	○	○	○	○	○	○
이택규 (李宅珪)						○	○	○	○	○	○	○
심환진 (沈旼鎮)						○	○	○	○	○	○	○
이병렬 (李炳烈)						○	○	○	○	○	○	○
오태환 (吳台煥)						○	○	○	○	○	○	○
김상설 (金相爵)						○	○	○	○	○	○	○
이희덕 (李熙德)						○	○	○	○	○	○	○

지방 선임												
경기도												
장도 (張燾)	○	○	○	만료								
한상봉 (韓相鳳)				○	○	○	만료					
원덕상 (元惠常)							○	○	○	○	○	○
충청북도												
방인혁 (龐寅赫)	○	○	○	만료								
민영은 (閔泳殷)				○	○	○	만료					
신창휴 (申昌休)							○	○	○	만료		
이경식 (李敬植)										○	○	○
충청남도												
김갑순 (金甲淳)	○	○	○	○	○	○	○	○	○	만료		
윤치소 (尹致昭)				○	○	○	만료					
한창동 (韓昌東)							○	○	○	만료		
이기승 (李基升)										○	○	○
김병원 (金炳鶴)										○	○	○
전라북도												
신석우 (申錫雨)	○	○	○	만료								
박기순 (朴基順)				○	○	○	만료					
이강원 (李康元)							○	○	○	만료		
박흥규 (朴興奎)							○	○	○	만료		

유익환 (柳翼煥)									○	○	○
홍종철 (洪鍾轍)									○	○	○
전라남도											
박봉주 (朴鳳柱)	○	○	○	만료							
김영무 (金英武)				○	○	○	만료				
김정태 (金禎泰)				○	○	○	만료				
윤정현 (尹定鉉)						○	○	○	만료		
심선택 (沈璿澤)						○	○	○	만료		
김상섭 (金商燮)								○	○	○	만료
현준호 (玄俊鎬)									○	○	○
김한승 (金漢昇)											○
경상북도											
이병학 (李柄學)	○	○	○	만료							
정재학 (鄭在學)				○	○	○	만료				
서병조 (徐丙朝)				○	○	○	만료				
장상철 (張相轍)						○	○	○	만료		
안병길 (安炳吉)						○	○	○	만료		
진희규 (秦喜葵)									○	○	○

장직상 (張稷相)										○	○	○
경상남도												
김기태 (金琪台)	○	○	○	○	○	○	만료					
정순현 (鄭淳賢)				○	○	○	○	○	○	○	○	○
정태균 (鄭泰均)							○	○	○	만료		
장응상 (張鷹相)										○	○	○
황해도												
전석영 (全錫泳)	○	○	○	○	군수 전임							
노창안 (盧蒼顏)				○	○	○	○	○	○	만료		
정건유 (鄭健裕)						○	○	○	○	○	○	○
이충건 (李忠健)												○
장대익 (張大翼)										○	○	○
평안남도												
△선우순 (鮮于鑑)	○	○	○	○	○	○	○	○	○	○	○	○
강병옥 (康秉鉅)						○	○	사망				
박경석 (朴經錫)								○	○	○	만료	
박기석 (朴箕錫)										○	○	
평안북도												
최석하 (崔錫夏)	○	○	○	만료				○	사망			
김제하 (金濟河)				○	○	○	만료		○	○	의면	

김희작 (金熙綽)						○	○	○	만료			
김성규 (金成圭)										○	○	
강원도												
유기호 (柳基浩)	○	○	○	참여관 전임								
이근우 (李根宇)				○	○	○	만료					
정호봉 (鄭鎬鳳)						○	○	○	만료			
박기동 (朴起東)									○	○	○	
합경남도												
이택현 (李澤鉉)	○	○	○	○	○	○	만료					
홍성연 (洪聖淵)						○	○	○	만료			
강필성 (姜弼成)									○	○	참여관 전임	
합경북도												
허명훈 (許命勳)	○	○	○	만료								
피성호 (皮性鎬)				○	○	○	만료					
이홍재 (李興載)						○	○	○	만료			
양재홍 (梁在鴻)									○	○	○	

비고) 병합 당시부터 근속한 사람은 성명의 위에 □표를, 1921년 관제 개혁 후 근속한 사람은 성명의 위에 △표를 찍음.

□ : 6인

△ : 8인

4. 중추원의 제도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조선인 측의 의향
(참의, 유식자 등의 의견, 신문 잡지의 논조와 그 논지 등)

첫째, 중추원에서 각 참의로부터 의견을 구하니, ① 중추원의 명칭 및 조직에 관한 사항, ② 의관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 ③ 의관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④ 의관의 대우 및 수당에 관한 사항, ⑤ 의관의 임기에 관한 사항, ⑥ 권한에 관한 사항, ⑦ 기타의 일곱 항에 대한 답신이 있었다.

둘째, 본 부(府) 경무국에서 조선 내 각 방면의 의향을 모았더니, ① 존치해야 한다는 것 ② 전폐해야 한다는 것 ③ 의관의 임용에 관한 것 ④ 권한의 확장에 관한 것 ⑤ 수당, 기타에 관한 것 등의 의견이 나왔다.

셋째, 신문 잡지의 대표적 논조에 관한 것으로서, 한글신문은 동아일보(東亞日報) 및 민중신문(民衆新聞), 일본어 신문은 조선신문(朝鮮新聞) 및 경성일보(京城日報) 등의 논지를 계기(揭記)했다.

1) 중추원 관제 개정에 관한 참의의 의견

(1) 중추원의 명칭 및 조직에 관한 사항

① 명칭에 관한 사항

- 중추원을 참의원(參議院)으로 개칭할 것 장현식(張憲植)
 - 중추원을 조선의회(朝鮮議會)로 개칭할 것 현준호(玄俊鎬)

② 조직에 관한 사항

- 고문을 폐지하고 참의로 통일할 것 이충건(李忠健)
 - 고문 및 참의의 명칭을 통일할 것 민건식(閔健植)
 - 명예의관(名譽議官) 제도를 만들 것 이경식(李敬植)
 - 서기관장(書記官長)을 전임으로 할 것 조희문(趙羲聞), 민건식(閔健植)
유승홍(柳承欽)

(2) 의관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

① 정원에 관한 사항

- 부의장을 2명으로 할 것 유승흠(柳承欽)
- 고문을 15명(친대(親待), 칙대(勅待))으로 증원할 것 조희문(趙羲聞)
- 참의의 정원을 104명(민선, 관선 각 반수)으로 증원할 것 장현식(張憲植)
- 참의 정원을 100명 내외로 증원할 것 신석린(申錫麟), 민건식(閔健植)
이병렬(李炳烈)
- 의관을 현재의 배로 할 것 김명준(金明濬), 유승흠(柳承欽)
- 의원(중추원을 조선의회로 고침)정원을 130명
(30명 관선, 100명 민선)으로 할 것 현준호(玄俊鎬)
- 참의의 정원을 39명(중앙 13명, 지방 26명)으로 할 것 이충건(李忠健)

② 배치에 관한 사항

- 지방 참의는 도(道)의 대소에 의해 2인 또는 3인으로
할 것(단 인구 10만 이상의 부를 가진 도에 있어서는
특별례(特別例)를 설치) 조희문(趙羲聞), 이병렬(李炳烈)
원덕상(元惠常), 장직상(張稷相)
- 민선참의는 도의 대소에 의해 적당히 배치할 것 유승흠(柳承欽)
- 지방 참의는 한 도에 3명 이상으로 할 것 심환진(沈暉鎮), 이택규(李宅珪)
- 지방 참의(참의 정원 104명으로 개정)는 한 도에 4명으로 할 것 장현식(張憲植)
- 민선참의를 100명(정원 130명으로 개정 30명을 관선)으로 할 것 현준호(玄俊鎬)
- 지방 참의를 26명으로 하며 한 도에 2명으로 할 것 이충건(李忠健)

(3) 의관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① 조선인과 일본인에 관한 사항

- 의관은 조선인에 국한하지 말고 조선인과
일본인을 두루 선임할 것 신석린(申錫麟), 김명준(金明濬)

이택규(李宅珪), 김상설(金相嵩)
오태환(吳台煥), 심환진(沈暎鎮)
이병렬(李炳烈), 장직상(張稷相)

- 지방 참의(한 도에 4명으로 개정)는 조선인과 일본인 각 반수로 선임할 것 장현식(張憲植)
 - 일본인 참의는 중앙 참의에 한해 선임할 것 원덕상(元惠常)
 - 일본인 참의를 20명 내외(정원 100명으로 개정)로 선임할 것 신석린(申錫麟)
 - 일본인 참의는 15명(정원을 100명으로 개정) 이내에서 선임할 것 이병렬(李炳烈)
 - 관선의관은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선임하더라도 민선의관은 조선인에 국한할 것 민건식(閔健植)

② 관선, 민선에 관한 사항

- | | |
|--|--------------------------------|
| - 의관은 관선, 민선 각 반수로 선임할 것 | 장현식(張憲植), 민건식(閔健植)
김명준(金明濬) |
| - 지방 참의는 도평의회원 중에서 선임할 것 | 조희문(趙羲聞) |
| - 참의의 선임은 중앙, 지방을 동수로 할 것 | 원덕상(元惠常) |
| - 참의는 순연히 관선답게 하기 위해, 도지사의 추천은
참고하는 데 그치고 굳이 그것에 구애받지 않을 것 | 이경식(李敬植) |
| - 부의장은 참의의 호선으로 선임할 것 | 이충건(李忠健) |
| - 의원(조선의회로 개정)의 선거권은 25세 이상의 남자로
국세(國稅) 연 3월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의 남자로 돌립생활을 경영하는 자에게 줄 것 | 현준호(玄俊鎬) |

(4) 의관의 대우 및 수당에 관한 사항

① 대우에 관한 사항

- 친임, 칙임, 주임의 각 구별을 폐지하고
동등하게 칙임대우로 할 것
 - 중앙 참의를 칙임대우,
지방 참의를 주임명예직으로 할 것
 - 참의의 대우를 통일할 것
 - 참의는 칙임 또는 주임관으로 할 것

유승흠(柳承欽), 이병렬(李炳烈)
이택규(李宅珪)
김명준(金明濬), 원덕상(元惠常)
이충건(李忠健)

- 고문(15명으로 개정)을 친임대우 및 칙임대우로 할 것 조희문(趙羲聞)
 - 수당에 관한 사항
 - 수당을 통일할 것 김명준(金明濬), 유승흠(柳承欽)
 - 고문은 연액 3,000원, 참의(모두 칙대로 개정)는 연액 2,000원으로 할 것 이병렬(李炳烈)
 - 수당은 관선, 민선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관선, 민선 안에서는 차등을 두지 말 것 심환진(沈旼鎮)
 - 부의장(참의들의 호선으로 개정)의 수당을 참의와 동일하게 할 것 이충건(李忠健)
 - 참의의 수당을 감액하여 약간의 돈을 균일하게 지급하며 잉여금은 여비에 충당하고 참의를 각지에 출장보내 상의하달과 민의상문(民意上聞)에 이바지하게 할 것 이택규(李宅珪)

(5) 의관의 임기에 관한 사항

- 보결선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할 것 유승흠(柳承欽)
 - 판선은 종신 또는 5년 이상으로, 민선은 3년으로 할 것 오태환(吳台煥)
 - 3년을 5년으로 연장할 것 김명준(金明濬)

(6) 권한에 관한 사항

① 자문사항의 명확한 결정에 관한 사항

- 제령 및 부령의 제정과 개폐
 - 총독부 예산 및 결산
 - 기타 중요 시설사항

이상을 반드시 중추원에 자문할 것

장현식(張憲植), 신석린(申錫麟)

김명준(金明濬), 유승흠(柳承欽)

이택규(李宅珪), 심환진(沈旼鎮)

이병렬(李炳烈), 원덕상(元惠常)

장직상(張稷相), 이충건(李忠健)

② 결의권 및 심의권에 관한 사항

- | | |
|-------------------------------|--------------------|
| - 결의기관으로 할 것 | 민건식(閔健植), 현준호(玄俊鎬) |
| - 중추원에 건의권을 부여할 것 | 조희문(趙羲聞), 오태환(吳台煥) |
| - 진정, 조례를 제정하여 전달할 위원회를 설치할 것 | 김명준(金明濬) |
| - 인민의 청원을 심의할 것 | 오태환(吳台煥) |

(7) 기타

- | | |
|---|--------------------|
| - 본 원(院)에 풍습 및 민력 합양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부, 과를 설치할 것(지방순강자료) | 신석린(申錫麟), 이병렬(李炳烈) |
| - 자문역할 외에도 상의하달, 민의상문에
의관을 활용할 것 | 김명준(金明濬), 이경식(李敬植) |
| - 회의는 정기적으로 매년 봄, 가을 2회 개최할 것 | 김상설(金相嵩) |
| - 참의 중에서 선발한 상무참의를 두어 민심의 지도,
민의의 상문 등을 맡게 할 것 | 김상설(金相嵩) |
| - 구관 및 제도의 조사사무를 본원으로부터 분리할 것 | 이충진(李忠健) |
| - 조사사무의 관제를 두어 구관(舊慣) 및 제도의
조사사무 중 이미 조사가 완료되고 참고될 만한
것을 5년 내지 10년을 기한으로 인쇄하여 출판할 것 | 오태환(吳台煥) |

2) 중추원 개혁에 관한 각 방면의 의향

(1) 존치해야 한다는 것

- ① 유일한 최고의 민의창달 기관이다. (양반계급, 일반 조선인)
- ② 조선인에게는 중추원 의관이 최고의 영예여서 그 지위 획득을 바라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폐한다면 조선 민중은 최고 목표를 잃어 불평불만의 소리가 늘어나고, 일반의 사상도 약화된다. (양반계급, 일반 조선인)
- ③ 과거 총독정치에 대한 공로자를 우대하는 한 방법이기에, 이대로 존치시켜야 한다.
(양반계급)

(2) 전폐(全廢)해야 한다는 것

- ① 과도시대의 유물로서 현재는 위정자마저 어떤 기대도 갖고 있지 않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전폐하여 그 경비를 다른 유효한 사업에 써야 한다. (일본인 측)
- ② 원의(院議)로써는 총독정치를 전혀 구속할 수 없어 완전히 유명무실한 기관이다. (일본인 측, 일반 조선인)
- ③ 종래 중추원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민중이 복리(福利)를 입었다고 말할 만한 것이 없고, 따라서 존치의 필요를 인정할 수 없다. (일반 조선인)
- ④ 특수계급에 다시 높은 봉급을 주어 헛되이 고등유민(高等遊民)을 구제하는 것은 진실로 마음 있는 청년의 반감을 더 사게 되어 일반사상 악화의 요인이 된다. (일본인 측, 일반 조선인)
- ⑤ 폐지하여 양로원, 고등유민 구제소 등의 오명에서 벗어나라. (일본인 측, 일반 조선인)
- ⑥ 현 의관은 이미 국가로부터 이중, 삼중의 영예를 받고 있었으므로 지금 다시 이 기관을 설치하여 조선인의 기피와 혐오를 살 필요가 없다. (일본인 측, 일반 조선인)
- ⑦ 원래 정책적으로 설치되었던 것이기에 병합후 20년을 경과한 지금 조선인을 회유하기 위한 기관은 이미 그 필요가 없다. (일본인 측, 일반 조선인)
- ⑧ 현재와 같이 별 생각 없는 조선인 유산계급에게 영예와 봉급을 주어 병합으로 인한 불만을 달랠 것은 지금은 단계에서 필요없다. (민족·사회주의자)
- ⑨ 늙고 부패한한 관리들만이 현재 국정에 참여한다. 실력 없이 경비 펑박의 폐단만 있으므로, 전폐하여 달리 유용하라. (일본인 측, 일반 조선인, 사회주의자)
- ⑩ 전폐를 해야 하지만 지금 즉시 실현하는 것은 헛되이 조선인의 반감을 키우게 되므로 전폐의 전제로서 인원을 절감해야 한다. (일본인 측)

(3) 의관의 임용에 관한 것

- ① 정원의 반수를 선거로 하라. (일본인 측, 일반 조선인)
- ② 총독부의 각 국장, 부장과 각 도지사들도 의관에 임용하라. (일본인 측, 일반 조선인)
- ③ 민선 이외는 재임을 인정하지 말 것. (일본인 측)
- ④ 진실로 활동능력이 있는 인물만을 채용하기 위해 의관의 연령에 제한을 가하라. (일본인 측)
- ⑤ 참의 간의 차별대우를 전폐하라. (일반 조선인)
- ⑥ 의관은 도 평의회원이 선임케 하라. (일반 조선인)

- ⑦ 각도 1명씩 재원의 염출을 도모하라. (일본인 측)
- ⑧ 정원의 1/3을 민선으로 하라. (일본인 측)
- ⑨ 지방 참의의 정원을 52명으로 하고, 각도에서 4명씩 선임하라. (일본인 측)
- ⑩ 각도 1명 내지 2명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을 두루 선임하라. (일반 조선인)
- ⑪ 일본인과 조선인 각 반씩 임용하라. (일본인 측)
- ⑫ 노쇠한 자를 정리하고 중견·장년자를 임명하며, 지방 참의를 한 도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라. (일반 조선인)
- ⑬ 현재는 중앙에 편중되었으므로 각도에서 분산적으로 임용하라. (일반 조선인)
- ⑭ 현재의 의관은 모두 늙고 부패한(老朽)한 퇴직관리로 시대에 뒤떨어진 자들이다. 임용범위를 넓혀서 신진의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라. (일반 조선인)
- ⑮ 문벌·퇴관자를 구제하는 현제도를 개정하여 널리 일본인과 조선인 중에서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라. (일본인 측, 일반 조선인)

(4) 권한의 확장에 관한 것

- ① 정무총감의 겸임의장제를 폐지하여 자치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장이 총감이면 조심하여 진의를 토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자유로이 답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라. (일반 조선인)
- ② 조선의회로 하고 이 결의를 존중하여 언젠가는 제국의회에 의원을 보낼 소지를 만들 어라. (일반 조선인)
- ③ 정치의 요체가 민심의 동향을 적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므로, 권한을 넓혀서 일본 추밀원(樞密院)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라. (양반계급)
- ④ 민의를 충분히 청취하려고 한다면 회의일수를 연장하라. (양반계급, 일반 조선인)
- ⑤ 결의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반 조선인, 민족주의자)
- ⑥ 중추원에 정치적 기능을 부여함은 불가. (일본인 측)
- ⑦ 종래의 자문사항은 정치문제와 거리가 먼 것에 한정되었으나, 현실에 관계된 시정 상의 문제로 하라. (양반계급, 일반 조선인)
- ⑧ 조선관계 법령의 제정, 심의와 예산의 편성에 참여케 하라. (일본인 측, 일반 조선인)
- ⑨ 총독부의 모든 중요사항은 중추원에 자문해야 한다. (양반계급, 일반 조선인)
- ⑩ 특정한 사항을 정하여 그 사항에 관해 반드시 자문하게 하는 동시에 여기에 결의권을 부여할 것. (일본인 측, 일반 조선인)
- ⑪ 건의, 건백권을 부여하여 진실로 민의창달의 기관이 되게 하라. (일반 조선인)

(5) 수당, 기타에 관한 것

- ① 수당은 1,000원 이내에서 일정하게 할 것. (일반 조선인)
- ② 회의 출석에 대해 실비를 지급하고 다른 수당은 전폐해야 한다. (일반 조선인)
- ③ 구관 및 제도조사 사무는 다른 관청에 이관해야 한다. (일반 조선인)

3) 신문, 잡지의 논조와 그 논지

중추원을 단연 폐지하라, 재정상의 견지에서

(동아일보 사설 번역문, 1922년 5월 11일)

중추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시험 삼아 그것을 조선인에게 묻는다면 명확한 해답을 주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총독부 법령집에는 “조선 총독 직속으로 조선 총독의 자문에 응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여전히 막연하여 그 정체를 포착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중추원의 정체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구하려고 하면 실제의 사상에서 귀납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1. 제도상에서 보면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결의는 하등 구속력이 없다는 것, 자문해야 할 사항도 법령에 하등의 규정이 없어 아무리 중대한 사항이라도 자문에 부칠 것인가 아닌가는 총독이 임의로 정한다는 것, 건의권이 없기 때문에 자문사항 이외에는 의사를 발표할 직능이 없다는 것, 원의를 살펴서 정해야 할 고문 및 참의는 전부 관선일 뿐만 아니라, 임기 중이라도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개 속료(屬僚)의 처지를 벗어날 수 없어 의사의 발표를 구속당한다는 것.

2. 운용상에서 보면 1년에 한 번 며칠간의 회기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개회는 하더라도 중대한 사항은 한 건도 자문할 수 없다는 것, 고문 및 참의는 일한병합에 찬동했던 노후한 퇴물관리, 또는 직업적 친일분자를 전부 망라하였고, 인재를 제대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더불어 이들에게 의미 없이 거액의 수당을 주어 사실상 쓸모없는 친일파 구제기관을 만든 것이라는 점.

이상 열거한 사실을 종합하면 중추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알 수 있고, 또 여기에 근거하여 중추원이라는 것이 소용없는 폐물이라고 단정하는 데 대해 어떤 사람도 반대할 여지가 없는 것이 바야흐로 분명하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관찰하면 중추원이 이와 같이 실제 정치상에 어떤 권능도 없고, 그 존립의 의의가 민중생활에 털끝 만큼의 관계가 없는 이상은 그것을 관료배의 장난감 혹은 정신 나간 자의 해갈제(解渴劑)라고 하여 일소에 붙여야 할 것이고, 열렬히 폐지를 주장하는 것 역시 병자의 심심풀이 이상은 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단연코 중추원의 폐지를 주장하려고 한다. 이는 있으나 마나한 중추원 자체의 폐지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조선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폐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경무비(警務費)를 비롯하여 총독부의 예산은 해마다 팽창된 결과 증세(增稅)에 증세를 거듭해도 부족을 채우지 못해 수백 원의 보급금(補給金)에 머리를 조아려 애절하였다. 이러한 경우 정비(政費)를 절약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실히 하고 쓸모없는 기관을 폐지하여, 거기에 지출되던 비용을 유효한 시설에 보태는 것이 현재 최대 급무이니, 당국도 이를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정이 곤란한 총독부에서 이런 쓸모없는 중추원을 폐지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재정의 여유를 초미의 급무인 교육기관의 확장이나 산업 장려시설에 경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중추원이 매년 얼마의 경비를 필요로 하는지 상세한 수는 당국자가 비밀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조사에 의하면 3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이 30만 원을 다른 정비에 대비하면 그 균형은 어떠한가. 주요산업의 하나인 수산행정을 위해 총독부에서 겨우 연액 20만 원을 지출하는 데 비해 중추원을 위해 3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이 과연 균형에 맞는 것인가. 또 중추원 하나를 희생한다면 당장 800개의 보통학교에 400명의 교원을 넉넉히 증치할 수 있고, 혹은 다섯 개의 관립고등보통학교(官立高等普通學校)를 경영해도 오히려 여유가 생길 것이다. 천박한 고등유민(高等遊民) 정책 때문에 이 귀중한 큰돈을 낭비할 필요는 무엇인가. 조선인이 고혈을 짜내 조선총독부의 정비를 부담하므로 그 정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 또한 교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당국자는 기억하라.

최근 들어보니 동경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여 조선 총독부도 행정정리를 할 계획이 있는데, 그렇다면 중추원의 폐지를 실행하기에 좋은 기회이다. 당국자는 사소한 정실(情實) 혹은 체면에 구애되지 말고, 민중의 증오가 집중된 이 소용 없는 기관을 단연코 폐지하라. 이것이 조선인의 진지한 요구의 하나이다.

중추원 참의의 개선

(민중신문 사설 번역문, 1928년 6월 3일)

어제로 임기가 만료된 중추원 부의장 이하 고문, 참의가 다수 있다. 이미 각의(閣議)의 결정에 따라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지만, 그 예보대로 임명된 것 같다. 그 발표에 의하면 지방에서 선출된 참의 이외에는 거의 전부 재임이다. 오직 칙임대우 참의인 백인기(白寅基) 씨가 재선되지 못했고, 새로 임명된 참의는 원래 중추원 참의인 유혁로(柳赫魯), 이겸제(李謙濟), 전 평안남도(平安南道) 참여관(參與官) 박승봉(朴勝鳳) 등 세 명에 지나지 않았다. 만 3년의 임기가 경과되어 개선하는 지금 신진인물을 한 명도 발탁하지 않고 거의 전부 재임하였다. 또 지방에서 선출된 참의 대부분은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새로 선출된 인물은 현대적 지식이 넉넉하거나 그 지방을 대표할 만한 명망을 가진 사람이 적고, 재산을 배경으로 공익사업에 진력한 경험이 있다는 유산계급이 대다수여서 전혀 새로운 맛이 없다. 평범하다는 평가에도 못 미치며, 오히려 개혁이 요망되는 중추원을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중추원은 조선 총독 직속으로 총독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다. 부의장은 친임(親任), 고문(顧問)은 친임대우(親任待遇), 참의는 칙임대우(勅任待遇) 또는 주임대우(奏任待遇)이다. 조선에서는 중추원이 최고의 자문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도 중추원을 설치한 아래 중요사항을 자문한 것은 별로 없고, 병합 당시 한국시대의 대관 중에서 총독부의 현직에 나아가지 못하거나 또는 총독부의 고관으로서 퇴직한 자들을 고문, 참의에 임명하는 데 불과하여 세평(世評)은 중추원을 가리켜 관리가 은퇴한 기로소(耆老所)라고 말하는 것이 안팎으로 공인된 바이다. 사이토(齋藤) 총독은 관제개혁과 동시에 부임하여 중추원을 개혁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연구·조사한 결과, 원래 임기가 없던 것을 3년으로 정하고, 지방으로부터 선출되는 경우도 없었던 것을 각 도지사로 하여금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여 임명하는 제도를 만드는 등 관제를 개정하여 19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제도 개정 후 개선된 횟수가 이미 3, 4회이고, 1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정이 텔끝만큼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유감일 뿐이다.

조선은 법치국의 영토라고는 하지만 아직 특수구역을 면하지 못해, 주민은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없고 예산을 심의하거나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도 없어, 자문기관이라고는 하지만 민의창달(民意暢達)할 곳이 없어 유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추원의 개혁과 활용을 모두 간절하게 희망하여 마지않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그것을 개혁하고 활용하려는 생각이 텔끝만큼도 없는 모양이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총독정

치는 인순고식(因循姑息)의 방략으로 무사안일하게 세월을 보내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도 괜찮을 것이다. 혹은 중추원에서는 조선의 구관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변명하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무를 행하기 위해 거대한 경비를 요하는 중추원을 설치할 필요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로 30명 이상의 촉탁을 두는 것은 이 역시 일종의 구제목적일지도 모른다. 요컨대 현재의 중추원을 계속 두고 개혁하여 활용할 의사가 전무하다면 오히려 폐지하는 방향이 옳다고 우리는 주장하려는 것이다. 만일 개혁하여 활용할 경우 현재의 고문, 참의를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면 제2창복회(第二昌福會)를 설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현재의 고문, 참의를 전부 부적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중에는 덕망이 높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도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의 많기 때문에 기로소라고 하는 세평(世評)도 무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추원을 개혁하여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도 관견(管見)이 없어 불가능한 형편이다. 여기에 대한 개진은 후일의 기회로 미룬다.

한제목(閑題目)

(조선신문, 1932년 2월 17일)

중추원 제도의 개혁은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개혁해도 참의 등을 뽑는 데 지금과 같이 총독부에서 근무하던 일부 지사(知事)나 고참 참여관(參與官)을 임명하는 식이라면 의의가 없다.

조선인만으로 조직하지 않고 그 범위를 일본인에까지 확대하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헛되이 일본인 관리의 실업 구제나 어용상인의 대우에 남용된다면 개혁의 의의가 살지 않는다.

또 노후하더라도 중추원 창설의 근본 의의였던 병합 당시의 공로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에서 선출된 참의가 현재와 같이 인격이나 식견, 명망도 고려하지 않고, 다만 돈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전형방침은 곤란하다.

종래 중추원 참의의 인선에는 운동, 청탁이 종종 행해져 추성(醜聲)조차 새어나올 정도였다. 이 점은 특히 주의해 주었으면 한다. 요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 있다.

사설: 중추원 쇄신, 당국부터 구체화하라

(경성일보, 1932년 12월 23일)

중추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소리가 있다. 그 소리는 중추원을 구성하는 참의 사이에도 있고, 외부에서도 오래도록 주창되어 왔다.

총독부 당국에서도 이에 신경이 쓰여, 그 필요성을 느끼고 구체안을 연구 중이었던 것 같은데, 중추원의 개혁은 곧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체적으로 표현될 것이다. 총독은 이 문제에 관해, 일찍부터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 중추원 개혁을 위한 적당한 구체안 작성 을 명하여 중추원에서는 신중한 태도로 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것이 최근 완성되어 현재 심의실(審議室)에서 최후의 심의가 진행 중인 모양이다.

심의가 끝나면 법제국(法制局)을 거친 연후에 명문화되어 실현될 것이기에, 이미 중추 원 개혁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과연 어떻게 개혁될까. 개혁은 당연히 개선이어야 하지만, 그 개선에 대해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어떤 이유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다. 요컨대 중추원은 총독정치의 최고자문기관으로 그 사명에 비추어 충분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 평이다. 오히려 중추원은 일부 공로자에 대한 구제기관이 아님은 물론인데, 일부 소수의 공로자를 수용하는 양로원이라고 세상에 알려져 있는 현실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세상에 도는 말 중에 일리 없는 것이 없다. 당국이 개혁을 행하려는 의지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중추원 자체가 먼저 그 사명에 입각하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혈행조직을 개정하여 권한을 확장하는 항목이 핵심적인 것 같다. 참의의 정원을 증가시켜 각 방면에서 학식, 경험에 많은 일류의 인물을 뽑자는 것으로, 이와 같이 조직이 개정되면 필연적으로 그 권한을 확장시키게 된다. 정원 을 증가시켜 일반에서 인재를 뽑게 되면, 곧바로 청신(清新)함이 중추원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공로자는 어디까지나 공로자로서 보상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일반 참의 임명과 그것을 혼동해서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는 벼려야 한다. 중추원의 사명은 중대하다. 민의를 채택하여 민정(民情)에 적절한 시정을 펼치는 것이 정치의 요체이고, 그런 의미에서 중 추원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최고 자문기관으로서 스스로 나아가 민의를 듣고 민정 을 살펴 총독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 중추원의 사명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추원은 단지 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전 조선을 구제함이 그 사명이다. 따라서

중추원 참의라고 하는 관명은 단지 명예를 표창하기 위한 이름이 아니라, 선각자로서 총독의 시정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부과된 관명인 것이다. 참의 정원의 증가로 각 방면으로부터 널리 인재를 뽑을 수 있게 되었고, 그중에는 일본인들도 포함된다고 하니, 명실 공히 최고 자문기관으로서 농촌자력경쟁, 사회교화 등 전 조선적으로 매진하고 있는 할 일 많은 이때에 중추원이 쇄신되어 청신한 기운으로 새 출발하게 된 것은 기뻐할 일이다. 그 실현의 때는 현재 심의실(審議室)에서 심의 중이라고 하니, 종료되는 대로 법제국에 회부되어 공포되는 순서가 남아 있지만, 내년 봄 4, 5월이 중추원 참의를 개선해야 할 때이기도 한 만큼, 이때를 전후하여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5. 참정권 문제에 대한 조선인의 의향·건의, 지금까지 총독부의 취급

참정권 문제는 크게 보아 (1) 조선 재주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참정권 부여에 대한 근본적인 논급(論及) (2) 어떠한 형식으로 부여할 것인가, 풀어서 얘기하면 제국의회(帝國議會)에 파견할 조선의원을 선출할 것인가, 또는 조선 독자의 의회를 신설하여 시정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 참정권을 부여해야 할 시기 및 의원 선출의 구체적 방법 등, 즉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법론의 두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종류의 문제는 서로 관련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근본론을 먼저 정하고 비로소 방법론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방법론을 먼저 정하고 근본론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도 실은 그렇지 않다. 대개 참정권 문제의 가장 어려운 점은 실제 그것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의 방법문제이다. 그것을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와 같은 근본적 논의는 오히려 병합 당초 하사되었던 조서의 취지에 비추어 이미 명백하다. 그런데도 참정권 문제에 대해 의견이 많은 것은 근본론에 대해서이고, 오히려 중요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적은 감이 없지 않다. 이는 본 문제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비교적 깊게 들어가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본 문제에 대해 공표되었던 조선인 측의 의향을 적기(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재주민의 참정권 문제에 관한 신문, 잡지의 논조에 관해서는 별책『조선 재주민의 참정권 문제』 참조)

1) 선우순(鮮于鎭) (1927년 제7회 본원 회의)

일반 조선인은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면 일본인과 같이 참정권을 부여받는데도 불구하고, 조선귀족은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더라도 화족(華族)과 같은 귀족원 의원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한 것을 조건으로 일반 조선인이 일반 일본인과 같은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면, 조선귀족에게도 화족(華族)과 같은 특수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 한영원(韓永源) (1928년 제8회 본원 회의)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여 내선의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3) 이병렬(李炳烈) (1928년 제8회 본원 회의)

내선일가(內鮮一家)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양 민족의 권리, 의무를 동일하게 하고, 양 민족 간의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서 조선에 참정권을 부여하는 시기를 분명히 밝혀 조선 민족에게 제국신민(帝國臣民)이라는 자각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윤갑병(尹甲炳) (1930년 제10회 본원 회의)

조선인도 천황폐하의 적자(赤子)인 이상, 일본인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부여받음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벌써 여성들까지 참정권 획득 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 오히려 조선에 참정권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바로서, 같은 제국의 판도 내에 있는데도 마치 젖먹이 취급을 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때문에 조선인의 불평은 언제까지나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 그대로 방임할 것입니까? 조선인 때문에 동양의 평화가 교란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마땅히 국가 백년의 대계를 수립하여 하루라도 속히 조선에도 참정권을 부여할 것을 바랍니다.

5) 김명준(金明濬), 이택규(李宅珪), 오태환(吳台煥) (1931년 제11회 본원 회의)

조선인의 불평을 없애고 사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선결문제입니다. 더욱이 그것을 실시한다면 내선융화에도 한층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오태환(吳台煥) (1932년 제12회 본원 회의)

조선에서 참정권 부여 문제는 시국수습의 중대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역설해 마지않았습니다. 그 주창자인 민원식(閔元植) 군이 중도에 한 청년에게 피살된 이래로 이미 10여 년의 세월이 경과되었는데도 금일 아직도 이 문제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한 줄기 광명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함께 뜻을 모았던 우리는 장탄식을 금할 수 없는 바입니다. 혹자는 “조선인 전체가 충량한 의무를 완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직 이 권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하여 바라는 바를 허용해야만 비로소 그 아이들도 효도를 다하게 된다고 한다면, 먼저 그 바라는 바를 허용해야 합니다. 하물며 새롭게 양자(養子)가 된 이에 대해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물론 제가(齊家)와 치국(治國)은 그 규모에 대소의 차가 있으나, 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텔끝만한 차이도 없습니다. 또 일부 불효하는 아들이 있다고 해서, 다른 다수의 종순(從順)한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자애로운 부모로서 취할 만한 길이 아닙니다. 명치대제(明治大帝)께서 하사하신 일시동인의 성지(聖旨)도 ‘먼저 조선인을 애무(愛撫)하라’는 생각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선인은 종래 유교의 감화를 받아 정치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훈련을 거쳐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사상문제 같은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북해도(北海島)의 실례에 비추어 보아도 도회지에서부터 점차로 보통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사상안정상 가장 좋은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의 사상을 해부해 보면 일반사상과 특별사상의 두 종류로 대별할 수 있는데, 세계의 풍조에 감염된 적화사회주의자(赤化社會主義者)와 같이 전자에 속하는 것과 민족감념(民族感念)에 기반한 ○○운동과 같이 후자에 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 전자는 내선 공통의 사상으로서 교육 등에 의해 비교적 용이하게 균절할 수 있으나, 후자는 조선의 특수사정에 의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 주된 원인인 내선차별을 철폐하여 하루라도 빨리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7) 이동우(李東雨) (1928년 제8회 본원 회의, 1932년 제13회 본원 회의)

(1) 우리 반도는 이제 일본의 판도이면서 동시에 2,000만 민중 또한 제국의 신민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인이더라도 일본 신민으로서 일본인과 같은 참정의 권리를 가짐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사실 조선인은 이 권리를 갖지 못한 고로 진정한 의미의 국민자격을 갖지 못한 것이고, 다시 말하면 비국민(非國民)인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스스로 이 2,000만 민중에게 비국민 됨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결단코 득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참정권 부여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조선인은 고래로부터 정치에서는 상당한 시련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 이해가 다른 민족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중의원에 출석하더라도 신성한 의정단상을 선혈로 오염시키는 등의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자가 없을 것임은 감히 단언하는 바입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가령 그러한 기우(杞憂)가 있다 해도, 먼저 유액편달(誘掖鞭撻)하면서 포용하는 아량을 보여줌으로써 신부(新附)의 국민을 수무동화(綏撫同化)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또 혹자는 특수계급인 귀족원의원 선거법부터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 자도 있는데 이는 시대착오이며, 모름지기 양원제(兩院制)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의무를 분담시키고 동시에 최대의 영예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조선 참정권 문제는 지론(持論)인데 다시 그것을 제창함은 진부한 감이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종래 이른바 필화설난(筆禍舌難)에 휩싸여 상당히 매운 맛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진실로 국가 백년의 대계를 근심하는 까닭입니다. 무릇 이 문제가 정계, 특히 의회의 문제 가 된 지 이미 10여 년인데, 대두되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지금까지도 인정되지 못함으로써 마치 보이는데 형체가 없는 신기루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이 그림자마저 점점 얹어져 위정 당국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귀머거리, 병어리 되기를 자청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만주 신국가가 출현한 뒤로는 뇌리로부터 이 문제를 완전히 제거한 듯,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마이동풍(馬耳東風), 오불관언(吾不關焉)의 상태인 것이다. 그 때문에 조선인들은 전도(前途)에 그 목표를 잊고 혹은 독립이니, 혹은 자치니, 혹은 공산주의니 하는 각종의 환영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상악화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현재의 위정 당국이 안으로는 비상시국(非常時局) 광구책(匡救策)으로, 밖으로는 만주국 대 연맹 문제 등으로 하루도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도저히 다른 곳을 돌아볼 겨를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시기에 직면하여 오히려 정신·물질 양면에서 만일의 화가 후세에 미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확립해야만 합니다. 이제 일본은 신만주국과 제휴하여 동양의 평화에 일층 공헌해야 하겠지만, 만주국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과 조선은 함께 손을 잡고 병합의 정신을 진실로 이해하고, 시국의 중대성을 진실로 자각하여 협동함으로써 황운부익(皇運扶翼)의 중책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조선인들은 독립 또는 자치 운운하는 미몽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하고, 일본인도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인식 부족을 스스로 고쳐 차별적 우월감을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조선 인민의 마음은 바람맞은 나무처럼 흔들거리고 구부려져 안정의 날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고로 이때에 참정권을 속히 실시하여 조선인의 전도에 광명과 희망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주국 승인을 영단(英斷)함에 있어 무엇 때문에 초석(礎石)보다도 중대한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설자(說者)들 중 일본 내에서 조선인이 참정권을 획득하여 행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자도 있는데, 이는 심한 자가당착(自家撞着)입니다.

내가 박춘금(朴春琴) 씨의 입후보에 맞춰 시종일관 그를 응원하는 것은 당선의 영예를 기뻐하기 위함보다도 이를 통해 위정 당국의 반성을 촉구하자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심한 건지 고의인건지 어떤 반향도 없었습니다. 박대의사(朴代議士)의 당선은 일견 기뻐해야 하나 다시 생각하면 슬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동일한 조선인인데 거주지가 일본이냐 조선이냐에 따라, 마치 지우(智愚)나 현불초(賢不肖)의 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선 내에도 그 정도의 자격보다 우월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직접 그것을 조선에 실시하자고 해서 일거에 일본과 동등한 조건이 갖추어지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실마리를 열어둠으로써 자족감을 배가하자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굳이 돌아보지 않은 것은 아무리 조선을 식민지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해도, 이런 강변(強辯)이 과연 계속 통하겠습니까. 조선에 씌워진 식민지라는 명칭은 명백히 병합의 진정한 정신에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조선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며, 얼마나 통치에 방해되는지 모릅니다. 가령 일본으로 가면 참정권이 부여되더라도 우리는 단연코 이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라도 이 반도에 남아 산령하백(山靈河伯)과 더불어 영구히 무념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당국은 현명해서 이런 일은 필경 천려일실(千慮一失)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속히 영단을 내려 선처하기를 바랍니다.

8) 현준호(玄俊鎬) (1932년 10월 제출 의견)

조선의 통치는 병합 이래로 이미 20여 년의 성상(星霜)이 경과하여 그 치적(治積)이 현저합니다. 즉 교육, 산업, 금융, 교통, 위생 등 각 분야에 걸쳐 분명한 진전을 이루었고, 문화도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内外 공히 인정하는 바로서, 실로 금석(今昔)의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내부를 염밀히 검토하여 기탄없이 비판해 보면, 민심은 아직도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생활 상태는 특수계급을 제외하면 안정되어 있지 못하여 이산(離散),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음이 염연한 현실이어서 장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급속히 바로잡는 길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장차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것임은 명백합니다. 사리를 따져 보면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주된 원인은 통치상에서 참정의 기회를 얻을 수 없어서, 조선 민중은 정치적 희망을 잃고 귀추할 바를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상태로 항상 불안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건대 인류사의 고금과 종족을 불문하고 단체생활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 단체생활은 곧 정치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의 선악은 직접 그 국가의 융체(隆替)와 인민의 휴戚(休戚)을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조선은 예로부터 정치적 방면에 뜻이 많고, 일반 민중의 경향은 실생활보다도 정치생활에 취미와 관심을 가짐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능히 알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병합 이래 각 방면에서 장족의 진보와 발전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정치적 방면에서는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 목마름을 하소연한 지 벌써 20여 년의 성상이 경과한 오늘날에도 아직 정치적 참여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경륜이나 포부, 어떤 불평이나 불만도 발표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비곡직(是非曲直)을 불문하고 단지 맹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선의의 악정이든 악정의 선정이든 여기에 대한 비평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유식계급(有識階級)을 비롯하여 정치 방면에 관심을 가진 자는 항상 불만을 품고 침울함을 참으며 마치 절망의 연못에 빠진 것같이 쉽게 자포자기하여 안분(安分)하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자칫하면 과격사상에 빠지거나 이도 아니면 타락에 빠져 일반 민중의 중견이 되어야 할 재능 있는 인물들이 불행하게도 뇌옥(牢獄)에 몸을 내던지는 자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은 진실로 한심한 일입니다. 생각건대 사상은 사상으로서 대립시키지 않는 한 아무리 법률이나 다른 방법으로 억제해도 도저히 균절할 수 없고, 도리어 반동을 일으켜 더욱 악화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필연적 귀결입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은 조선에 완전한 자치제(自治制)를 펴서, 일반 민중을 통치에 참여시켜 민의의 창달을 도모하고, 당국의 진의를 보여줌으로써 인화(人和)를

얻는 것뿐이라고 믿습니다.

조선에 완전한 자치제를 펴는 것이 현재 민도에 비추어 시기상조라고 논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기우에 지나지 않는 편견입니다. 예컨대 명치유신(明治維新) 당시 1889년 헌법을 발표하고, 그 다음해 갑자기 국회를 개설한 것과 현재 조선의 민도를 서로 비교·대조해 보면, 총체적 문화 정도에서 볼 때 어느 쪽이 열등하거나 우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세계의 대세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상의 변화에 맞춰 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부인에게도 참정권을 주는 것은 물론, 구미 각국의 식민지에서도 이미 각종 의회제를 실시하여 민의를 존중하고 시대의 추이에 순응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야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만주국 승인의 결과 일본국의 내외사정은 일대 변화를 가져와 대 조선 문제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된즉, 일본과 만주국의 중간에 위치한 조선에서 제도적으로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중추원 제도는 1910년 병합 당시 제정된 것으로서, 그 직능은 “단순히 조선 총독의 자문에 응하는 것 외에 조선의 구관(舊慣)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케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참의라는 직책은 관선인 까닭에 일반 민중과는 전혀 교섭이 없는 상태로서, 중추원이 조선 통치상 또는 민리(民利), 민복(民福)을 위해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과거의 실적을 고찰해 볼 때, 단순히 공로 있는 자를 등용하여 위로하는 구제기관에 불과했음을 자타 공히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이 유명무실한 기관의 폐지를 논하거나 혹은 개혁을 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중추원의 개혁문제는 실로 오래된 여론으로서, 오늘날 이 개혁의 기운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만약 근본적 개혁을 가하여 완전한 자치제도를 수립하게 된다면 조선통치를 위해, 아니 나라 전체를 위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번 발표된 지방제도 개정이 당국의 입장에서는 일대 영단에 의해 조선통치사상 획기적 개정을 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식자계급이 한결같이 냉정한 것은 개정의 정도가 너무 미온적인 까닭에 여전히 불만을 가진 탓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조선인 스스로 기꺼이 협력할 정도로 제도를 개정하여 정치상의 우울한 심리를 타파하고 광명을 주어 마음으로부터 조선통치에 협력하고 열복(悅服)하는 분위기를 촉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조선 중추원을 바꾸어 ‘조선의회’로 하고, 조선통치에 관한 중요사항은 모두 이 의회의 의결·협찬을 거쳐 시행할 것을 희망합니다. 조선의회에 관한 조직대강 한두 가지를 아래와 같이 열거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 명칭 : 조선의회
- 권한 : 법령의 제정에 관한 사항 및 조선예산안을 의결한다.
- 의원의 선출방법

의원의 수는 약 130명(한 도 평균 10명)으로 한다. 이 중 100명은 선거로, 30명은 관선으로 한다. 민선은 인구 20만당 1인 정도, 관선은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충당한다.
- 의원의 선거표준

선거권자의 자격 : 선거권자는 나이 만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국세 연액 3원 이상을 납부하는 자.

피선거권자의 자격 : 나이 만 30세 이상의 남자로서 독립 생계를 운영하는 자.

참정권에 대한 본원 참의의 의향은 전기한 바와 같은데, 건의권(建議權)에 대해서는 1926년 제6회 본원 회의의 자문안에 관계된 건의안을 참의 김명준(金明濬) 외 12명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건의안 제출은 중추원관계 및 의사구칙에 명백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제로서 채택되지는 않았고, 보고의 형식으로 청취하는 데 그쳤습니다.

6. 지방자치의 연혁 및 그 실적

1) 병합 전부터 시행되었던 제도

(1) 지방비법(地方費法) (1909년 법률 제12호)

제도의 요강

- ① 지방비는 한성부(漢城府) 및 각 도에 둔다.
- ② 지방비는 재산수입, 사업수입 및 부과금으로 충당한다.
- ③ 지방비로 지출할 비목은 토목, 위생, 권업, 교육에 관한 경비 및 법령에 의해 지방비로 지출해야 할 경비로 한다.

- ④ 지방비 사무는 한성부윤(漢城府尹) 및 관찰사(觀察使)가 맡는다. 단 부과금의 징수는 국세의 예에 따라 재무서장(財務署長)이 행한다.
- ⑤ 지방비법은 1909년 중반부터 시행한다.

(2) 한성위생회(漢城衛生會) (1908년 법률로 제정함)

제도의 요강

- ① 경성 시내의 분뇨 수거, 먼지 제거 및 전염병 예방 사무의 처리를 위해 한성위생회를 두다.
- ② 한성위생회는 주로 조선인 및 외국인에 관한 위생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단체인데, 일본인도 종래 거류민단(居留民團)에서 처리했던 위생 사무를 일정한 부담금을 민단비(民團費)에서 지출하고 맡김에 따라 한성위생회는 경성 시내의 위생사무 전체를 통일하여 처리하게 되다.
- ③ 한성위생회는 1907년 황태자 전하가 내한했을 때의 하사금 30,000원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추가로 국고 보조금 및 민단 부담금으로 경비를 충당해 왔으며, 그래도 부족한 것은 조선인 및 외국인에게 부과하다.
- ④ 한성위생회의 사무는 편의상 경무총장(警務總長)이 담당하다.

2) 병합 전 조약에 의해 시행되었던 거류지제도

병합 전 개항지에는 조약에 의해 거류지를 설치하여 치외법권하에서 거류 외국인들이 자치적으로 거류지 내의 행정을 행했는데, 이 제도를 시행했던 지명은 다음과 같다.

- 각국 거류지
인천(仁川), 진남포(鎮南浦), 군산(群山), 목포(木浦), 마산(馬山), 성진(城津)
- 일본 전관(專管) 거류지
부산, 인천, 원산
- 중국 전관 거류지
부산, 인천, 원산

위의 거류지제도는 1914년 부제도(府制度) 시행 때까지 존속되었다.

3) 병합 전 시행되었던 일본의 제도

(1) 거류민단법(居留民團法) (1905년 법률 제41호)

제도의 요강

- ① 거류민단법은 1906년 7월부터 시행한다.
- ② 민단은 주로 거류지, 잡거지에 설치한다. 단 거류지 중 성진(城津)에는 민단을 두지 않는다.
- ③ 민단에는 민장(民長)을 두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민회에서 선출하여 통감(統監)의 인가를 받는다.
- ④ 민단에는 거류민회를 두어 의결기관으로 삼고, 의원의 정수는 8인 이상 24인 이하로 한다.
- ⑤ 의원의 선거자격은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민단세(民團稅) 5원 이상을 내는 자로 한다.
- ⑥ 민단제도는 1914년 부제(府制) 시행 때까지 존속한다.
- ⑦ 병합 당시 민단을 설치했던 지역은 경성, 인천, 군산, 목포, 대구, 부산, 마산, 평양, 진남포, 신의주, 원산의 11개소이다.

(2) 학교조합령(學校組合令) (1909년 통감부령 제7호)

제도의 요강

- ① 학교조합령은 19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교조합을 설치할 때는 규약을 만들어 통감의 인가를 받는다.
- ③ 학교조합은 교육사무를 처리한다. 단 토지의 사정에 따라 부대사업으로서 위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학교조합에 관리자를 두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사관이 임면한다.
- ⑤ 학교조합회를 두되, 조합회의 조직, 선거 등은 조합규약으로 정한다.

재류일본인은 민단법 및 학교조합령 시행 전부터 여러 가지 단체를 설치하여 자치적인 행정을 행했던 연혁이 있다. 1887년 전후, 1897년 전후부터 단체를 조직하여 보장(保長), 두취(頭取), 총대(摠代), 민장(民長), 회장(會長) 등과 같은 집행기관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총대회(摠代會), 민회, 일본인회 등과 같은 의결기관을 설치하여

교육, 위생, 기타 사무를 처리해온 관행이 있다. 즉 공식적인 제도는 상기 법령의 시행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불문(不文)의 제도는 그 이전부터 시행되어 온 것이다.

4) 병합 후 지방제도의 추이

(1) 도지방비(道地方費)

1909년부터 시행한 지방비법(地方費法)을 병합 후에도 계속 시행하여 1920년 제1차 지방제도 개정에 이르기까지 존속되었다. (병합 당시 행정구역이었던 한성부(漢城府)를 폐지하고 그 구역을 경기도에 편입시킴으로써 한성부지방비(漢城府地方費)는 소멸됨)

제1차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조선도지방비령(朝鮮道地方費令)(1920년 7월 제령 제15호)을 공포하여 19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지방비법을 폐지하다. 개정제도의 요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방비를 도지방비로 개정한다.
- ② 도지방비의 사무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도평의회를 둔다. (종전 지방관관계로써 각 도에 조선인 도참사(道參事) 3인을 두어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삼았었지만, 이는 일반행정에 관한 것이었지 지방비의 기관은 아니었다. 그러나 도평의회 제도를 설치한 이상 중복의 협의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한다) 도평의회는 도지사 및 도평의회원으로 조직하고 도지사를 의장으로 한다.
- ③ 도평의회는 도의 공익에 관한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④ 도평의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정원의 2/3는 부·군·도마다 부·면협의회원들이 선거한 후보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며, 1/3은 학식과 명망 있는 자들 중 도지사가 자유롭게 임명한다.
- ⑤ 도평의회원의 자격은 제국신민인 나이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도내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 생계를 경영하는 자로 정했다. 이로써 비로소 일본인 주민이 공식적으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할 수 있게 되었다.
- ⑥ 도지방비에 유급 이원(吏員)을 둘 수 있다.
- ⑦ 도지방비의 기채(起債) 능력을 인정한다.
- ⑧ 종래 제도의 불비(不備)를 보수한다.

이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인데, 제2차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새로운 도제(道制)(1930년 12월 1일 제령 제15호)를 공포하여 1933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제의 요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도제를 시행하고 도지방비령을 폐지한다.
- ② 도는 법인으로 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의 공공사무를 처리하며 법률, 칙령 또 는 제령에 따라 도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③ 도평의회는 도회로 바꾸는데, 의장 및 도회의원으로 조직하고 도지사가 의장이 된다.
- ④ 도회는 도에 관한 사무 중 법령으로 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⑤ 도회에는 부의장을 두되, 도회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⑥ 도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정수의 2/3는 각 선거구에서 부·읍·면협의회원 이 선출하며, 1/3은 종전과 같이 도지사가 자유롭게 임명한다.
- ⑦ 도회의원의 자격은 종전 규정의 결격요건에 도내 읍·면의 읍·면장 및 읍·면리 원(邑面吏員)을 추가하고, 신직(神職), 승려 및 제 종교사(宗教師)를 제외한다.
- ⑧ 도회의 의결 또는 선거에 관해 도지사는 재의에 부치거나 재선거를 행하거나 또는 취소를 위해 정회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
- ⑨ 조선 총독은 도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⑩ 의결기관 설치에 따르는 각종 규정을 정비한다.

(2) 부(府)

부의 제도는 1913년 제령 제7호로 ‘부제(府制)’를 공포하고 1914년 4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부제 시행지에는 병합 전부터 거류민단(居留民團), 거류지회(居留地會), 한성위생회(漢城衛生會)와 같은 특수한 단체가 서로 대립하여 개별적으로 자치행정을 시행했던 연혁이 있었다. 병합 시에 폐지되었어야 했지만 이에 대신할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부제가 제정됨에 따라 각종 사업을 통일, 정리한 것이다. 부제의 강요(綱要)는 다음과 같다.

- ① 부의 사무는 부윤(府尹)이 통할한다.
- ② 부는 법인으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부의 공공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에 의해 부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③ 부에는 부협의회를 두고 부윤의 자문기관으로 한다.

- ④ 부협의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 부의 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 ⑤ 부에 리원(吏員)을 둘 수 있다.
- ⑥ 부는 기채(起債)를 할 수 있다.

제1차 지방제도의 개정에 따라 1920년 제령 제12호로 ‘부제 중 개정의 건’을 공포하고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그 개정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 ① 관선으로 임명되던 부협의회원을 선거로 바꾼다.
- ② 부협의회원의 선거권은 제국신민이고 나이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독립 생계를 경영하면서 1년 이상 부에 거주한 주민으로 하며, 조선 총독이 지정한 부세를 연액 5원 이상 납부하는 자로 하고, 일정한 결격요건을 정한다.
- ③ 부협의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선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다.

제2차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1930년 12월 1일 제령 제2호로 전부 개정을 행하여 193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개정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 ① 부의 학교비 및 부의 구역에 있는 학교조합을 폐지하고 부로 통일한다.
- ② 부의 일본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1부특별경제(第一部特別經濟), 조선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2부특별경제(第二部特別經濟)로 하여 일반경제와 구별한다.
- ③ 부협의회를 부회로 바꾸어 의장 및 부회의원으로 조직하며, 부윤이 의장이 된다.
- ④ 부회는 부에 관한 사건 중 법령이 정한 사항을 의결하고, 부의 사무 및 출납을 검사하며, 관청의 자문에 응해 부의 공익에 관한 의견서를 부윤 및 기타 관계관청에 제출하고, 의회규칙을 정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다.
- ⑤ 부에 제1교육부회(第一教育部會) 및 제2교육부회(第二教育部會)를 설치하고, 이들은 각 특별경제에 관한 사건에 대해 전 항(前項)의 권한을 갖는다.
- ⑥ 제1교육부회는 의장 및 일본인 부회의원, 제2교육부회는 의장 및 조선인 부회의원으로 조직한다.
- ⑦ 부회 및 각 교육부회에는 부의장을 두고, 각각의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⑧ 부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대체로 종전과 같다.
- ⑨ 부회 또는 교육부회의 의결 또는 선거에 관해 부윤(府尹)이 재의(再議)에 부치거나

재선거를 행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

- ⑩ 도지사는 부회의 정회를 명하고 조선 총독은 부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
- ⑪ 의결기관 설치에 따른 각종 규정 및 특별경제 설치에 따른 관계규정을 둔다.

(3) 읍·면(邑面)

읍은 1931년 제2차 지방제도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는 단일하게 면이란 이름만 있었고, 병합 전에는 단순히 행정구획에 불과했었다. 면장(面長), 동리장(洞里長)의 수당은 협의비(協議費)로서 징수하고, 토목공사가 있을 때 부역을 부과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병합 후 면에 관한 규정(1910년 법령 제8호)을 만들고 그에 따라 면장의 수당 및 사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를 공인하였다. 1913년에는 면경비부담방법(面經費負擔方法)(부령 제16호)을 만들어 부과금을 징수했지만, 아직 사업능력은 인정하지 않아 공공사무는 여전히 협의비로 지출하였다. 그러나 지방의 사정상 이런 상태로 계속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1917년 제령 제1호로서 면제(面制)를 공포하고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그 요강은 다음과 같다.

- ① 면은 법령에 의해 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면의 사무는 면장이 담당한다.
- ③ 조선 총독이 지정한 면에는 상담역(相談役)을 두되, 상담역은 면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 도장관(道長官)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상담역의 정원은 도장관이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 정하며 4인 또는 6인으로 한다.
- ④ 면에는 리월(吏員)을 둘 수 있다.
- ⑤ 지정면(指定面)은 기채(起債)를 할 수 있다.

제1차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면제(面制) 중 일부를 개정(1920년 제령 제13호)하여 19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정면(指定面), 보통면(普通面) 모두 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면협의회를 두고 지정면의 상담역을 폐지한다.
- ② 협의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그 자격은 제국신민이며 나이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독립 생계를 경영하며, 1년 이상 면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조선 총독이 지정한 면부과금(面賦課金)을 연액 5원 이상 납부하는 자로 한다(결격요건 있음). 지정면에서는 선거로 선출하고, 보통면에서는 군수(郡守) 또는 도사(島司)가 임명한다.

③ 지정면에는 부장(副長)을 둔다.

1927년 제령 제15호로 면제 중 일부를 개정하여 보통면에 대해서도 기채능력을 인정했다.

1930년 제2차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면제를 읍·면제(邑面制)로 바꾸고(1930년 12월 제령 제12호) 1931년 4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종래의 지정면(指定面)을 읍으로 한다.
- ② 읍·면은 법인으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공사무 및 법령에 의해 읍·면에 속한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읍·면의 사무는 읍·면장이 담당한다.
- ④ 읍·면주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다.
- ⑤ 읍·면규칙의 제정권을 인정한다.
- ⑥ 읍에는 읍회를 두어 법령에 규정된 읍에 관한 사건을 의결하며, 읍의 사무 및 출납을 검사하고 읍의 공익에 관한 의견서를 읍장 또는 관계관청에 제출하며, 관청의 자문에 응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다.
- ⑦ 읍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요건은 종래와 큰 차이가 없다.
- ⑧ 면에 면협의회를 설치하여 면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는 것은 전과 같지만, 종래와 달리 면협의회원은 선거제로 바꾼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요건은 읍과 같다.
- ⑨ 읍장은 읍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再議)에 부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⑩ 군수(郡守) 또는 도사(島司)는 읍회 또는 면협의회의 정회를 명할 수 있다.
- ⑪ 조선 총독은 읍회 또는 면협의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⑫ 이상의 내용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부의 제도와 같도록 각종 규정을 정비한다.

(4) 학교비(學校費)

학교비 제도는 1920년 제1차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창시되었다. 병합 당시에는 지방의 초등교육비 지출에 관한 법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1911년 제령 제12호로 공립보통학교비용령(公立普通學校費用令)을 공포하고 동년 1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 공립보통학교의 설립, 유지는 부윤, 군수가 관장한다.

- ② 공립보통학교의 설립구역은 관계구역 내 면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총독의 인가를 받아 부윤, 군수가 정한다.
- ③ 공립보통학교 설립, 유지의 비용은 그 구역 내의 조선인이 부담한다.

제1차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조선학교비령(朝鮮學校費令)(1920년 제령 제14호)을 공포하고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 조선인 교육에 관한 비용 지출을 위해 부·군·도에 학교비를 둔다.
- ② 학교비(學校費)의 사무는 부윤, 군수, 도사가 담당한다.
- ③ 학교비(學校費)에는 학교평의회(學校評議會)를 두어 학교비에 관한 부윤, 군수, 도사의 자문에 응하게 한다.
- ④ 부의 학교평의회원은 선거로 선출하며, 군도(郡島)의 학교평의회원은 면협의회원이 선거한 후보자 중에서 군수, 도사가 임명한다.
- ⑤ 학교평의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⑥ 학교평의회원의 피선거자격은 25세 이상의 조선인 남자로서, 독립 생계를 경영하고, 1년 이상 해당 부·군·도 내에 주소가 있고, 학교비부과금(學校費賦課金) 연액 5원 이상을 납부하는 자로 한다(결격요건 있음). 부의 학교평의회원 선거권 역시 같다.

제2차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조선학교비령 중 일부를 개정(1930년 12월 제령 제13호)하여 부의 학교비를 폐지하고 1931년 4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그 개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 군도(郡島) 학교평의회원은 읍·면에서 읍회의원과 면협의회원이 선출한다.
- ② 학교평의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③ 학교비에는 이원을 둘 수 있다.
- ④ 각종 선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다.

(5) 학교조합(學校組合)

학교조합은 앞서 언급했듯이 병합 전부터 존재했는데, 병합 후에도 계속하여 존치시키다가 1913년 부제(府制) 제정에 따라 제령 제8호로 학교조합령을 공포하여 1914년 4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 조합의 목적을 일본인 교육 사무에 한정하고 종래 부대사업으로 시행했던 위생사

무 처리는 폐지하며, 현재 경영하는 수도, 묘지, 화장장 및 도장(屠場)에 한해서만 당분간 계속 경영할 수 있게 한다.

- ② 부제(府制) 시행지에도 학교조합을 설치케 하여 종전의 거류민단(居留民團) 사무 중 교육 사무를 승계한다.
- ③ 학교조합의 설립, 분리, 합동, 폐지, 구역변경은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부제 시행지의 학교조합 사무는 부윤이 관리하고, 기타 조합에는 도지사가 임면(任免)하는 관리자를 둔다.
- ⑤ 조합회의 조직을 정하고 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
- ⑥ 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조합규약으로 정한다.
- ⑦ 조합회는 조합에 관한 사건을 의결하고 조합의 출납을 검사할 수 있다.
- ⑧ 관리자는 조합회(組合會)의 의결에 대해 취소할 수 있다.

제2차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학교조합령 중 일부를 개정(1930년 12월 제령 제14호)하여 1931년 4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 학교조합의 구역 전부가 부의 구역과 겹칠 때는 학교조합은 소멸하고, 구역의 일부 만 부의 구역과 겹칠 때는 그 겹치는 구역은 학교조합의 구역에서 이탈한다.
- ② 조합원이 과소한 조합에서는 조합원총회로 조합회를 대신할 수 있다.
- ③ 조합회는 관리자 또는 관계관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조합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5) 지방자치의 실적

(1) 지방단체 재정의 추이

병합 당시의 지방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극히 유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단체의 재정도 빈약했었지만 문화의 발달, 민력의 증진에 따라 매년 확장되었다. 그 추이는 다음과 같다.

도지방비 세입출 예산 누년 비교표

세입

과목	1911년	1914년	1919년	1924년	1929년	1932년
재산수입	2,494	3,650		55,071	291,454	281,509
세수입	614,593	998,671	3,442,903	2,354,545	17,820,895	17,854,221
사용료 수수료		32,803		951,204	3,151,275	3,893,809
보조금	537,163	1,252,076	1,805,616	2,890,773	7,838,095	6,983,856
기채 (起債)				286,700	115,000	19,471,773
기타 수입	402,966	168,139	2,299,294	4,385,148	4,258,040	5,692,453
합계	1,557,216	2,455,339	7,547,813	19,923,441	33,474,759	54,177,621

비고) 1919년의 잡수입 중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와 재산수입이 포함됨.

세출

과목	1911년	1914년	1919년	1924년	1929년	1932년
토목비	726,116	813,836	1,846,244	4,848,121	6,480,077	23,494,445
권업비	192,766	626,630	1,581,734	5,131,104	7,106,563	9,315,113
수산비			962,580	1,017,489	1,378,079	1,165,030
교육비	354,292	677,210	2,113,713	5,229,664	12,378,158	11,613,643
위생비	66,884	92,786	77,964	332,105	2,739,958	3,331,914
사회 사업비	8,123	9,423	107,033	485,303	496,841	625,723
기타 지출	209,035	129,055	858,545	2,879,655	2,895,083	4,631,753
합계	1,557,216	2,348,940	7,547,813	19,923,441	33,474,759	54,177,621

부 세입출 예산 누년 비교표

세입

과목	1914년	1919년	1924년	1929년	1932년
재산수입			48,148	52,059	130,916
세수입	536,518	889,875	2,258,528	2,777,744	2,650,369
사용료 및 수수료	193,518	426,287	2,155,495	3,796,252	4,470,794
보조금	572,192	306,165	411,500	1,169,795	1,248,615
기채	260,574	259,789	1,629,391	5,610,500	2,527,228
기타 수입	592,029	506,005	1,962,405	2,843,886	2,329,861
제1부(第一部) 제2부(第二部) 특별경제수입					4,790,519
합계	1,562,805	1,882,124	6,503,075	13,406,354	13,357,790

비고) 1914년, 1919년의 재산수입액은 자세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기타 수입에 산입됨.

세출

과목	1914년	1919년	1924년	1929년	1932년
토목비	185,512	432,610	2,039,628	3,361,380	3,634,626
권업비			47,056	34,769	37,345
교육비					4,790,519
위생비	780,682	891,098	1,868,454	3,819,934	3,035,423
사회 사업비			1,579,091	686,839	570,370
기타 지출	1,187,637	964,413	2,931,238	8,347,314	608,019
합계	2,153,831	2,288,121	8,465,467	16,250,236	12,676,302

비고) 1. 기타 지출 중에는 자동차, 전차사업비, 경비비(警備費), 부채비(府債費) 등이 포함됨.

2. 1914년, 1919년의 권업비, 사회사업비, 위생비 중 오물소제비와 상수도비를 제한 금액은 자세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기타 지출에 산입됨.

읍·면 세입출 예산 누년 비교표

세입

과목	1912년	1914년	1919년	1924년	1929년	1932년
재산수입	7,528	21,698	137,661	567,119	1,095,458	1,193,526
세수입	2,316,519	2,331,833	4,311,585	12,039,104	13,386,985	13,616,540
교부금	180,882	258,222	337,820	1,125,657	1,188,440	1,133,567
사용료수수료			494,529	1,120,830	1,462,719	1,497,420
보조금			48,616	1,169,600	1,285,043	1,148,874
기채			13,800	226,919	421,957	1,853,142
기타수입	51,409	247,536	749,805	3,222,621	2,894,487	2,955,411
합계	2,556,338	2,859,289	6,093,816	19,471,850	21,735,089	23,398,480

세출

과목	1912년	1914년	1919년	1924년	1929년	1932년
토목비			172,905	1,693,020	1,518,459	2,080,348
권업비			281,613	1,293,329	1,643,373	1,558,129
수산비 (授產費)						
급여	1,966,450	2,071,246	3,302,232	10,010,086	10,541,486	10,386,425
위생비			477,766	1,412,644	1,536,363	1,817,517
사회사업비				5,748	17,060	82,639
기타지출	589,888	788,043	1,859,300	5,057,023	6,478,348	7,473,422
합계	2,556,338	2,859,289	6,093,816	19,471,850	21,735,089	23,398,480

비고) 1. 기타 지출에는 사무소비(事務所費), 기본재산조성 읍·면채비 등이 포함됨.

2. 1932년 예산에는 읍 예산이 포함됨.

학교비 세입출 예산 누년 비교표

세입

과목	1912년	1914년	1919년	1924년	1929년	1932년
재산수입	407,935	74,386	114,477	160,239	236,885	203,550
수입	13,254	43,521	527,716	7,005,502	3,269,390	3,202,157
사용료 및 수수료	2,113	35,788	118,978	2,499,666	3,080,213	2,810,807
보조금	385,341	475,940	1,151,995	1,938,624	6,315,972	6,394,703
기채					186,500	86,700
기타 수입	103,314	481,815	604,128	2,408,957	1,744,735	1,437,253
합계	911,957	1,111,450	2,517,294	14,012,988	14,833,659	14,135,170

세출

과목	1911년	1914년	1919년	1924년	1929년	1932년
보통학교비	843,225	1,026,743	2,052,784	8,918,196	12,831,997	12,272,229
실업보습학교비				78,046	301,562	308,603
학교비취급비		84,707	464,510	443,102	395,981	402,918
기타 지출	68,731	698,425	1,304,119	1,151,420		
합계	911,956	1,111,450	2,517,294	10,137,769	14,833,659	14,135,170

학교조합 세입출 예산 누년 비교표

세입

과목	1911년	1914년	1919년	1924년	1929년	1932년
재산수입				79,232	128,175	54,521
세수입	82,193	601,364	1,006,268	2,462,971	2,628,310	1,182,729
사용료 및 수수료			277,434	572,552	792,497	312,313
보조금	48,192	167,702	388,350	1,369,949	1,630,498	1,069,378
기채				181,028	216,500	131,700
기타 수입	44,744	426,863	719,193	783,795	666,901	329,905
합계	175,129	1,195,929	2,391,245	5,449,527	6,062,881	3,080,546

비고) 1911년 및 1914년의 재산수입과 사용료 및 수수료는 기타 수입에 포함됨.

세출

과목	1911년	1914년	1919년	1924년	1929년	1932년
사무비	31,954	28,160	157,403	353,213	354,376	263,541
교육비	101,043	810,988	1,809,454	4,335,774	4,788,443	2,377,059
기타 지출	42,132	266,781	424,388	760,540	920,062	439,946
합계	175,129	1,195,929	2,391,245	5,449,527	6,062,881	3,080,546

(2) 지방단체 선거 상황조(狀況調)

① 도지방비

도지방비에 자문기관을 설치했던 1920년 이래 후보자 선거를 4차례 행했는데, 그 선거 결과 임명된 평의회원 및 도지사가 자유 임명한 평의회원을 일본인과 조선인별로 나타내보면 별표와 같다.

② 부

부협의회원의 선거제도를 창시했던 제1차 지방제도 개정 때인 1920부터 제2차 지방제도 개정(1931년) 이후 제1회 선거에 이르기까지의 선거 성적은 별표와 같다.

③ 읍·면

읍의 제도는 1931년 제2차 지방제도 개정에 의해 창시되었으며, 종전에는 모두 면으로 불렸다. 그중 조선 총독이 지정한 면에서는 1920년 이후 협의회원을 선거로 뽑았고, 다른 면에서는 군수나 도사가 임명했다. 그 선거 또는 임명의 실적 및 제2차 지방제도 개정 후 제1회 선거실적은 별표와 같다.

④ 학교비 및 학교조합

학교비 및 학교조합은 각각 조선인 및 일본인별로 나누어진 단체로서, 학교평의회원은 부에서는 선거에 의해, 군도(郡島)에서는 군수나 도사의 임명에 의해, 학교조합회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 또는 임명했는데, 그 실적은 생략한다.

도평의회원 임명 상황조-1. 선거 및 임명(전체)

도명	정원	1920년		1924년		1927년		1929년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경기	37	11	26	10	27	10	27	10	27
충북	18	6	12	6	12	5	13	6	12
충남	24	7	17	6	18	7	17	7	17
전북	24	7	17	8	16	7	17	7	17
전남	34	7	27	7	27	7	27	9	25
경북	37	9	28	13	24	12	25	12	25
경남	33	7	26	9	24	8	25	9	24
황해	27	6	21	7	20	6	21	7	20
평남	24	7	17	6	18	6	18	5	19
평북	30	5	25	5	25	5	25	6	24
강원	31	5	26	5	26	5	26	5	26
함남	25	5	20	5	20	5	20	5	19

합북	18	5	13	6	12	6	12	6	12
합계	362	87	275	93	269	89	273	94	267

- 비고) 1.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과 직접 임명된 사람의 내역은 별지와 같음.
 2. 함경남도에서 1929년 정원에 비해 임명인원이 1명 적은 것은 선거를 취소한 군이 있었기 때문임.

도평의회원 임명 상황조-2. 후보자 선거에 의한 임명

도명	정원	1920년		1924년		1927년		1929년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경기	25	4	21	3	22	3	22	3	22
충북	12	2	10	3	9	2	10	3	9
충남	16	2	14	1	15	2	14	2	14
전북	16	2	14	3	13	2	14	2	14
전남	23	2	21	2	21	1	22	2	21
경북	25	3	22	7	18	4	21	4	21
경남	22	2	20	3	19	2	20	2	20
황해	18	2	16	2	16	1	17	2	16
평남	16	2	14	1	15	1	15		16
평북	20	1	19	1	19	1	19	1	19
강원	21		21		21		21		21
함남	17	1	16	1	16	1	16	1	15
함북	12	1	11	1	11	1	11	1	11
합계	243	24	219	28	215	21	222	22	219

- 비고) 1. 후보자는 정원의 2배를 선출했기 때문에, 실제 선출된 후보자 수는 대체로 본 표 인원의 2배임.
 2. 함경남도에서 1929년 정원에 비해 임명인원이 1명 적은 것은 선거를 취소한 군이 있었기 때문임.

도평의회원 임명 상황조-3. 직접 임명

도명	정원	1920년		1924년		1927년		1929년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경기	12	7	5	7	5	7	5	7	5
충북	6	4	2	3	3	3	3	3	3
충남	8	5	3	5	3	5	3	5	3
전북	8	5	3	5	3	5	3	5	3
전남	11	5	6	5	6	6	5	7	4
경북	12	6	6	6	6	8	4	8	4
경남	11	5	6	6	5	6	5	7	4
황해	9	4	5	5	4	5	4	5	4
평남	8	5	3	5	3	5	3	5	3
평북	10	4	6	4	6	4	6	5	5
강원	10	5	5	5	5	5	5	5	5
합남	8	4	4	4	4	4	4	4	4
합북	6	4	2	5	1	5	1	5	1
합계	119	63	56	65	54	68	51	71	48

부협의회원 · 부회의원 정원 및 당선자 조선인과 일본인별 비교표

구별	1920년			1923년			1926년			1929년			1931년		
	정원	일본인	조선인												
경성	30	18	12	30	15	15	30	18	12	30	18	12	48	30	18
인천	16	10	6	16	10	6	20	12	8	20	11	9	30	22	8
개성										16	4	12	27	7	20
군산	12	10	2	12	10	2	14	10	4	14	10	4	24	18	6
목포	12	9	3	14	9	5	14	9	5	14	9	5	27	19	8
대구	16	10	6	20	12	8	20	12	8	20	13	7	33	23	10
부산	20	16	4	20	17	3	30	27	3	30	28	2	33	24	9
마산	12	8	4	12	9	3	14	10	4	14	8	6	24	14	10
평양	20	13	7	20	10	10	30	11	19	30	13	17	33	19	14
진남포	14	10	4	14	8	6	14	8	6	16	9	7	27	15	12

신의주	12	9	3	12	8	4	14	9	5	16	11	5	27	16	11
원산	14	12	2	14	9	5	16	10	6	16	11	5	27	15	12
함흥										16	7	9	27	16	11
청진	12	8	4	12	9	3	14	10	4	14	11	3	27	19	8
계	190	133	57	196	126	70	230	146	84	266	163	103	414	257	157

비고〉 1. 1929년까지는 부협의회원, 1931년 분은 부회의원임.

2. 개성 및 함흥은 1930년 10월부터 부제를 시행하여 동년 11월 부협의회원 선거를 행했다. 따라서 이 두 부의 1929년의 숫자는 전술한 1930년의 선거결과를 기록한 것임.

부회의원 선거권자 및 인구 대 당선자 조표(1931년)

부명 (府名)	일본인					조선인				
	인구	유권자 수	유권자 1인 대 인구	입후보자 수 및 당선자 수	당선자 1인 대 인구	인구	유권자 수	유권자 1인 대 인구	입후보자 수 및 당선자 수	당선자 1인 대 인구
경성	97,758	14,849	6.5	입 44 당 30	3,258.6	251,228	7,907	31.7	입 29 당 18	13,957.1
인천	11,238	1,904	5.9	입 22 당 22	510.8	49,960	809	61.7	입 14 당 8	6,245.5
개성	1,390	236	5.8	입 16 당 7	198.5	47,007	1,562	30.0	입 22 당 20	2,350.3
군산	8,781	1,177	7.4	입 19 당 18	487.8	16,541	327	50.5	입 11 당 6	2,756.8
목포	8,003	884	9.0	입 21 당 19	421.2	23,488	437	53.7	입 13 당 8	2,936.0
대구	19,633	2,853	10.3	입 23 당 23	1,288.3	70,820	1,629	43.4	입 20 당 10	7,082.0
부산	44,273	5,520	8.0	입 34 당 24	1,844.7	85,585	1,678	51.0	입 15 당 9	9,509.4
마산	5,559	798	6.9	입 14 당 14	397.0	20,149	710	28.3	입 13 당 10	2,014.9
평양	18,157	2,799	6.4	입 26 당 19	955.6	116,650	2,765	42.1	입 16 당 14	8,332.1
진남포	5,894	832	7.0	입 17 당 15	392.9	30,415	596	51.0	입 15 당 12	2,534.5

신의주	7,907	1,223	6.4	입 18 당 16	494.1	29,003	846	34.2	입 12 당 11	2,636.6
원산	9,334	1,398	6.6	입 16 당 15	622.2	32,503	899	36.1	입 12 당 12	2,708.5
함흥	7,096	957	7.4	입 18 당 16	443.5	32,523	786	41.3	입 13 당 11	2,956.5
청진	8,355	1,396	5.9	입 19 당 19	439.7	24,003	722	33.2	입 10 당 8	3,000.3
계	263,378	36,826	7.1	입 307 당 257	1,024.8	829,875	21,673	38.2	입 225 당 157	5,285.8

부회의원 선거 득표조표(得票調標)(1931년)

부명	정원	투표총수	당선자 평균 득표 수	투표 증 무 효 투 표 수	한글 기재 투표 수	일본인					조선인						
						투표 자수	당선자 차점자	공제 과 부족 (△)	최 고	최 저	평균	투표 자수	당선자 차점자	공제 과 부족 (△)	최 고		
경성	48	18,497	315.91	140	1,397	12,222	당(當) 10,381 차(次) 1,842	과 (過) 1	727	233	346.03	6,275	당 4,783 차 1,351	△ 141	417	206	265.72
인천	30	2,387	73.20	17	166	1,729	당 1,794 차	과 65	132	43	81.54	658	당 402 차 174	△ 82	68	40	50.25
개성	27	1,374	43.85	13	135	223	당 248 차 126	과 151	49	23	35.42	1,151	당 936 차 51	△ 164	85	25	46.80
군산	24	1,361	51.29	2	64	1,086	당 1,055 차 34	과 3	88	37	58.61	275	당 176 차 94	△ 5	39	23	29.33
목포	27	1,228	41.62	1	60	822	당 814 차 33	과 25	87	25	42.84	406	당 310 차 70	△ 26	47	27	36.25

대구	33	4,016	105.78	32	244	2,625	당 2,641 차	과 16	210	66	114.82	1,391	당 850 차 493	△ 48	110	65	85.00
부산	33	6,663	164.18	40	484	5,131	당 4,381 차 890	과 140	250	127	182.54	1,532	당 1,037 차 315	△ 180	173	91	24.11
마산	24	1,346	52.79	15	201	735	당 766 차	과 32	79	34	54.71	612	당 501 차 64	△ 47	89	32	50.10
평양	33	4,892	116.35	26	275	2,599	당 2,332 차 373	과 110	182	88	122.73	2,297	당 1,496 차 665	△ 136	155	85	106.85
진남포	27	1,266	42.11	5	63	722	당 667 차 51	부족 △ 4	72	30	44.46	544	당 470 차 73	△ 1	72	29	39.16
신의주	27	1,896	67.70	5	130	1,125	당 1,106 차 54	과 35	104	42	69.12	771	당 722 차 9	△ 40	92	36	65.63
원산	27	1,893	68.76	13	162	1,182	당 1,176 차 23	과 17	117	48	78.40	711	당 68 차	△ 30	71	38	56.75
함흥	27	1,556	53.96	9	155	864	당 832 차 38	과 6	84	29	52.00	692	당 625 차 52	△ 15	79	34	56.81
청진	27	1,853	66.37	10	191	1,324	당 1,242 차 1	과 19	130	35	65.36	629	당 550 차 50	△ 29	84	46	68.75
계	414	50,228	103.80	328	3,727	32,284	당 29,435 차 3,465	과 616	727	23	114.53	17,944	당 13,539 차 3,461	△ 944	417	23	86.23

지정면협의회원, 읍회의원 정수(定數) 및 당선자 조선인과 일본인별 비교표

도명	읍명	1920년			1923년			1926년			1929년			1931년		
		정원	일본인	조선인	정원	일본인	조선인									
경기	수원	10	2	8	12	5	7	12	5	7	12	5	7	12	6	6
	송도	14	3	11	14	3	11	14	4	10	14	4	10	1930년 1월 부로 승격 (개성부)		

	영등포	10	5	5	10	5	5	10	9	3	10	6	4	10	6	4	
충북	청주	8	5	3	10	7	3	12	8	4	12	7	5	12	7	5	
	충주		12	7	5	12	6	6	14	6	8						
충남	공주	10	7	3	10	8	2	12	9	3	12	8	4	12	7	5	
	조치원	8	6	2	10	7	3	10	8	2	10	7	3	10	6	4	
	대전	10	8	2	10	9	1	12	10	2	12	11	1	14	11	3	
	강경	10	6	4	10	6	4	10	6	4	12	7	5		12	7	5
	천안		12	7	5	12	7	5	12	8	4						
전북	전주	12	6	6	12	8	4	14	7	7	14	10	4	14	7	7	
	익산	10	3	7	10	5	5	12	6	6	12	6	6	12	7	5	
	정주 (井州)		12	7	5	12	6	6	12	7	5						
전남	광주 (光州)	12	7	5	12	7	5	14	8	6	14	9	5	14	10	4	
	여수							12	5	7	12	6	6	14	6	8	
	제주										14	4	10	14	4	10	
경북	금천 (金泉)	10	6	4	12	7	5	12	7	5	12	8	4	12	7	5	
	포항	10	6	4	10	7	3	12	6	6	12	7	5	12	8	4	
	경주							12	3	9	12	3	9	12	4	8	
	안동							12	5	7	12	6	6	12	5	7	
경남	상주 (尙州)							14	7	7	14	5	9	14	7	7	
	진주	12	4	8	12	6	6	12	6	6	12	6	6	14	7	7	
	밀양							12	7	5	12	6	6	12	5	7	
	동래 (東萊)							12	3	9	12	3	9	12	2	10	
	진해	12	6	6	12	7	5	12	8	4	12	8	4	12	8	4	
황해	통영	12	4	8	12	6	6	12	6	6	12	7	5	14	8	6	
	해주 (海州)	12	6	6	12	6	6	12	6	6	12	7	5	14	8	6	
	사리원 (沙里院)							12	7	5	12	7	5	14	5	9	
겸이포 (兼二浦)	겸이포 (兼二浦)	10	9	1	12	10	2	알 수 없음			12	8	4	12	9	3	

평남	안주 (安州)							12	3	9	12	3	9	12	2	10	
평북	의주 (義州)	12	6	6	10	7	3	12	4	8	10	4	6	12	4	8	
	정주 (定州)							10	4	6	10	5	5	10	5	5	
	선천 (宣川)							12	3	9	12	3	9	12	3	9	
	강계 (江界)							10	3	7	12	4	8	10	4	6	
강원	춘천	8	4	4	10	5	5	10	7	3	10	6	4	10	6	4	
	철원							12	6	6	12	4	8	12	5	7	
	강릉							12	5	7	12	3	9	12	5	7	
함남	함흥	12	3	9	14	5	9	14	6	8	14	6	8	1930년 10월 부로 승격			
	북청 (北青)							12	2	10	12	3	9	12	2	10	
함북	나남 (羅南)	10	8	2	12	10	2	12	8	4	12	9	3	12	9	3	
	성진 (城津)	10	3	7	10	4	6	10	5	5	12	6	6	12	5	7	
	회령 (會寧)	12	7	5	12	6	6	12	6	6	12	6	6	12	5	7	
	옹기 (雄基)							12	6	6	12	5	7	14	5	9	
계		43	256	130	126	270	156	114	488	243	245	518	258	260	506	247	259

비고) 1. 1929년까지는 지정면협의회원, 1931년은 읍회의원임.

2. 공란은 선거 당시 지정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재사항이 없음.

음희의원 선거권자 및 인구 대 당선자 조표(1931년)

도명	읍명	일본인					조선인				
		인구	유권자 수	유권자 1인 대 인구	입후보자 수	당선자 1인 대 인구	인구	유권자 수	유권자 1인 대 인구	입후보자 수	당선자 1인 대 인구
경기	수원	1,608	164	9.8	입(立) 7 당(當) 6	268.0	11,116	185	60.0	입 10 당 6	1,852.6
	영등포	958	95	10.0	입 8 당 6	159.6	6,834	90	75.9	입 5 당 4	1,708.5
충북	청주	2,696	293	9.2	입 7 당 7	385.1	13,224	217	60.9	입 5 당 5	2,644.8
	충주	1,121	166	6.7	입 7 당 6	186.8	21,165	277	76.2	입 8 당 8	2,645.6
충남	공주	2,054	159	12.9	입 9 당 7	293.4	10,016	94	106.5	입 6 당 5	2,003.5
	조치원	1,262	139	9.0	입 6 당 6	210.3	7,028	104	67.5	입 7 당 4	1,757.0
	대전	6,523	548	11.9	입 11 당 11	596.6	14,701	126	116.6	입 3 당 3	4,900.3
	강경	1,548	164	9.4	입 7 당 7	221.1	10,794	145	74.4	입 7 당 5	2,158.8
	천안	1,119	147	7.6	입 8 당 8	139.6	11,387	116	98.1	입 5 당 4	2,846.7
전북	전주	5,204	428	12.1	입 7 당 7	743.4	32,136	345	93.1	입 10 당 7	4,990.8
	익산	3,789	322	11.7	입 8 당 7	541.2	13,801	182	75.8	입 6 당 5	2,760.2
	정주(井州)	1,230	157	7.8	입 6 당 6	205.0	14,398	147	97.9	입 7 당 6	2,399.6
전남	광주(光州)	6,199	514	12.0	입 10 당 10	619.9	26,113	310	82.8	입 8 당 4	6,528.2
	여수	2,885	181	15.9	입 8 당 6	480.8	18,885	294	64.2	입 10 당 8	2,360.6
	제주	585	65	9.0	입 5 당 4	146.2	37,915	581	65.2	입 16 당 10	3,791.5

경북	금천	1,870	196	9.5	입 9 당 7	267.1	12,847	254	50.5	입 7 당 5	2,569.8
	포항	2,164	191	11.3	입 8 당 8	270.5	9,241	131	70.5	입 8 당 4	2,312.7
	경주	845	119	7.1	입 4 당 4	211.2	16,508	341	48.4	입 10 당 8	2,063.5
	안동	737	104	7.0	입 5 당 5	147.4	13,499	214	63.0	입 8 당 7	1,928.5
	상주	1,147	125	9.1	입 7 당 7	163.8	25,478	424	60.0	입 11 당 7	3,639.7
경남	진주	2,268	211	10.7	입 7 당 7	324.0	20,859	301	69.2	입 9 당 7	2,979.8
	밀양	1,033	132	7.8	입 6 당 5	206.6	14,473	233	62.1	입 11 당 7	2,067.5
	동래 (東萊)	996	65	15.3	입 2 당 2	498.0	17,924	306	58.5	입 11 당 10	1,792.4
	진해(鎮海)	4,470	343	13.0	입 9 당 8	558.5	13,439	141	95.3	입 5 당 4	3,359.7
	통영	3,075	308	9.9	입 10 당 8	384.3	17,911	257	69.6	입 7 당 6	2,985.1
황해	해주	2,640	263	10.0	입 9 당 8	330.0	20,234	255	79.3	입 10 당 6	3,372.3
	사리원	1,789	136	13.1	입 6 당 5	257.8	19,377	251	77.1	입 11 당 9	2,153.0
	겸이포 (兼二浦)	2,489	201	12.3	입 10 당 9	276.5	9,182	67	137.0	입 5 당 3	3,060.6
평남	안주 (安州)	347	22	15.7	입 2 당 2	173.5	16,214	208	77.9	입 18 당 10	1,621.4
평북	의주	482	54	8.9	입 4 당 4	120.5	9,367	184	50.9	입 11 당 8	1,170.8
	정주 (定州)	931	90	10.3	입 5 당 5	186.2	8,085	136	59.4	입 11 당 5	1,617.0
	선천 (宣川)	492	55	8.9	입 3 당 3	164.0	12,959	322	40.2	입 11 당 9	1,439.8
	강계 (江界)	639	69	9.2	입 4 당 4	159.7	8,823	149	59.2	입 10 당 6	1,470.5

	춘천	1,709	228	7.4	입 9당 6	284.8	7,453	118	63.1	입 4 당 4	1,863.2	
강원	철원	1,001	133	7.5	입 7 당 5	200.2	12,993	233	55.7	입 14 당 7	1,856.1	
	강릉	822	101	8.1	입 5 당 5	164.4	12,637	202	62.5	입 9 당 7	1,805.2	
함남	북청 (北青)	673	89	7.5	입 4 당 2	336.5	15,882	403	39.4	입 20 당 10	1,588.2	
합북	나남 (羅南)	6,078	376	16.1	입 9 당 9	675.3	8,763	143	61.2	입 5 당 3	2,921.0	
	성진 (城津)	1,429	90	15.8	입 5 당 5	285.8	9,810	178	55.1	입 8 당 7	1,401.4	
	회령 (會寧)	2,274	177	12.8	입 7 당 5	454.8	14,880	285	52.5	입 9 당 7	2,125.7	
	웅기 (雄基)	2,213	194	11.4	입 6 당 5	442.6	18,704	262	71.3	입 12 당 9	2,078.2	
총계		41	83,394	7,614	10.9	입 276 당 247	337.6	617,055	9,216	66.9	입 368 당 259	2,382.4

읍회의원 선거 득표 조표(1931년)

도명	읍명	정원	투표총수	당선자 평균 특표 수	투표 종 무 효 투 표 수	한글 기재 투표 수	일본인					조선인						
							투표 자수	당선자 차점자 (△)	차감 과부 족 (△)	최고 최저	평균	투표 자수	당선자 차점자 (△)	차감 과부 족 (△)	최고	최저	평균	
경기	수원	12	340	22.75		30	161	당(當) 149 차(次) 15	3	31	19	24.83	179	당 124 차 52 △ 3	△ 3	23	19	20.66
	영등포	10	177	15.10	1	42	90	당 97 차 15	22	20	11	16.16	87	당 54 차 10 △ 23	△ 23	16	11	13.50
충북	청주	12	442	36.16	6	40	260	당 269 차	9	61	16	38.42	182	당 165 차 2 △ 15	△ 15	50	23	33.00

	충주	14	404	27.57	4	104	159	당 149 차 14	4	34	18	24.83	245	당 237 차	△ 8	43	18	29.62
충 남	공주	12	223	16.08	1	8	135	당 118 차 20	3	20	13	16.75	88	당 75 차 9	△ 4	17	13	15.00
	조치원	10	223	20.20	5	34	135	당 150 차	15	31	19	25.00	98	당 52 차 26	△ 20	15	10	13.00
	대전	14	642	45.50	5	23	522	당 536 차	14	75	34	48.72	120	당 101 차	△ 19	42	24	33.66
	강경	12	293	22.41		43	159	당 170 차	11	30	20	24.28	134	당 99 차 24	△ 11	23	15	19.80
	천안	12	249	19.75		34	143	당 148 차	5	23	14	18.50	106	당 89 차 12	△ 5	26	16	22.25
전 북	전주 (全州)	14	712	45.78	1	29	404	당 407 차 2	5	95	40	58.14	308	당 234 차 68	△ 6	49	25	33.42
	익산	12	453	35.66		27	288	당 280 차 4	△ 4	47	29	40.00	165	당 148 차 21	4	34	26	29.60
	정주 (井州)	12	298	23.41	1	23	154	당 160 차	6	34	23	26.66	144	당 121 차 16	△ 7	23	18	20.16
전 남	광주 (光州)	14	787	48.92	4	46	491	당 500 차	9	64	34	50.00	296	당 185 차 98	△ 13	59	34	46.22
	여수	14	439	26.57	4	38	171	당 147 차 34	10	31	18	24.50	268	당 225 차 29	△ 14	50	19	28.12
	제주	14	563	32.64	12	114	64	당 98 차 14	48	34	18	24.50	499	당 359 차 80	△ 60	63	22	35.90
경 북	금천	12	417	29.08	2	65	191	당 204 차 36	49	43	22	29.14	226	당 145 차 30	△ 51	39	23	29.00
	포항	12	306	21.08	2	41	179	당 180 차	1	32	18	22.50	127	당 73 차 51	△ 3	23	16	18.25
	경주	12	413	31.41	1	123	113	당 133 차	20	44	22	33.22	300	당 244 차 35	△ 21	42	21	30.50
	안동	12	295	23.50		3	99	당 117 차	18	32	18	24.40	196	당 165 차 13	△ 18	45	15	23.57
	상주 (尙州)	14	506	30.71	10	170	120	당 203 차	83	49	23	29.00	386	당 227 차 66	△ 93	39	24	32.42
경 남	진주	14	481	31.78	2	40	201	당 210 차	9	34	27	30.00	280	당 235 차 34	△ 11	42	20	33.57

	밀양	12	350	23.25	5	102	129	당 120 차 19	10	27	22	24.00	221	당 159 차 47	△ 15	28	20	22.71
	동래 (東萊)	12	346	27.25	1	31	63	당 64 차	1	33	31	32.00	283	당 263 차 18	△ 2	32	19	26.30
	진해	12	450	33.83	1	43	320	당 302 차 24	6	50	30	36.50	130	당 104 차 19	△ 7	28	24	26.00
	통영	14	512	32.85	5	22	293	당 272 차 28	7	43	22	34.00	219	당 188 차 19	△ 12	39	21	31.33
황해	해주	14	468	28.42	4	18	242	당 229 차 15	2	39	18	28.62	226	당 169 차 51	△ 6	34	19	28.16
	사리원	14	359	23.14		10	126	당 113 차 14	1	29	18	22.60	233	당 211 차 21	△ 1	32	17	23.44
	겸이포 (兼二浦)	12	253	18.41	1	2	188	당 181 차 10	3	24	16	20.11	65	당 40 차 21	△ 4	14	13	13.33
평남	안주	12	214	13.50		13	22	당 28 차	6	18	10	14.00	192	당 134 차 52	△ 6	16	10	13.40
평북	의주	12	219	16.16	1	6	53	당 56 차	3	19	11	14.00	166	당 138 차 23	△ 5	23	10	17.25
	정주 (定州)	10	201	15.40		5	80	당 82 차	2	20	14	16.40	121	당 72 차 47	△ 2	23	11	14.40
	선천 (宣川)	12	345	25.75	4	39	52	당 60 차	8	24	16	20.00	293	당 249 차 32	△ 12	35	22	27.66
	강계 (江界)	10	192	16.00		4	66	당 70 차	4	20	16	17.50	126	당 90 차 33	△ 4	17	11	15.00
강원	춘천	10	301	27.50	1	25	198	당 178 차 25	5	45	22	29.66	103	당 97 차	△ 6	28	21	24.24
	철원	12	353	22.00	1	42	131	당 119 차 14	2	34	16	13.80	222	당 145 차 74	△ 3	31	16	20.28
	강릉	12	278	18.83	1	41	90	당 91 차	1	20	16	18.20	188	당 135 차 51	△ 2	27	15	19.28
함남	북청 (北青)	12	471	24.16	3	48	82	당 44 차 39	1	24	20	22.00	389	당 246 차 139	△ 4	33	21	24.60
함북	나남 (羅南)	12	498	38.08		14	363	당 368 차	5	58	29	40.88	135	당 89 차 41	△ 5	36	25	29.66
	성진 (城津)	12	245	19.16	3	44	81	당 101 차	19	25	17	20.20	163	당 129 차 12	△ 22	21	15	18.42

	회령 (會寧)	12	418	27.91	3	42	157	당 126 차 39	8	29	23	25.20	261	당 209 차 41	△ 11	38	24	29.85
	옹기 (雄基)	14	417	24.85	6	101	176	당 160 차 16		40	23	32.00	241	당 188 차 47	△ 6	26	19	20.88
계		41	506	15,563	26.87	102	1,789	7,152	당 7,189 차 397	434	95	10	29.10	8,411	당 6,412 차 1,463	△ 59	10	24.75

면(지정면 제외)협의회원 임명에 관한 조(1920년)

도명	면수	면협의회원 수			협의회원 총인원에 대한 비율	
		일본인	조선인	계	일본인	조선인
경기	246	40	2,262	2,302	0.017	0.983
충북	109	17	1,041	1,058	0.016	0.984
충남	171	64	1,586	1,650	0.039	0.961
전북	186	71	1,685	1,756	0.040	0.960
전남	268	66	2,556	2,622	0.025	0.975
경북	270	59	2,663	2,722	0.022	0.978
경남	254	105	2,321	2,426	0.043	0.957
황해	224	31	2,049	2,080	0.015	0.985
평남	167	13	1,557	1,570	0.008	0.992
평북	193	18	1,824	1,842	0.010	0.990
강원	177	25	1,677	1,702	0.015	0.985
함남	140	12	1,434	1,446	0.008	0.992
함북	78	5	725	730	0.007	0.993
합계	2,483	526	23,380	23,906	0.022	0.978

면(지정면 제외)협의회원 임명에 관한 조(1923년)

도명	면수	면협의회원 수			협의회원 총인원에 대한 비율	
		일본인	조선인	계	일본인	조선인
경기	246	47	2,263	2,310	0.020	.980
충북	108	23	1,045	1,068	0.022	0.978
충남	170	73	1,587	1,660	0.044	0.956
전북	185	87	1,687	1,774	0.049	0.951
전남	267	80	2,560	2,640	0.030	0.970
경북	267	68	2,618	2,686	0.025	0.975
경남	252	125	2,309	2,434	0.051	0.949
황해	223	42	2,028	2,070	0.020	0.980
평남	162	15	1,501	1,516	0.010	0.990
평북	188	18	1,776	1,794	0.010	0.990
강원	175	27	1,683	1,710	0.016	0.984
함남	139	19	1,415	1,434	0.013	0.987
함북	78	9	731	740	0.012	0.988
합계	2,460	633	23,203	23,836	0.027	0.973

면(지정면 제외)협의회원 임명에 관한 조(1926년)

도명	면수	면협의회원 수			협의회원 총인원에 대한 비율	
		일본인	조선인	계	일본인	조선인
경기	246	64	2,270	2,334	0.027	0.973
충북	108	23	1,067	1,090	0.021	0.979
충남	170	80	1,602	1,682	0.048	0.952
전북	185	98	1,724	1,822	0.054	0.946
전남	265	97	2,561	2,658	0.036	0.964
경북	267	78	2,638	2,716	0.029	0.971
경남	252	134	2,324	2,458	0.055	0.945
황해	223	42	2,028	2,070	0.020	0.980
평남	162	20	1,538	1,558	0.013	0.987
평북	188	20	1,833	1,853	0.011	0.989
강원	175	32	1,704	1,736	0.018	0.982

합남	139	24	1,430	1,454	0,017	0.983
합북	77	15	725	740	0,020	0.980
합계	2,457	727	23,444	24,171	0,030	0.970

면(지정면 제외)협의회원 임명에 관한 조(1929년)

도명	면수	면협의회원 수			협의회원 총인원에 대한 비율	
		일본인	조선인	계	일본인	조선인
경기	246	57	2,235	2,292	0.02	0.98
충북	104	24	1,028	1,052	0.02	0.98
충남	170	72	1,626	1,698	0.04	0.96
전북	185	105	1,721	1,826	0.06	0.94
전남	262	112	2,520	2,632	0.04	0.96
경북	267	85	2,631	2,716	0.03	0.97
경남	242	126	2,268	2,394	0.05	0.95
황해	208	44	1,920	1,964	0.02	0.98
평남	188	18	1,838	1,856	0.01	0.99
평북	137	19	1,341	1,360	0.01	0.99
강원	173	41	1,679	1,720	0.02	0.98
합남	139	32	1,426	1,458	0.02	0.98
합북	77	18	738	756	0.02	0.98
합계	2,398	753	22,971	23,724	0.03	0.97

면협의회원 선거권자 및 인구 대 당선자 조표(1931년)

도명	면수	일본인				조선인					
		인구	유권자 수	유권자 1인 대 인구	당선 자수	당선자 1인 대 인구	인구	유권자 수	유권자 1인 대 인구	당선 자수	당선자 1인 대 인구
경기	246	13,458	1,075	12.5	102	13.9	1,536,716	25,336	60.6	2,208	695.9
충북	104	4,030	365	11.0	43	93.7	832,239	13,433	61.9	1,031	807.2

충남	170	9,621	843	11.4	111	86.6	1,273,316	18,993	67.0	1,601	795.2
전북	185	13,557	984	13.7	143	94.6	1,343,493	14,737	91.1	1,693	793.5
전남	263	22,280	1,966	11.3	215	103.6	2,091,019	31,437	66.5	2,477	844.1
경북	267	13,728	1,105	12.4	101	135.9	2,182,670	42,044	51.9	2,639	827.0
경남	247	21,113	1,617	13.0	146	144.6	1,784,898	29,669	60.1	2,300	776.0
황해	218	10,268	660	15.5	80	128.3	1,401,549	22,032	63.6	2,018	694.5
평남	146	7,144	427	16.7	31	230.4	1,097,553	17,775	61.7	1,439	762.7
평북	189	8,845	451	19.6	35	252.7	1,392,389	19,399	71.7	1,877	741.8
강원	173	6,996	630	11.1	59	118.5	1,365,882	21,017	64.9	1,701	802.9
함남	138	17,606	703	25.0	56	314.3	1,360,362	15,649	86.9	1,420	956.0
함북	77	6,320	336	18.8	27	234.0	606,640	9,779	62.0	741	818.6
계	2,423	154,966	11,162	13.8	1,149	134.8	18,268,726	281,300	64.9	23,145	789.3
도명	계										
	인구	유권자 수		유권자 1인 대 인구		당선자 수		당선자 1인 대 인구			
경기	1,550,174	26,411		58.6		2,310		671.0			
충북	836,269	13,798		60.6		1,074		778.6			
충남	1,282,937	19,836		64.6		1,712		749.3			
전북	1,357,050	15,721		86.3		1,836		739.1			
전남	2,113,299	33,403		63.2		2,692		785.0			
경북	2,196,398	43,149		50.9		2,740		801.6			
경남	1,806,011	31,286		57.7		2,446		738.3			
황해	1,411,817	22,692		62.2		2,098		672.9			
평남	1,104,697	18,202		60.6		1,470		751.4			
평북	1,401,234	19,850		70.5		1,912		732.8			
강원	1,372,878	21,647		63.4		1,760		780.0			
함남	1,377,968	16,352		84.2		1,476		933.5			
함북	612,960	10,115		60.5		768		798.1			
계	18,423,692	292,462		62.9		24,294		758.3			

〈출전 : 『中樞院官制改定ニ關スル參考資料』, 1933년,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3. 복면생(覆面生), 중추원 지방 참의 평판기

복면생(覆面生)

중추원이라면 벌써 세간에 정평(定評)이 있는 터인즉 그 참의 여하가 원래 문제 삼을 것이 없지만 특히 지방 참의에 이르러서는 어느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자못 주목을 끄는 점이 적지 않기로 여기에 지면(誌面)의 한편을 할애한다.

중추원 참의에 대하여는 사회 민중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총독정치로서는 실로 가볍지 않은 의의가 있고 그 존재에는 공적(公的) 요소가 있어 직접, 간접으로 국정상의 공헌이 있기를 요구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환언하면 연액(年額) 20여만 엔의 경비를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만한 가치와 기대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릇 참의 될 자는 학식, 덕망이 있고 총독정치를 잘 이해하는 자여야 한다.



그러나 종래에 지방 참의의 인선(人選) 실적을 보면 자못 유감스러운 점이 많다. 학식, 덕망과는 상관이 없는 자못 관현에게 접근하는 정도의 긴밀 여하로서 선임되었다. 따라서 그 존재는 지방부호(地方富豪)의 사환열(仕宦熱)²⁾ 권세욕(權勢慾)을 충족하여 주는 유일한 등용문이 되어 저들은 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허다한 운동에 몰두하고 종종 추문(醜聞)을 전하였으니, 호피참의(虎皮參議), 마작참의(麻雀參議) 등의 호칭이 오고대부(五羔大夫)로 하여금 안색(顏色)이 없게 하는 관(觀)이 있었다.



이렇게 하여 선임된 그들은 국가, 사회와 총독정치를 생각하기보다 대개는 그 사리사욕을 위하여 나아가서는 관현에게 아첨하고 연회비(宴會費)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충근(忠勤)을 삼으며, 물러나서는 관권(官權)을 배경으로 빈약한 지방민에 대하여 유형무형의 사리사욕을 채우게 함으로써 상례(常例)를 삼았다. 심하게는 그들은 가련한 농촌의 소작인을 착취하여 도회지(都會地)의 축첩생활(蓄妾生活)을 하는 여가 있는 생활에 자줏빛(紫光)을 더하는 한 방편으로 관현과 교제하는 기회를 얻기 위하여 몰두하는 자도 있었다. 연전(年前) 어느 지방관현이 주최하는 연회석상에서 모 참의는 스스로 지방 유력

2) 사환(仕宦)은 벼슬살이를 한다는 뜻으로 출세욕을 말함.

자의 최고 대표 되는 면허(免許)를 맡은 것같이 그 좌석의 최상위를 차지하여 조금이라도 지방장관(地方長官)에 가까이 접근하여 고등관(高等官) 몇 등 되는 사무관(事務官), 부윤(府尹), 군수(郡守)를 눈 아래 깥아보려고 그 좌석을 다투어서 말썽거리가 되던 것은 저간(這間)의 소식을 잘 말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 같은 천박한 명리욕(名利慾)은 홀로 조선 부호(富豪)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선진 일본에서도 그 선례가 있었으니 저 매동사건(買動事件) 같은 것이 그 일례이다. 이것이 세도인심(世道人心)에 해독을 끼침이 얼마나 심한가는 당시 상하가 모두 분개하던 것으로써 익히 알 것이다. 이러한 것은 조선의 부호들도 깊이 감계(鑑戒)함이 있어야 할 것이요, 반드시 모방을 아니하여도 좋을 것이다.



부(富)하면 귀(貴)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므로 이미 여유가 있는 자는 지방공공(地方公共)을 위하여 공헌하며 사회공익을 위하여 공헌하며 빈자약자를 위하여 부조하여 적선종덕(積善種德)으로써 낙사(樂事)를 삼아 사회를 윤택하게 하고 인심을 정화하여 일반의 존경과 신망을 받고, 때로 지방민의 추천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며, 또는 관헌의 원용(援用)에 의하여 관직위훈을 받게 되는 것은 모두 당연한 순서이며 참된 영광이라 할 것이다. 사람이 이것을 귀하다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영직(榮職)에 있는 까닭이 아니라 그의 평소의 덕업과 명망이 사람을 경복(敬服)하게 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중추원에 지방 참의의 자리를 만든 본의도 그것이 시정상(施政上) 어떤 의의가 있다면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지방의 부호 명망가를 대우하여 직접, 간접으로 세도인심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종래의 실황은 그렇지 않고 도리어 추악한 영향을 끼침이 아니 될 운명이었던 것이다.



3년이라는 임기도 이번에 만기되고 6월 3일로써 다시 선임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다소 개선된 형적(形蹟)이 있는 것은 당국을 위하여 다행이라 할 것이다. 이번에는 운동비로써 획득하였다는 추문(醜聞)이 없는 것이 그 하나요, 다소 지방에 신망 있는 신인물(新人物)이 참가한 것이 그 둘이다.

경기의 원덕상(元惠常, 47세) 군의 재임(再任)은 어디로 보든지 적임이다. 그는 신정(新政)을 이해구가(理解囉歌)하는 가운데도 상당한 식견이 있고 변론이 능하여 관민 간에 온화타당하게 조화시키는 수완이 있으므로 관변(官邊)에 칭송을 들은 지 오래였다.

그리고 조선사람 사이에서도 비교적 적(敵)이 적고 악평이 없는 사람이다. 당세(當世)의 중추원 참의로는 실로 전형적 인물이라 하겠다. 혹은 말하되 그는 초년기에 근고독학(勤苦篤學)의 출신이거늘 성공, 오늘날 엄연한 부르주아의 반열에 올라 구령에 빠졌을 때를 생각지 않고 시대의 번뇌에 이해(理解)가 없다고 비난하는 이가 있다. 그러나 이는 본인의 소질이 아니라 최근에 관선(官選) 도평의원으로 어용(御用)에 진력한 지 몇 해가 되므로 자연 그러한 색채로 보이게 된 것일 뿐이니 사리를 달관하는 원(元) 군에게는 자못 적당치 못한 평판이라 하겠다. 자못 나로서 그의 부족을 말하라면 군은 원래 충남 출신이요, 지금은 경성으로 옮겼다 할지라도 도내에는 본도에 세거(世居)하고 지반성망(地盤聲望)이 높은 다수의 선배가 있을 것이니 그러한 이를 위하여 군이 이것을 사양하지 않고 재차 수임한 것은 군을 위하여 미덕이 아니라 할 뿐이다.

◇

충북의 이경식(李敬植, 48세) 군의 신임은 전례에 없는 특례이다. 탁지부주사(度支部主事), 법부주사(法部主事), 군서기(郡書記), 군수(郡守)를 역임하여 최근에 옥천군수로서 퇴관한 사람, 충북에 봉직한 지는 이미 20여 년이 지났고, 간 곳마다 상당한 치적을 내어 명군수로 칭송을 듣더니, 등급이 높은 까닭인지 당년 사십팔의 한창시절에 그만 정리를 당하고 나왔다. 군은 총독정치를 이해하는 점으로 보든지, 인물과 식견으로 보든지 그 지방의 누구만 못할 것이 없는 터인즉, 지방 참의로 취임된 것이 올바로 사람을 정한 바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적 지반(地盤)은 아직 개척할 여지가 많은 터이다. 충북의 많은 후보자를 제쳐놓고 특히 이군을 추대한 것은 생각건대 도당국이 이군의 재관 중의 공적을 고려하여 많은 동정을 표한 결과일 것이니, 이 점에서는 낙선후보자들도 아마 양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은 퇴관의 불만을 스스로 억제하고 지방 참의답게 관민 사이에 분주절충(奔走折衝)하여 당국의 기대를 저버림이 없게 하라. 다른 일본 참의로 승보(陞補)될 수도 없지 않을 것인가.

◇

충남의 이기승(李基升), 김병원(金炳鶴) 양 군을 발탁한 것은 자못 의외로 출색(出色)의 미가 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특색이 있는 명망가인 까닭이다. 종래 충남의 표면사회에는 재산의 김윤환(金潤煥) 군, 교제(交際)의 김갑순(金甲淳) 군이 있는 줄만 알고 덕망인격의 이기승, 김병원 양 군이 있는 것을 망각한 감이 있었던 것은 식자의 유감이거나와 이번에 많은 후보자 운동자들을 일소하고 이 양 군의 임명을 보게 된 것은 실로

일군개경(一軍皆驚)의 관이 있으니 이를 추거(推舉)한 충남도 당국도 역일생광(亦一生光)이라 할 것이다.

이기승 군은 원래 태안의 한족(寒族)으로 자소(自少)로 어염농업에 근면하여 입립신고(粒粒辛苦) 50여 년에 지금은 내포(內浦)에서 부명(富名)을 듣는 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의 일생은 곧 입지전중의 인물로 근검치산(勤儉治產)의 살아있는 교범(活教範)이라 할 만하다. 특히 그는 일찍부터 식림사업에 착목하여 타인이 등한시하는 독산혁토(禿山赫土)를 천신만고로 종식에 힘을 써서 연구세심(年久歲深)하여 지금 그 부근 수천 정보(町步)는 일대 밀림지대를 이루었다. 그 선견지명과 적소성대(積小成大)로 간단없는 노력과 신고, 성공의 경력담을 들으면 목석이 아니고는 한 줄기 눈물을 안 흘릴 수 없다. 이러한 여풍(餘風)으로 이 부근에는 대개 산림이 울창함이 조선에서 드물게 보는 바라 한다. 군은 또 그 농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농장을 만들어 지방 농민에게 농촌 개량의 모범을 보였고, 또 농업실습학교를 만들어 농가 자체를 교육하여 농촌 개량의 사도를 양성하고 있으니, 그 계획의 견실함과 경영의 원대함이 실로 칭찬할 것이 많다. 그리고 그 영식(祿息)도 동경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여 그 농업실습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니, 강명화장병천(康明花張炳天)³⁾이 유행하는 금일에 이 또한 드문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군은 당년 59세의 노령에도 오히려 궁행근검(躬行勤儉)하여 가사를 돌보는 데 질소겸약(質素儉約)하고, 사람을 대함에 충실공겸(忠實恭謙)하여 그 지행사업(志行事業)이 모두 일세에 모범될 만한 인물이다. 자못 공직자로서는 관민의 사이에 서서 분주알선의 기교가 부족함이 없을까 염려할 것이나, 군과 같음은 그 존재가 곧 무언(無言)의 알선(斡旋)이라 할 것이며, 또 성래충실(性來忠實)한 군은 반드시 그 임무에 진력함이 있을 것이다.

김병원(金炳鵠) 군은 세인이 주지하는 홍성(洪城)의 명문가 출신이다. 광무융희(光武 隆熙) 때⁴⁾부터 일찍 출세(出世)하여 의관, 군수를 지내고 도평의원, 금융조합장의 직에 있다. 군은 일찍이 제1회 이래 도평의원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하여 장황한 언론으로 비상한 분투에 일대 이채를 떨침이 있었다. 당년 51세로 인격이 더욱 원숙하여 온공(溫恭)⁵⁾한 가운데도 불굴불요한 지조를 감추어 가지고 지방민의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던

3) 1920년대 유명했던 동경유학생 장병천과 평양기생 강명화의 정사(情死)사건을 일컬음.

4) 광무(光武) 연호는 1897년 고종 34년 8월 17일부터 대한제국의 연호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순종 이 즉위하는 1907년 8월까지 사용되었고, 순종 즉위로 연호가 응희(隆熙)로 바뀌어 1910년 국권 상실 때까지 쓰였다.

5)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공손함을 뜻함.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터였다. 군은 또한 거향(居鄉)하는 궤적이 자못 옛 사대부의 풍모가 있으니 그 거촌(居村)인 고도면(高道面)을 통과하는 자는 김군의 세대덕풍여화(世代德風餘化)가 불천(不淺)함을 둔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군은 비록 이기승 군과 같이 드러난 사업이라는 것은 없으나, 평소에 사부(士夫)의 본령을 지키기를 힘쓰는 한편 연래 특히 농촌진흥, 민풍개선을 위하여 적잖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일반이 존경하는 바라 한다.

특히 필자가 양 군을 찬양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몇 해 전부터 지방부호들이 많게는 향촌을 도피하고 도회(都會)에 들어와서 가련한 소작인의 고혈을 짜다가 향락생활에 허영을 구하기에 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양 군은 오로지 그 거촌에서 그 향토, 그 민중을 위하여 죄선을 다하는 점에 있다. 도 당국이 많은 도회의 유력자를 두고 특히 양 군과 같은 촌사람을 알아준 그 심사를 나는 반갑게 생각한다.

그리나 양 군! 영광의 자리에는 오래 머물 수 없으니 당국을 대접하여 1기(期)나 잘 치른 후에 속히 물러가서 각자 소기의 덕업을 대성하여 천작(天爵)의 여년을 즐기라.

◊

전북의 유익환(柳翼煥, 50세)은 전북의 대지주로 박영철(朴榮喆) 군, 백인기(白寅基) 군만큼 현달(顯達)⁶⁾하지는 못하였으나, 별단의 훼예(毀譽)⁷⁾가 적은 온전한 부자이다. 일찍이 주사(主事), 군수(郡守)를 역임하고, 지금은 전주면협의원으로 관공(官公)을 위하여 많은 편의를 도우므로 관변으로부터 칭송을 받던 터인즉, 이번 선임을 본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제 더욱 진력하여 지방장자로서의 칭찬을 완전히 하라.

역시 전북의 홍종철(洪鍾轍, 41세)은 고창의 대지주로 일찍이 참봉, 군참사를 역임하여 현재 도평의원이며, 고창고보(高敞高普)의 설립에 군이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군은 보통부호가 가진 통성(通性)을 그대로 갖춘 것 외에 어린 나이에 동경에 유학하여 신학문을 배우고, 따라서 현대사조를 이해하여 신인청년(新人青年) 간에도 다소 신망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자못 이것을 보호색으로만 삼지 말고, 군의 식견, 능력, 자산으로 이제에 더욱 유의미한 무슨 지업(志業)⁸⁾을 세워본다 하면 그 광영이 다만 참의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6) 현명하고 사물의 이치에 통하여 있음을 뜻함.

7) 남을 비방하고 칭찬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

8) 지망하는 사업을 뜻함.



전남의 현준호(玄俊鎬, 42세)⁹⁾ 군은 근검치부(勤儉致富)의 모범인물, 제1차 지방 참의고(故) 현기봉(玄基奉) 씨의 사자(嗣子)¹⁰⁾이니, 그 아버지가 일찍이 학파노인(鶴坡老人)으로 지방에 존경을 받던 것만큼, 준호 군도 많은 사람의 사랑과 기대 가운데서 자라났다. 동경에 유학하여 정치경제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호남은행을 창립하고, 농지를 들여 학파농장을 만들고, 소작인에게 농자를 대부하여 농사 개량에 힘쓰며 동아일보에 투자하여 중역의 1인이 되는 등 부호의 신인으로 가장 장래를 촉망하였다. 군은 또 공익(公益)을 중히 여겨 광주에서는 사재를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현준호통(玄俊鎬通)이라 명명되고, 육영회에 기부하여 공민학교를 완성시키고, 학자금을 보급하여 청년학생을 양성하는 등 감탄할 만한 사적이 많다. 그러나 군은 면협의원, 도평의원 등 원하는 모든 공직을 맡아 실력에 맞게 너무도 활약하여 무릇 관공의 회석(會席)에는 현준호가 참석하지 않을 때가 없고, 광주 관계(官界)에서는 현준호가 아니면, 밤이 낮이 될 수 없을 만큼 떠받들었다. 그리하여 그 다른 어용당(御用黨)으로서의 안색이 없게 하였다. 영측(盈昃)¹¹⁾이 유수(有數)라 할까, 흥진비래(興振悲來)¹²⁾라 할까. 군은 의외로 작년에 서리를 맞아, 모든 공직을 일시에 사면하지 않을 수 없이 되었으니, 그는 다른 까닭이 없다. 어대전기념사업(御大典紀念事業)으로 공설운동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부금 몇 만 원을 걷자고 창품(倉品)면장의 발기로 유지회동을 열었을 때, 현군은 이것이 도리어 면민의 부담을 과중히 하여 어대전의 성덕에 불미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염려로 이 발기를 반대하다가 광주일보(光州日報)를 비롯하여 일부 일본인 층의 반감을 사서 어대전기념사업을 방해하는 불경한(不敬漢)이라고 총공격을 받았다. 그리하여 군은 부득이 일체 공직을 사직하고 잠시 근신의 뜻을 표하였다. 그러자 군의 진의는 총독부에서도 잘 양해가되어 어디로 주의가 있었든지 기념사업비 모집문제는 그대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 만일에 함가종신(檻軛終身)¹³⁾할 것은 아닌즉 이번 참의출사에 불가(不可)함이 있지 않으며, 또 그 지방 참의 후보자로는 어디로 보든지 제일인자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도당국이 일부 비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군을 발탁한 것은 이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일시의 작은 파란은 군에게 또한 약이 되었을 것이니, 군은 이제 국궁진충(鞠躬盡忠)¹⁴⁾하며 더욱

9) 원문에는 전준호(全俊鎬)로 되어 있음.

10) 대를 이을 아들을 뜻함.

11) 찼다가 기운다는 뜻. 모든 일이 흥함이 있으면 쇠퇴함이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함.

12)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

13) 함가(檻軛)는 죄인을 실어 나르는 수레를 뜻함. 평생 죄인으로 살 만큼 큰 잘못을 뜻함.

겸허자수(謙虛自修)하여 유덕한 인사가 될 각오를 가졌을 것이라 한다.



경북의 장직상(張稷相, 48세), 진희규(秦喜葵, 53세) 양 군은 동시 대구 굴지의 부호이다. 대구 재래의 재벌 구세력을 압도하고, 후래의 신부호로 새로운 세력층을 구성하려는 본인들로는 이번 참의에 선임된 것은 무엇보다 자줏빛 나는 금박을 더한 것이니, 양 군을 위하여 축하할 만하다.

장군(張君)은 인동(仁同) 출신 대지주 장길상(張吉相) 씨의 동생으로 지난해 그 부친을 여읜 후, 굴총(堀塚)¹⁴⁾의 재변(災變)을 당한 이래로 향리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혹은 경성으로 이주하고, 혹은 대구로 이거하다가 경일은행(慶一銀行)을 설립하여 지금은 대구에서 확호불발(確乎不拔)¹⁵⁾한 재계유수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인 모모(某某)에게 옹립되어 상업회의소(商業會議所) 회두(會頭)¹⁶⁾가 되어 일본인 상대로는 불완전한 일본어를 쓰면서 관공서의 출입(出入), 연음(宴飲)¹⁸⁾과 대관(大官)의 송영(送迎)에 사재를 아끼지 않고, 진력분주(振力奔走)한 지 수년에 대구 관계에서 그 성명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군은 일찍이 야마나시(山梨) 총독 당시에는 참여관에 임명되리라는 소문까지 돌던 터이며, 군수의 경력도 있으니까 참의 직이 그다지 광영이라 할 것은 아니로되 이렇게 공적 지위를 견고히 한즉 말썽스러운 회두는 일본 양반들에게로 반납을 하여도 낭패는 없을 것이다.

진희규(秦喜葵) 군은 증경(曾經) 도참사(道參事), 현 대구은행(大邱銀行) 취체역(取締役),¹⁹⁾ 도평의원으로 견실한 부호라는 것 외에 별로 명성을 듣지 못하던 사람, 예전에 지별(地闊)²⁰⁾로서나 현재의 활동세력으로 장군(張君)에 미치지 못한 것이 본인으로는 유감이거나와 이번에는 소원을 성취한 감이 있을 것이다. 군은 읍촌 간에 악평도 적고, 소작인에게 듣는 원성도 적고, 무학(無學)에 비교하면 선비들을 좋아하고, 사회공익을 다소 이해하는 소질이 있기 때문에, 지위의 향상을 따라 차례로 훌륭한 지업(志業)과 명성을 드날리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그 지방 인사들은 자못 촉망을 하고 있다 한다.

14) 몸을 돌보지 않고 죽을힘을 다해 충성함.

15) 남의 무덤을 불법적으로 파냄.

16) 의지가 확고해 동요가 없음을 뜻하는 일본어 사자숙어. 확고부동과 같은 뜻으로 쓰임.

17) 모임의 대표라는 뜻.

18) 연회에서 술을 마심.

19) 이사(理事)를 뜻함.

20) 지체와 문벌을 아울러 이르는 말.

여기에 일반이 흥미를 끄는 것은 다른 이유 없이 평소에 세력을 암투하던 장(張), 진(秦) 양군이 같이 참의로 임명된 것이 마치 오월동주(吳越同舟)²¹⁾의 모습이 있는 것이다. 대구 시민의 사실담을 들으면, 양 군은 일찍이 모인(某人)이 방매하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던 차에 그 토지가 마침내 진군(秦君)의 매수로 돌아감에 장군(張君)은 돌연 분개하여 경찰력을 이용하였고, 이에 진군은 꼼짝없이 그 토지를 되돌려 주기로 하고 불만 가득한 눈으로 장군을 훑겨보고 서장실을 물러 나오자, 그 토지는 곧 장군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러나 진군은 당시에 융성한 장군의 세력에 죽어 세상을 절실히 맛보게 되었던 것이니, 양군이 참의에 동시에 임용되어 연회 한자리에 앉게 된 것도 기우(奇遇)²²⁾라 하면 기우이다. 당국이 양자(兩者)를 이렇게 짹을 맞추어 놓은 것은 아마 고등정책의 신비가 있는 것같이 보인다.

◇

경남의 정순연(鄭淳宴, 57세)²³⁾ 군은 함양군 출신이니 의관(議官), 도참사를 역임하고, 지금은 도평의원으로 지방 참의가 된지 오래였더니, 이번에 다시 중임되었다. 군은 일□(一□) 선생의 후예로 남인의 중진이다. 그 부친 정(鄭) 관찰(觀察) 아래로 풍력이 있어 개문납객(開門納客)²⁴⁾에 범절이 일찍이 일향(一鄉)에 칭송을 받았으며, 군도 또한 친구를 좋아하고, 의리를 중히 여겨, 호인물(好人物)로 지칭을 듣는 사람이나, 도내 남인 중 지벌의 명성으로 그 대표를 찾자면, 군이 유력하다 아니할 수 없다. 자못 가세가 전일과 같지 못하고, 자손교육 관계상 경성에 체류함이 많으므로 향촌을 돌아볼 수 없어 다소 지방 명성이 감소된 면이 없지 않다. 군은 힘쓸지어다.

경남의 장응상(張鷹相, 51세) 군의 신임은 자못 팔목된다. 군은 일찍이 광무(光武) · 융희(隆熙)년간의 지사로 향리 사천군(泗川郡) 삼천포(三千浦)에서 학교를 경영하며 강개(慷慨)²⁵⁾한 언론(言論)과 지기(志氣)가 일향에서 추앙받는 바 있었다. 그 후 군참사, 면장, 도평의원이 되었으나, 흉금(胸襟)은 항상 초월하여 세상에 태어난 아래로 고사(高士)의 품격을 가졌으며, 또 지방의 크고 작은 일에도 성의로써 잘 처리하며, 애인호의(愛人

21) 서로 적대적인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 중국 춘추전국시대 적대국인 오나라 왕과 월나라 왕이 같은 배를 탔으나 풍랑을 만나 서로 단합해야 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22) 뜻하지 않은 만남을 뜻함.

23) 정순현(鄭淳賢)의 오타임.

24) 대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함.

25)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정의심이 복받치어 슬퍼하고 한탄함.

好義)함으로 원근(遠近)이 모두 따르는 바이니, 이번에 참의에 선임되었으니, 이는 군의 종래 덕망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군은 자중하라. 지방에서 혹은 군과 같은 유지로 공직에 분주한 것이 도리어 비소망어평일(非所望於平日)²⁶⁾이라고 단지자(短之者) 있으나, 그는 아마 현하의 시세에 비추어 늙은 몸일망정 지방을 위하여 희생에 바쳐야겠다는 데 불과할 것이니, 상상하건대 군의 흉중에는 공직의 영예보다 ‘부득이(不得已)’ 세 자가 있을 뿐일 것은 그 평소의 지조를 보아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

황해의 장대익(張大翼, 54세) 군은 일찍이 유림의 중진으로 지금은 면협의원, 금융조합장, 도평의원 등 공직에 있어 학문, 자산과 신망을 두루 갖춘 사람이다. 특히 군은 면수보호협회(免囚保護協會)의 부회장으로 냉담한 이 세상의 배척을 받는 면수인(免囚人)²⁷⁾들을 위하여 많은 동정으로 그 보호에 진력하였으므로 관민이 그 덕을 칭송하였으니, 이번의 선임은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이었다. 군은 담론풍발(談論風發)²⁸⁾하여 어불경 인사불휴(語不驚人死不休)²⁹⁾의 기개가 있어, 그 풍력을 능히 더욱 약소농민을 위한 농촌 사회사업에 쏟아 주기 바란다.

◇

평남의 선우순(鮮于鑑, 40세) 군은 17명 중 최연소이니, 평양 외성(外城)의 명문으로 일찍이 일본 메소지스트교회 평양목사 다카하시(高橋) 씨를 따라 그 설교의 통역자가 되었으니, 능숙한 말재주가 자본이 되어 만세소동³⁰⁾ 이후에 대동동지회(大東同志會)란 기치를 들고, 시정선전(施政宣傳)에 종사하여 시국의 안정에 노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평양의 민원식(閔元植)으로부터 관현에게 총애를 독차지하므로 일방으로 지방인사의 비훼(誹毀)³¹⁾를 산 것은 실로 부득이한 일이었다. 십자가두(十字架頭)로부터 황금무대(黃金舞臺)로 옮아 간 군은 목단봉화(牡丹峯花)와 대동강월(大同江月)에 일시 모든 총애를 다 받던 것은 잠시 춘몽(春夢)으로 사라지고, 추풍이 부는 금일에는 당국의 태도가 날로 차

26) 평일을 바랄 바가 아니다라는 뜻.

27) 혁기를 마치고 출옥한 사람.

28) 활발히 서로 이야기하거나 논하거나 하는 것을 말함.

29) 두보가 그의 시에서 “시어(詩語)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게 하지 않으면 죽어도 그만두지 않노라”라고 쓴 데서 나온 말.

30) 3·1운동을 일컬음.

31) 남을 헐뜯어 명예를 훼손함.

가워졌다. 몇 번이나 비애를 느낀 군은 옛날의 금잔디, 영(靈)을 말하고 구원을 구하는 교회생활이 도리어 만족스럽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오뇌(懊惱)³²⁾를 품고, 오히려 고성(孤城)을 지키는 군에 대해 세상에서는 뭐라 탓하든 간에 당국으로서는 팔시할 수 없는 터이니, 참의의 재선이 그다지 영광이랄 것은 없으나, 연수당 600원의 작은 돈이라도 군에게 부조(扶助)가 될 것인즉, 이번의 재임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평양인 사들도 말로는 선우순 군을 비평하나, 그러면 군에 대하여 또는 그 이상으로 융화친근(融和親近)에 열심히 노력할 자가 누구냐 하면, 아직 한 사람도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번 참의도 선우순이 차지하는 데는 불복(不服)은 없을 터이다. “그러나 군은 김명준(金明濬), 이동우(李東雨), 김상설(金相嵩), 이희덕(李熙惠) 같은 전례를 따라 연수당 천 원 이상의 본참의에 승격시키고, 지방 참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맛을 보였더라면 좋을 듯 하지만 당국은 어찌하여 이만한 변통이 없을까”하고 동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나로서 군을 동정하는 바는 그 재질이 아깝다 한다. 연부력강(年富力強)³³⁾하니 군은 이제 일대 영단(英斷)으로 생활의 재건을 도모하여 보라.

◇

강원의 박기동(朴起東, 58세) 군의 신임도 경향에 평판이 좋다. 군은 일찍이 한말 지사로 경성에 올라와서 주사로 봉직하여, 왕사(王事)에 분주한 한편 관동학회(關東學會) 등 공익운동에도 적잖이 공헌하였으며, 대국(大局)이 기울자 의연히 향리인 강릉에 돌아가서 전부야유(田夫野叟)와 더불어 농상(農桑)을 말하고, 학교를 개설하여 자제를 교양하고, 오직 스스로 즐길 뿐이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짐을 구하지 않더니, 이번에 참의에 선임된 것은 자타가 자못 의외의 감이 있다. 저 이기승(李基升) 군을 천거한 충남과 호일대(好一對)³⁴⁾로 강원도 당국의 조치를 찬양하여 둔다. 군은 이기승군과 같은 특수한 공적은 없다 하나 범용한 가운데 충직하고 순후한 품격이 있어 그 명성이 일찍이 영동(嶺東) 사류(土類)에 으뜸이었다. 원컨대 군은 모름지기 당대 율곡으로 향리를 다스림에 힘써 대대로 가문에 전해지는 청교화(淸敎化)를 흘려주기를 바란다.

◇

평북의 김제하(金濟河, 52세) 군, 금년 1월에 전임자 최석하(崔錫夏) 씨가 사망한 뒤를

32) 뉘우쳐 한탄하고 번뇌함.

33) 나이가 젊고 활동력이 왕성함을 뜻함.

34) 충남에서 천거된 이기승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는 의미.

보궐(補闕)한 사람이니, 정주(定周) 도부(道富)요, 현재 도평의원이며, 종래에 파란이 많던 동인수리조합(同仁水利組合)에 군이 조합장이 된 이후 원만히 잘 지나가는 것을 보더라도 그 신망이 두터운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함남의 강필성(姜弼成, 46세) 군은 일찍 도서기, 군수로 지방행정에 많은 공로를 남기고, 행정정리 시에 퇴관하여 향리 덕원(德源)에 도연명(陶淵明)의 여운을 갖던 사람으로서, 그 식견 신망이 민간의 사람으로는 구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지금은 금융조합장에 추대되어, 농촌 경영의 발달에 진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니, 군의 전도(前途)는 유망하며, 이번 선임도 따 놓은 당상이다. 만근(輓近)³⁵⁾ 참여관군수(參與官郡守)의 퇴관하는 무리들은 그 여력을 지방 개발에 공헌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한갓 경성(京城) 기타 도회(都會)에 집중하여 중추원 참의 선임운동에 골몰하는 경향이 많은 중에 군은 단연코 방향을 달리하여 관리로서 받은바 국가의 은우(恩遇)와 닦은 바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그 향토를 위하여 보답하고자 하니, 그 용심(用心)이 자못 사대부의 좋은 모범이라 하겠다.



함북의 양재홍(梁在鴻, 53세) 군은 경성(鏡城) 출신으로 구한국시대(舊韓國時代)의 관찰부주사, 무산(茂山)군수를 역임하여 그 지방출신의 명宦(名宦)으로 칭송이 있던 사람이다. 지금은 금융조합장, 도평의원이 되어 관민 간에 활동하며, 십여만의 거부로 오히려 자자민면(孜孜勉)하여 식산흥업(殖產興業)에 힘쓰니 그 경력, 지벌(地閥), 자산, 신망이 도내의 제일인자라 할 것이다.

〈출전 : 覆面生, 中樞院地方參議平判記, 『新民』 59호, 1930년 7월〉

35) 몇 해 전부터 현재까지를 뜻함.

4. 중추원과 참여관 제도의 개폐(기사)

– 마침내 구체화 농후

정부의 중요 시정방침으로서 내건 서정일신(庶政一新)을 꾀하고 행정 기구의 개혁은 상당히 진행되고 있지만 조선에서는 이것과 병행하여 중추원제도의 개혁, 그리고 각 도(道) 참여관제도의 폐지가 상당히 유력했고 우카키(宇垣) 총독도 이에 대해 고려해본 사실이 있다.

미나미(南) 신(新) 총독, 오노(大野) 신 정무총감의 책임에 의해 해당 문제도 마침내 구체화할 기운이 매우 농후해진 일은 가장 주목할 만하다. 즉 중추원 제도의 개혁은 이마이다(今井田) 전 통감의 주장에 기초하여 점진주의를 꾀하였는데 이것이 개혁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미온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개혁을 감행하여 반도의 실정에 맞게 자문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또한 현행 참여관 제도는 산업요람시대에 만든 것이어서 실시된 지사의 자문기관으로 반대적인 성격이 농후하다.

통치정책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 산업, 문화, 경제 등의 각 부문이 이상할 정도로 약진하고 있는 오늘날,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제도로서 새로이 각 도에 산업부장을 설치하여 서정일신의 열매를 관철하려고 하며 현재 참여관으로서 산업부장을 겸임하는 도(道)는 경기, 경남, 경북, 전남의 4개 도이다.

〈출전 : 中樞院と參與官制度の改廢, 『朝鮮新報』, 1936년 8월 20일〉

5. 일파생(一波生), 조선총독의 자문기관 중추원 해부

일파생(一波生)

연봉 2천 엔 내지 3천 엔이란 관록(官祿)을 받으면서 조선 총독의 정치를 부익(扶翼)하는 무려 70여 명의 고문(顧問)과 참의(參議)로서 성립된 조선 총독부 중추원이란 대체 어떠한 곳이며, 무엇을 하는 곳인가? …… 이런 점에 관해서 이제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세상이 널리 아는 바이나, 여기서 다시 중추원이 떠고 있는 사명이라 듣는다, 그의 조직체라든가, 또는 중추원이 지금까지 부속적으로 하여 온 문화사업 같은데 대하여 극히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도 비상시국에 있어 헛수고가 아니지 않을까 한다.

1.

일본에는 추밀원(樞密院)이란 기관이 있다. 추밀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천황의 고문 기관(顧問機關)으로서 직접으로 천황에 예속하여 중요한 국무에 관해서 천황의 자문에 응하는 합의기관이라 하겠다. 1887년에 이 추밀원이 설립된 이후부터는 헌법제정(憲法制定)에 의하여 헌법상 필요기관으로 된 것이다.

추밀원 관별(官別)의 상유(上諭)에 의하면 “짐(朕)은 원훈(元勳)³⁶⁾ 및 연달(練達)³⁷⁾의 인사를 택하여 국무를 자문하고 그 계옥(啓沃)³⁸⁾의 힘을 빌릴 필요를 살펴 추밀원을 설치하고 짐(朕)의 최고 고문(顧問)의 부(府)로 삼으려 한다.” 하였다.

즉 추밀원은 칙령(勅命)에 의하여 회의에 회부된 사건을 심의해서 그 의결을 상주(上奏)할 따름이지 의원이 스스로 발의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이 추밀에 해당하는 것이 즉 조선에 있어서의 중추원이다.

중추원은 일한병합 당시에 설립되었으며, 1900년 9월 10일 칙령(勅令) 제355호로써 조선 총독부 중추원 관제(官制)가 발포되었는데, 이 중추관제의 상유는 다음과 같다.

“짐은 추밀 고문의 자문을 거쳐 조선 총독부 중추원 관제를 재가(裁可)하여 여기에 이 것을 공포한다.”

그리면 중추원이란 어떤 기관인가 하면, 중추원은 조선 총독에 예속하여 조선 총독의

36) 나라를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하여 임금이 아끼고 믿어 가까이 하는 늙은 신하를 뜻함.

37) 익숙하고 통달함.

38) 충성스러운 말을 임금에게 아뢴다는 뜻.

자문에 응하는 합의기관이다.

즉 중추원은 조선 총독이 회의(중추원회의라고 부른다)에 제출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의한 바를 총독에 아뢸 뿐이요, 중추원 자신이 의안을 제출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의결은 단지 의견을 개진하여 총독의 참고재료로밖에는 되지 않으므로 그 채납(採納) 여하에 있어서는 전연 총독의 자유 의견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추원은 총독의 최고 고문기관인 만큼 그 결의는 정치상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2.

중추원 관제 제2조에 의하면, 중추원의 직원(職員)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의장

부의장 1명, 친임대우(親任待遇)

고문 5명, 친임대우(親任待遇)

참의(參議) 65명, 친임대우(親任待遇) 또는 주임대우(奏任待遇)

서기관장 칙임(勅任)

서기관 전임(專任) 1명, 주임(奏任)

통역관 전임 1명 주임(奏任)

속(屬)

통역생(通譯生) □ 전임 7명 판임(判任)

그리고 제3조에는 중추원의장은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으로 할 것과 의장은 원무(院務)를 총괄하고, 중추원으로부터 발(發)하는 일체의 공문(公文)에 서명할 것을 정하였다.

부의장과 고문과 참의는 조선 총독의 주청(奏請)에 의하여 내각에서 이것을 명하며, 부의장, 고문, 참의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때로는 임기 중에 해임할 수도 있다 한다.

현 중추원의장은 관별에 의하여 정무총감 오노(大野綠一郎) 각하이며, 부의장이 후작(候爵)인 박영효(朴泳孝) 씨다. 고문은 5명이 정원(定員)이나, 지금은 2명이 결원되어 자작(子爵) 민병석(閔丙奭) 씨, 자작 윤덕영(尹德榮) 씨, 남작(男爵) 이윤영(李允用) 씨의 3명뿐이다.

그러면 그들의 봉급은 대체 얼마씩이나 되는가 하면, 관제 제7조에 의하여 부의장은 연액 4천 엔 이내요, 고문과 참의는 연액 3천 엔 이내를 수당으로 지급하되, 관리로서 부의장, 고문, 참의의 자리에 있는 자는 수당을 지급치 않기로 된 것이다.

다음으로 지금 중추원 참의로 있는 이의 면목을 들어보면 유정수(柳正秀, 칙임대우, 종4 훈삼), 조희문(趙羲聞, 칙임대우, 종사 훈3), 서상훈(徐相勛, 칙임대우, 종4 훈3), 장현식(張憲植, 칙임대우, 종3 훈2), 김윤정(金潤晶, 칙임대우, 종3 훈2), 박중양(朴重陽, 칙임대우, 종3 훈2), 한상룡(韓相龍, 칙임대우, 종4 훈3), 신석린(申錫麟, 칙임대우, 종3 훈2), 박상준(朴相駿, 칙임대우, 정4 훈3), 김영진(金英鎮, 칙임대우, 정4 훈3), 이겸제(李謙濟, 칙임대우, 종4 훈3), 유혁로(柳赫魯, 칙임대우, 종4 훈3), 조성근(趙性根, 칙임대우, 종3 훈2), 박영철(朴榮喆, 칙임대우, 종4 훈3), 한규복(韓圭復, 칙임대우, 정4 훈3), 박용구(朴容九, 칙임대우, 정4 훈3), 어담(魚潭, 칙임대우, 정4 훈2), 윤갑병(尹甲炳, 칙임대우, 정4 훈2), 이진호(李軫鎬, 칙임대우, 정4 훈3), 김관현(金寬鉉, 칙임대우, 정4 훈3), 김명준(金明濬, 칙임대우, 정5), 최린(崔麟, 칙임대우, 정5), 남궁영(南宮營, 칙임대우, 정4 훈3), 유진순(劉鎮淳, 칙임대우, 종4 훈4), 이범익(李範益, 칙임대우, 정4 훈2), 정난교(鄭蘭教, 주임대우, 종4 훈6), 원덕상(元惠常, 주임대우, 종6), 이경식(李敬植, 주임대우, 정5 훈5), 장직상(張稷相, 주임대우, 종6), 석명선(石明瑄, 주임, 정5 훈5), 박철희(朴喆熙, 주임, 종4 훈4), 현현(玄懸, 주임, 종4 훈4), 김사연(金思演, 주임, 정7), 장석원(張錫元, 주임, 종4 훈4), 안종철(安鍾哲, 주임, 종4 훈4), 최지환(崔志煥, 주임, 정5 훈5), 이승우(李升雨, 주임), 최남선(崔南善, 주임), 김정호(金正浩, 주임), 방태영(方台榮, 주임, 정7), 정석용(鄭錫溶, 주임), 성원경(成元慶, 주임), 강번(姜藩, 주임), 박희옥(朴禧沃, 주임, 정7), 인창환(印昌桓, 주임), 현준호(玄俊鎬, 주임, 정7), 김상형(金相亨, 주임, 정7), 서병조(徐丙朝, 주임, 정7), 최윤(崔潤, 주임), 이은우(李恩雨, 주임, 종7), 노영환(盧泳奐, 주임, 정7), 김영택(金泳澤, 주임), 김기수(金基秀, 주임, 정7), 이교식(李教植, 주임), 이묘조(李墓燥, 주임, 종7), 고일청(高一清, 주임, 정7), 이희적(李熙迪, 주임, 종7), 이근수(李瑾洙, 주임, 정7), 최준집(崔準集, 주임), 유태설(劉泰誥, 주임, 종5), 손봉조(孫鳳祚, 주임, 정5), 황종국(黃鍾國, 주임) 등이다. (1937년 8월 1일 현재)

3.

그 다음 중추원회의에서 매년 총독이 자문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연대적으로 나열해서 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1회 – 1919년 9월

1. 묘지(墓地), 화장장(火葬場), 매장(埋葬) 및 취체규칙(取締規則) 개정의 건.

제2회 – 1920년 5월

- 성년(成年), 처(妻), 능력(能力), 금치산(禁治產), 준금치산(準禁治產)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아울러 친권자(親權者), 후견인(後見人), 보증인(保佐人), 친족회(親族會) 등의 제도를 설정하고자 한다.

제3회 – 1921년 12월

- 남자는 만 17세, 여자는 만 15세에 이르지 않으면, 혼인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설정하는 건.
- 부부는 서로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게 하고, 또 한편 민법 제850조의 원인 있는 때에 한해서 일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설정하는 건.

제4회 – 1913년 7월

이 해에는 자문사항이 없으므로 민정, 기타 지방상황을 진술할 뿐.

제5회 – 1914년 9월

- 남자가 없고, 여자만 있는 자는 그 여자에게 타성(他姓) 남자를 서양자(婿養子)로 할 수 있는 건. 그리고 양가(養家)의 성(姓)을 칭호(稱號)하게 하는 제도를 설정하는 데 대한 요부(要否).
- 집에 칭호를 붙이게 하는 제도를 설정하는 데 대한 요부.
- 지방문묘(地方文廟) 중 상당한 격식이 있는 자에게 사성(司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가부.
- 시설개선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회 – 1926년 1월

자문사항이 없으므로 민정, 기타 지방상황을 진술.

제7회 – 1927년 8월

- 국유임야 모경(冒耕) 화전(火田)의 정리 및 화전민 구제에 관한 방책.
- 지방개선에 관한 의견 여하.

제8회 – 1928년 1월

자문사항이 없으므로 민정 및 지방의 상황을 진술.

제9회 – 1929년 5월

1. 산업진흥에 관하여 장래 본부에서 시설을 요하리라고 인정하는 사항.
2. 최근 지방 민정 중 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과 아울러 여기에 대한 의견.

제10회 – 1930년 9월

1. 지방 실정에 비추어 특히 시설을 요하리라고 인정하는 사항.

제11회 – 1931년 9월

1. 현 정세에 비추어 민중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시설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회 – 1937년 2월

자문사항 없음.

제13회 – 1932년 9월

1. 지방 실정에 비추어 사상 선도, 민력 함양상 특히 시설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회 – 1933년 7월

1. 지방 실정에 비추어 농산어촌 진흥상 특히 시설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의례의 준칙제도에 관한 사항.

제15회 – 1934년 4월

1. 농가생계계획의 실시상황에 비추어 장래에 있어서 본 계획 관철을 필기(必期)할 방책.
2. 도시에 있어서의 민심 작용을 도모하는 구체적 방책.

제16회 – 1935년 4월

1. 반도 현상에 비추어 민중에게 안심입명(安心立命)을 주는 가장 적당한 신앙심의 부 흥책 여하.
2. 각지의 민심동향과 그것을 선도하는 의견 여하.

제17회 – 1936년 10월

자문사항 없음.

제18회 – 1937년

1. 시국에 비추어 농촌어촌진흥운동의 확충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생각하는 방책 여하.
2. 내선일체의 정신을 일반 국민의 일상에 실천, 구현할 방책 여하.
3. 은거제도(隱居制度)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가.

제19회 – 1938년

1. 사회교화시설 중 조선 현상에 비추어 특히 강조,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이것을 일반 민중에게 철저히 시키는 데 적절하고 유효한 방책 여하.
2. 동본동성 상호금지 제도는 여전히 이것을 인정하여만 되겠는가.

4.

이상이 말하자면 중추원 본래의 사명이나, 이 밖에 소위 부속사업으로서 영위하는 것 이 있으니, 중추원 관제(官制) 제1조 제2항에 ‘이 외에 조선에 있어서의 구관(舊慣)과 제도를 조사하게 함’이라는 조목에 의하여 과거 조선의 습관이라든가, 조선제도사(朝鮮制度史) 같은 것을 조사, 편찬하는 부속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하여 둔다.

즉 중추원 조사부(調查部)에서 지금까지 조사, 간행한 출판물을 열거해 보면 대명률직 해(大明律直解), 역문대전회통사화미제도(訛文大典會通社還米制度), 경국대전 속대전(經國大典續大典), 대전속록(大典續錄), 민사관습회답휘집(民事慣習回答彙集), 이조법전고(李朝法典考), 이조(李朝)의 재산상속법(財產相續法),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財用編),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 소작(小作)에 관한 관습조사(慣習調查), 조선인 명사서(朝鮮人名辭書), 이독집성 신증동국여지승람 색인(吏讀集成新增東國輿地勝覽索引) 등이며,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는 3년 전까지 중추원에 속하였으나, 지금은 중 추원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총독부의 한 기관이 되었다.

〈출전 : 一波生, 朝鮮總督의 諮問機關 中樞院 解剖, 『朝光』 제4권 10호, 1938년 10월〉

찾아보기

【ㄱ】

가미오 카츠하루(神尾式春) 187
가토 마시오(加藤增雄) 112
갑신정변 78, 86, 90, 94, 124
강경희(姜敬熙) 536
강동금융조합 280
강번(姜藩) 614
강병옥(康秉鈺) 547
강석호(姜錫鎬) 81
강필성(姜弼成) 210, 548, 610
거류민단법(居留民團法) 570
경성일보 149
경학원(經學院) 90, 284, 295
계황당(係皇黨) 64
고경인(高景仁) 228
고노에 아츠시마로(近衛篤磨) 75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87, 185, 187, 188, 191
고등유민구제원(高等遊民救濟院) 513
고영희(高永喜) 81, 82, 153, 534
고원식(高源植) 537
고원훈(高元勳) 489
고일청(高一清) 614
고중덕(高重德) 153
고쿠분 쇼타로(國分象太郎) 85
고홍겸(高興謙) 162, 164, 166, 201, 202, 204
고희경(高羲敬) 60, 81, 82, 186, 187, 188, 190,

197, 540
고희준(高義駿) 139
구스노기 세고히코(楠瀨幸彦) 114
구연수(具然壽) 540
구완희(具完喜) 139
구희서(具義書) 537
국민적 작법(作法) 440
국민정신작흥운동(國民精神作興運動) 340, 341
국민정신총동원운동 382, 383, 386, 399, 403, 423, 424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362
국민총력연맹 446
국민총력운동 439, 446, 459, 467, 470
국방협회 430
국어전해운동(國語全解運動) 499
군사후원연맹 430
군인후원회 430
궁민구제사업(窮民救濟事業) 221
궁성요배 359, 362, 385
권덕용(田原德龍) 505
권봉수(權鳳洙) 535
권영진(權榮鎮) 114
권재형(權在衡) 89
권중현(權重顯) 60, 89, 90, 91, 98, 154, 161, 178, 188, 197, 534, 540
권태환(權泰煥) 154, 166, 537, 542
기로소(耆老所) 126

- 기타 시라카와(北白川) 117
 김가진(金嘉鎮) 62, 125, 132, 156, 191
 김갑순(金甲淳) 545, 602
 김경진(金慶鎮) 382, 479
 김관현(金寬鉉) 334, 362, 442, 614
 김교성(金敎聲) 537, 543
 김교신(金敎莘) 61, 117, 189, 198
 김기수(金基秀) 614
 김기태(金琪泰) 547
 김기홍(金川基鴻) 403
 김낙현(金洛憲) 539
 김녕(金寧) 155
 김덕한(金德漢) 62, 141, 154, 189, 198
 김두한(金斗漢) 57
 김만수(金晚秀) 535
 김만식(金晚植) 71
 김명규(金命圭) 537, 543
 김명균(金命均) 140
 김명수(金明秀) 538
 김명준(金明濬) 214, 329, 374, 544, 550, 551, 552, 553, 563, 614
 김병규(金炳奎) 256
 김병원(金炳元) 545, 602, 603
 김병익(金炳翊) 62, 143, 156, 191
 김병주(金炳疇) 58
 김보현(金輔鉉) 137
 김사목(金思默) 535
 김사연(金思演) 249, 260, 343, 425, 482, 614
 김사준(金思濬) 58, 61, 118, 156, 191
 김사철(金思轍) 62, 142, 155, 189, 197
 김상설(金相祿) 544, 551, 553
 김상섭(金商燮) 546
 김상형(金相亨) 345, 418, 446, 614
 김상회(金尙會) 410, 474
 김석기(金奭基) 155
 김석진(金奭鎮) 61, 111, 191
 김성규(金成圭) 548
 김성근(金聲根) 61, 108, 154
 김성기(金性基) 58
 김세현(金世顯) 155
 김신석(金信錫) 398
 김연상(金然尙) 544
 김연수(金季洙) 492
 김영근(金永根) 58
 김영무(金英武) 546
 김영수(金英洙) 62, 138, 154, 189, 198
 김영진(金英鎮) 388, 542, 614
 김영철(金永哲) 62, 137, 154
 김영택(金泳澤) 614
 김영한(金榮漢) 111, 535, 541
 김옥균 71, 78, 86, 90, 123, 124, 144
 김원근(金海元根) 497
 김윤식(金允植) 60, 64, 88, 89, 156, 191, 533
 김윤정(金潤晶) 324, 541, 614
 김윤환(金潤煥) 602
 김응선(金應善) 95
 김익현(金益鉉) 109
 김정록(金正祿) 155
 김정석(金山韶能) 437
 김정태(金禎泰) 546
 김정호(金正浩) 614
 김제하(金濟河) 547, 609
 김종한(金宗漢) 62, 139, 155, 189, 197
 김준용(金準用) 538, 543
 김진수(金松晋洙, 松宮晋洙) 364, 435
 김창한(金彰漢) 544

김춘기(金春基) 58
김춘희(金春熙) 61, 116, 155, 177, 536, 540
김태집(金泰漸) 495
김택기(金宅基) 58, 118
김필희(金弼熙) 538, 543
김학우(金鶴羽) 119
김학진(金鶴鎮) 62, 140, 154
김한규(金漢奎) 537
김한목(金漢睦) 359, 539, 542
김한승(金漢昇) 546
김현근(金賢根) 58
김현수(金顯洙) 539, 543
김호규(金虎圭) 61, 154, 189, 197, 201, 202, 203, 204
김호반(金鎬盤) 228
김홍진(金弘鎮) 143
김홍집 65, 71, 74, 83, 85, 86, 89, 90, 92, 95, 98, 108, 114, 115, 116, 119, 123, 125, 128, 130, 136, 139, 141
김화준(金海化俊) 494
김희작(金熙綽) 548

【←】

나수연(羅壽淵) 537, 543
나풀레옹(奈巴崑翁) 182
남궁영(南宮營) 614
남규희(南奎熙) 535, 540
남연철(南延哲) 61
남장희(南章熙) 61, 127, 154, 189, 198
남정철(南廷哲) 126, 154
남홍중(南弘重) 126
노다 해지로(野田平治郎) 79
노백린(盧伯麟) 91, 95

노영환(盧泳煥) 299, 347, 614
노창안(盧蒼顏) 547
농지가격통제령 452
농촌진흥운동 233, 314, 323, 324
나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德) 294

【ㄷ】

다나카 젠타로(田中健太郎) 187, 204
다카자키 마사카제(高崎正風) 294
다카타케 히미요시(高武公美) 187
대동구락부 159
대동학원 85
대원군 64, 71, 125, 136, 138, 140, 142
대한협회 133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72, 76, 79, 100, 118, 126, 263
독립협회 129
동양척식주식회사 129, 175
동요회(同耀會) 201, 202, 203, 204, 205, 206

【ㅌ】

러시아공사관 136
러일전쟁 75, 79, 84, 85, 87, 91, 93, 95, 99, 115, 129
러일평화조약 84

【ㅁ】

마옥곤(馬玉崑) 86
매일신보주식회사 171
명덕연구회(明德研究會) 231
명덕회(明德會) 284, 306
명성황후(민비) 64, 71, 106, 128, 131, 132, 145
묘지령(墓地令) 298

- 미나미 지로(南次郎) 161, 165, 203, 206, 370, 433, 611
- 민건식(閔健植) 130, 155, 190, 198, 538, 543, 549, 550, 551, 553
- 민겸호(閔謙鎬) 56
- 민경호(閔璟鎬) 105
- 민광식(閔光植) 56
- 민규현(閔奎鉉) 62, 190, 198
- 민규호(閔奎鎬) 105
- 민두호(閔斗鎬) 106
- 민범식(閔範植) 56
- 민병삼(閔丙三) 61, 105, 189, 197
- 민병석(閔丙奭) 60, 86, 87, 100, 107, 135, 145, 154, 161, 162, 164, 165, 175, 176, 178, 186, 187, 188, 197, 539
- 민봉식(閔鳳植) 105
- 민상호(閔商鎬) 61, 120, 155, 189, 197, 535, 535, 540
- 민승호(閔升鎬) 56
- 민양식(閔兩植) 86
- 민영규(閔泳奎) 61, 104, 105, 154
- 민영기(閔泳綺) 61, 129, 155, 534, 539
- 민영달(閔泳達) 61, 74, 128, 156, 190
- 민영린(閔泳璘) 56, 60, 76, 156, 191
- 민영목(閔泳穆) 59
- 민영선(閔泳璇) 56, 76
- 민영소(閔泳韶) 61, 105
- 민영우(閔泳頃) 155, 202
- 민영은(閔泳殷) 545
- 민영익(閔泳翊) 56, 71, 76, 77, 78, 86, 106
- 민영준(閔泳駿) 106, 107, 128
- 민영찬(閔泳贊) 56, 176, 540
- 민영철(閔泳喆) 99
- 민영환(閔泳煥) 56, 63, 78, 91, 104, 108, 128
- 민영휘(閔泳徽) 61, 106, 128, 154, 159, 188, 197
- 민원식(閔元植) 139
- 민위식(閔暉植) 56
- 민유중(閔維重) 56
- 민응식(閔應植) 86, 124
- 민장식(閔章植) 56
- 민종묵(閔種默) 62, 134, 155
- 민종식(閔從植) 56
- 민준호(閔峻鎬) 129
- 민진원(閔鎮遠) 59
- 민철훈(閔哲勳) 134
- 민충식(閔忠植) 61, 106, 156, 188, 197
- 민치구(閔致九) 56
- 민치록(閔致祿) 56, 106
- 민치삼(閔致三) 59
- 민치오(閔致五) 59
- 민치진(閔致眞) 120
- 민태곤(閔泰崑) 155
- 민태호(閔台鎬) 56
- 민태호(閔泰鎬) 56
- 민형식(閔炯植) 62, 145, 154, 156, 189, 197, 541
- 민홍기(閔弘基) 154
- 민홍식(閔弘植) 56

【박】

- 박경식(朴經錫) 547
- 박경원(朴經遠) 155, 190, 198
- 박기동(朴起東) 548, 609
- 박기석(朴箕錫) 547
- 박기순(朴基順) 545

- 박기양(朴箕陽) 61, 117, 155, 189, 197, 452, 541
 박봉주(朴鳳柱) 546
 박부양(朴富陽) 60, 84, 154, 189, 197, 201, 202, 203, 204
 박상준(朴相駿) 246, 372, 542, 614
 박서양(朴敍陽) 61, 115, 154, 162, 165, 189, 198
 박세병(朴世秉) 141
 박승봉(朴勝鳳) 535, 540, 558
 박승원(朴勝遠) 202
 박영교(朴泳敎) 70
 박영철(朴榮喆) 331, 614
 박영효(朴泳孝) 58, 60, 64, 66, 67, 70, 71, 79, 83, 85, 86, 90, 110, 123, 124, 125, 153, 159, 162, 164, 166, 176, 185, 187, 188, 196, 204, 539, 613
 박용구(朴容九) 271, 614
 박용대(朴容大) 62, 141, 155
 박원양(朴元陽) 70
 박의병(朴義秉) 541
 박이양(朴彝陽) 535, 543
 박정서(朴禎緒) 155
 박정양(朴定陽) 99
 박제빈(朴齊斌) 61, 115, 154, 536
 박제순(朴齊純) 60, 80, 83, 84, 91, 93, 96, 116, 124, 129, 154, 161, 534
 박제환(朴齊贊) 537, 542
 박종렬(朴宗烈) 219, 237, 283, 543
 박중양(朴重陽) 536, 541, 614
 박지근(松山清) 499
 박찬범(朴贊汎) 153
 박철희(朴喆熙) 252, 614
 박춘금(朴春琴) 565
 박해령(朴海齡) 539
 박해원(朴海遠) 169
 박홍규(朴興奎) 545
 박희양(朴熙陽) 538, 543
 박희옥(朴禧沃) 238, 314, 355, 614
 방공협회 430
 방면위원회 231
 방의석(方義錫) 367, 476
 방인혁 545
 방태영(方台榮) 614
 백백교 295
 백인기(白寅基) 542
 병합조약 64
 보덕회(報德會) 294
 보식원(普植園) 161, 175, 176, 177, 178, 179, 184
 보종당(保宗黨) 64, 83, 97, 99, 100, 108, 110
 북일영(北一營) 63

【ㅅ】

- 4대절(四大節) 배하식(拜賀式) 341
 사민단(四民團) 126
 사상보국연맹 430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72, 76, 95, 161, 188, 191, 209, 558
 사이토 오토사쿠(齋藤音作) 177, 178
 사토 요시쿠니(甘蔗義邦) 162, 164
 산림령(山林令) 298
 상호(尙灝) 542
 생활개선위원회 378
 서광범 71
 서병조(徐丙朝) 240, 277, 322, 378, 546, 614
 서상훈(徐相勛) 536, 541, 614
 서유건문기 123

- 서재필 129
 서회보(徐晦輔) 538
 석명선(石明瑄) 319, 614
 선우순(鮮于鏞) 213, 218, 223, 547, 562
 섭사성(攝士成) 107
 성기운(成岐運) 61, 115, 155
 성원경(成元慶) 614
 성일용(成一鏞) 155
 성주경(成周絅) 61, 190, 198
 성하국(成夏國) 538
 소작통제령 452
 손봉조(孫鳳祚) 614
 손재하(廣原平成) 381
 송병준(宋秉畯) 60, 64, 67, 77, 78, 80, 83, 100,
 103, 153, 175, 176, 190, 534, 539
 송시열 78
 송원달(宋元達) 77
 송종현(宋鐘憲) 60, 81, 153, 188, 197, 544
 송지현(宋之憲) 537, 543
 송치중(宋致中) 78
 송현빈(宋憲斌) 537
 스사노 노미코토(素盞鳴尊) 349
 시본문고(施本文庫) 296
 신기선(申基善) 70
 신도(神道)보급협회 276
 신사(神社) 330, 334, 355, 357, 363, 431
 신사(神祠) 330, 351, 357, 363, 431
 신사유람단 74, 129
 신사참배 301, 304, 359
 신석린(申錫麟) 293, 486, 541, 550, 551, 552,
 553, 614
 신석우(申錫雨) 545
 신우선(申佑善) 537
 신옹희(申應熙) 541
 신정왕후(神頃王后) 121
 신정희(申正熙) 139
 신찬전(神饌田) 385
 신창휴(申昌休) 545
 신태유(申泰游) 537, 542
 신희련(申熙璉) 247, 258
 실전대(實戰隊) 228
 심리섭(沈理燮) 56
 심상익(沈相益) 127, 176
 심상훈(沈相薰) 56
 심선택(沈璿澤) 546
 심전개발(心田開發) 292, 296, 299, 304, 312,
 314, 324, 325
 심택(沈澤) 56
 심학도(心學道) 296
 심환진(沈旼鎮) 544, 550, 551, 552

【o】

-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 288, 385
 안경수(安鷗壽) 129
 안교영(安教榮) 94
 안동수(安鷗壽) 125
 안병길(安炳吉) 546
 안종철(安鍾(鐘)哲) 301, 614
 애국반 422, 423, 430
 야마자키 에이하루(山崎永春) 71
 양성환(梁性煥) 103
 양재홍(梁在鴻) 548, 610
 어담(魚潭) 80, 102, 255, 262, 614
 어윤적(魚允迪) 536, 541
 어윤중(魚允中) 70, 74, 83, 86, 89, 114, 139
 엄인영(嚴仁永) 59

- 엄주명(嚴柱明) 59
 엄주익(嚴柱益) 59
 엄준원(嚴俊源) 59, 271, 541
 엄진필(嚴鎮弼) 58
 엄창호(嚴昌鎬) 58
 엄태영(嚴台永) 538
 엔도 야스타로(遠藤安太郎) 177
 염중모(廉仲模) 535, 541
 오노(大野綠一郎) 613
 오장경(吳長慶) 71
 오재풍(吳在豐) 537, 543
 오제영(吳悌泳) 538
 오쿠라 요시하치로(大倉喜八郎) 78
 오태환(吳台煥) 286, 544, 551, 552, 553, 563
 왕공족심의회 153
 우가키 가즈시게(宇垣) 212, 215, 217, 221, 225, 230, 242
 우범선(禹範善) 114
 우사카와(宇佐川) 84, 129
 우창징(吳長慶) 107
 운양집(雲養集) 90
 운현궁(雲峴宮) 142
 원덕상(元惠常) 248, 332, 545, 550, 551, 552, 601, 614
 원응상(元應常) 541
 월조평(月朝評) 119
 웨베르 125
 위안 스카이(袁世凱) 71, 107, 114
 유기호(柳基浩) 548
 유길준(俞吉濬) 61, 64, 85, 119, 123, 124, 125, 156, 190
 유동렬(柳東說) 95
 유만겸(俞萬兼) 126, 468
 유맹(劉猛) 535, 540
 유빈겸(俞斌兼) 544
 유성준(俞星濬) 126, 540
 유승흠(柳承欽) 544, 549, 550, 551, 552
 유익환(柳翼煥) 546, 604
 유정수(柳正秀) 297, 535, 540, 614
 유진순(劉鎮淳) 289, 353, 542, 614
 유진학(俞鎮學) 59
 유태설(劉泰澈) 226, 251, 261, 311, 406, 454, 614
 유혁로(柳赫魯) 536, 540, 558, 614
 유홍준(俞弘濬) 59
 유홍세(柳興世) 538, 543
 윤갑병(尹甲炳) 488, 541, 562, 614
 윤강로(尹強老) 154
 윤덕영(尹德榮) 59, 61, 67, 68, 99, 100, 108, 110, 112, 140, 146, 154, 161, 175, 176, 177, 178, 186, 187, 188, 197, 204, 540, 613
 윤숙영(尹肅榮) 59
 윤용구(尹用求) 58, 61, 109, 110, 155
 윤용선(尹容善) 59, 68, 69, 88, 99
 윤웅렬(尹雄烈) 62, 131
 윤의선(尹宜善) 58
 윤의섭(尹毅燮) 153
 윤정현(尹定鉉) 546
 윤철구(尹徹求) 59, 68, 99
 윤치성(尹致誠) 95
 윤치소(尹致昭) 545
 윤치오(尹致旿) 131, 536
 윤치호(尹致昊) 156, 191
 윤택영(尹澤榮) 59, 60, 68, 69, 99, 153, 176, 178, 188, 197
 을사늑약 84, 104, 108

- 이갑(李甲) 95
 이갑용(大田一夫) 501
 이강(李岡) 66, 68, 71, 87, 102, 118, 132, 142, 177
 이강원(李康元) 545
 이건(李鍵) 162
 이건춘(李建春) 535, 541
 이건하(李乾夏) 61, 127, 154
 이겸제(李謙濟) 536, 541, 558, 614
 이경식(李敬植) 269, 404, 433, 545, 549, 551, 553, 602, 614
 이경우(李景宇) 130, 155
 이경옹(李景應) 57
 이교식(李教植) 302, 614
 이교익(李喬翼) 124
 이권용(李權鎔) 98
 이규삼(李奎三) 93
 이규원(李圭元) 93, 154, 166, 167, 188, 197
 이규항(李圭恒) 144
 이규환(李圭桓) 62, 189, 197
 이근명(李根命) 61, 103, 104, 154
 이근상(李根湘) 61, 112, 113, 132, 155, 534
 이근수(李瑾洙) 348, 614
 이근오(李根五) 137
 이근용(李根鎔) 75
 이근우(李根宇) 548
 이근택(李根澤) 61, 94, 95, 96, 112, 113, 123, 131, 132, 153, 534
 이근호(李根皓) 62, 131, 132, 155
 이기승(李基升) 545, 602
 이기용(李琦鎔) 56, 60, 83, 153, 188, 197, 201, 202
 이기원(李起元) 62, 131, 190, 198
 이기찬(李基燦) 365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92, 119, 125
 이능세(李能世) 62, 137, 155, 166, 189, 198
 이달용(李達鎔) 57, 60, 64, 153, 188, 197, 204
 이덕용(李德鎔) 153
 이도익(李度翼) 537, 542
 이도재(李道宰) 70
 이동우(李東雨) 544, 564
 이동훈(李東薰) 62, 132, 155, 189, 198
 이두황(李斗璜) 114
 이마무라 다케시(今村武志) 185, 187
 이만규(李晚奎) 538, 543
 이매용(李旣鎔) 57
 이명구(李明九) 57, 136
 이명구(李明求) 234
 이묘조(李墓燥) 614
 이민승(李敏承) 94, 112
 이범익(李範益) 614
 이범진(李範晉) 125
 이병규(李秉規) 102
 이병길(李丙吉) 153, 188, 197, 201, 202, 203, 204, 205, 484
 이병량(李秉兩) 101
 이병렬(李炳烈) 544, 550, 551, 552, 553, 562
 이병로(李秉路) 127
 이병무(李秉武) 61, 80, 101, 102, 153
 이병옥(李丙玉) 155
 이병은(李秉殷) 138
 이병학(李柄學) 546
 이봉로(李鳳魯) 536
 이봉의(李鳳儀) 62, 130, 155
 이손희(李孫曦) 57
 이승구(李升九) 96, 146, 504

- 이승우(李升雨) 316, 350, 614
 이승옹(李昇應) 57, 64
 이시민(李時敏) 103
 이시쓰카 에이조(石塚英藏) 85
 이시영(李始榮) 536
 이신옹(李慎應) 97
 이씨종약소(李氏宗約所) 135
 이연옹(李沇應) 55, 135
 이영주(李永柱) 153, 188, 197
 이완용(李完用) 60, 72, 145, 153, 533, 539
 이완용(李完鎔) 56, 60, 82, 154, 188, 197
 이완종(宮村完一) 154
 이완종(李完鍾) 61, 127, 189, 198
 이왕직 87, 100, 112, 129, 145, 154
 이용구 79, 190
 이용복(李容復) 59, 69
 이용식(李容植) 60, 191
 이용원(李容元) 62, 138, 155
 이용익(李容翊) 88, 95
 이용직(李容植) 88, 90, 156, 534
 이용태(李容泰) 61, 127, 155
 이우(李鐸) 163
 이원용(李源鎔) 537
 이원호(李原鎬) 62, 139, 189, 197
 이유현(李裕憲) 144
 이윤용(李允用) 57, 62, 72, 87, 136, 155, 177, 178, 189, 197, 540
 이율곡 294
 이은우(李恩雨) 354, 614
 이익화(西原翊華) 508
 이인용(李寅鎔) 155, 190, 198
 이장훈(李長薰) 61, 113, 155, 190, 198
 이재각(李載覺) 57, 60, 81, 153, 177, 178, 188, 196
 이재경(李載競) 74
 이재곤(李載崑) 61, 64, 88, 97, 98, 100, 108, 153, 178, 188, 197, 534
 이재극(李載克) 55, 62, 129, 135, 155, 176
 이재궁(李載兢) 57
 이재덕(李載德) 82
 이재면(李載冕) 57
 이재선(李載先) 57
 이재순(李載純) 57, 67, 68
 이재완(李載完) 57, 60, 62, 63, 76, 81, 97, 98, 102, 111, 112, 153
 이재원(李載元) 56, 77, 83
 이재정(李在正) 535
 이재현 65
 이재황(李載晃) 57
 이정로(李正魯) 62, 137, 155
 이정옹(李鍾應) 57
 이조연(李祖淵) 59
 이종진(李鍾健) 61, 130, 155, 189, 198
 이종덕(江本鍾惠) 498
 이종섭(李鍾燮) 335
 이종승(李鍾承) 154
 이종원(李鐘遠) 130
 이주영(李胄榮) 62, 144, 155
 이준공(李浚公) 89, 110, 177
 이준상(李濬相) 535
 이준용(李浚鎔) 57
 이중환(李重桓) 61, 128, 155, 190, 198
 이지옹(李址鎔) 57, 60, 74, 75, 84, 99, 118, 127, 129, 153, 534, 540
 이지치 고스케(伊知地幸介) 75, 95
 이진호(李軫鎬) 276, 288, 542, 614

- 이창수(李彰洙) 155
 이창웅(李昌應) 56
 이창훈(李昌薰) 61, 96, 153, 166, 189, 197, 202
 이최옹(李最應) 57, 74
 이충건(李忠健) 547, 549, 550, 551, 552, 553
 이충세(李忠世) 61, 104, 189, 197
 이택규(李宅珪) 279, 544, 550, 551, 552, 563
 이택주(李宅柱) 154
 이택현(李澤鉉) 548
 이풍한(李豐漢) 155, 204
 이하영(李夏榮) 60, 91, 92, 93, 154, 534, 539
 이하옹(李夏應) 57
 이하전(李夏詮) 55, 66
 이한용(李漢鎔) 67
 이항구(李恒九) 62, 145, 154, 189, 190, 197, 204, 205
 이항복(李恒福) 144
 이항직(李恒植) 538, 543
 이해국(李海菊) 153
 이해승(李海昇) 57, 60, 153, 166, 188, 197
 이해창(李海昌) 55, 60, 66, 67, 99, 153, 188, 197
 이호준(李鎬俊) 72, 136
 이홍묵(李鴻默) 153, 189, 197, 202, 203, 204
 이홍장 86, 138
 이홍재(李弘宰) 155
 이홍재(李興載) 548
 이희덕(李熙惠) 544
 이희두(李熙斗) 102
 이희적(李熙迪) 614
 인창환(印昌桓) 325, 614
 1군 1신사 제도 291
 일덕회(一德會) 294
 일진회 79, 80
 일한가스(瓦斯)전기회사 186
 임낙호(任洛鎬) 97
 임대준(任大準) 96
 임선재(任宣宰) 61, 154, 189, 197
 임선준(任善準) 61, 96, 154, 534
 임오군란 71, 78, 86, 94, 107
- 【☞】
- 자혜의원(慈惠醫院) 296
 장대익(張大翼) 229, 267, 547, 608
 장도(張燾) 545
 장박(張博) 107, 119
 장상철(張相轍) 546
 장석원(張錫元) 614
 장석주(張錫周) 61, 107, 119, 154, 534
 장용관(安本龍官) 449
 장응상(張鷹相) 547, 607
 장인원(張寅源) 61, 120, 154, 189, 198, 544
 장직상(張稷相) 239, 337, 368, 547, 550, 551, 552, 606, 614
 장현근(張閭憲四郎, 하리마 겐지로) 390, 431
 장현식(張憲植) 541, 549, 550, 551, 552, 614
 전석영(全錫泳) 547
 정건유(鄭健裕) 547
 정관조(鄭觀朝) 265
 정교원(鄭喬源) 423, 471
 정낙용(鄭洛鎬) 62, 133, 134
 정난교(鄭蘭教) 333, 445, 544, 614
 정대현(鄭大鉉) 266
 정동식(鄭東植) 537, 542
 정동회(町洞會) 231

- 정두화(鄭斗和) 62, 156, 189, 198
 정묘정변 80
 정미정변(丁未政變) 72
 정병조(鄭丙朝) 538, 543
 정병하(鄭秉夏) 89
 정석모(鄭碩謨) 273
 정석용(鄭錫容) 614
 정순연(鄭淳宴) 607
 정순현(鄭淳賢) 547
 정우회(政友會) 139
 정응설(鄭應嵩) 139
 정인기(鄭寅基) 133
 정인홍(鄭寅興) 536
 정재학(鄭在學) 546
 정주영(鄭周永) 134
 정진홍(鄭鎮弘) 536, 541
 정천모(鄭天謨) 62, 144, 154, 189, 198
 정태균(鄭泰均) 547
 정한조(鄭漢朝) 62, 143, 154
 정호봉(鄭鎬鳳) 548
 제1차 한일협약(을사늑약) 128
 제물포(인천)조약 94
 제일은행권(第一銀行券) 63
 조경호(趙慶鎬) 57, 62, 142, 156, 190
 조남복(趙南復) 57, 140
 조남석(趙南錫) 58
 조남승(趙南升) 57, 140
 조남익(趙南益) 57, 140
 조대호(趙大鎬) 60, 86, 189, 197
 조동면(趙東冕) 58
 조동윤(趙東潤) 58, 61, 70, 82, 86, 96, 121, 155, 161, 176, 178
 조동희(趙同熙) 61, 117, 155, 189, 198
 조만영(趙萬永) 58
 조명구(趙命九) 58
 조민희(趙民熙) 61, 100, 154, 188, 197, 534, 540
 조병건(趙秉健) 536, 542
 조병구(趙秉龜) 58
 조병기(趙秉夔) 58
 조병상(夏山茂) 426, 477
 조병세(趙秉世) 88, 100, 104
 조병하(趙秉夏) 124
 조상옥(古山尙鉅) 507
 조선귀족단(朝鮮貴族團) 176, 178
 조선귀족령 67, 93, 96, 143, 147, 149, 150, 151, 155, 156
 조선귀족회 153, 154, 155, 159, 160, 161, 162, 164, 165, 169, 172, 173, 174, 178
 조선보국회 411
 조선봉공회 411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 70, 90, 617
 조선상업은행(朝鮮商業銀行) 187
 조선순국회 411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產銀行) 174, 187
 조선신궁(朝鮮神宮) 263, 277
 조선신사명감 85, 144
 조선신탁주식회사 171
 조선우정국(朝鮮郵政局) 71
 조선은행(朝鮮銀行) 187
 조선의회(朝鮮議會) 529
 조선인명사서(朝鮮人名辭書) 617
 조선임업조합 176
 조선지방대우직원령(朝鮮地方待遇職員令) 290
 조선톤별대(朝鮮特別隊) 237

조선학교비령(朝鮮學校費令) 576
조선합동탄광주식회사 173, 174
조성근(趙性根) 91, 115, 307, 614
조성하(趙成夏) 58
조영하(趙寧夏) 58, 59, 70, 86, 121
조영희(趙英熙) 535, 540
조완희(趙完熙) 84
조용호(趙龍鎬) 154
조원성(趙源誠) 538
조원홍(趙源興) 154
조인승(曹寅承) 139
조재영(趙在榮) 538
조정구(趙鼎九) 57, 62, 140, 156, 191
조제환(趙齊桓) 537
조존혁(趙存赫) 113
조중구(趙重九) 58, 61, 121, 155, 190, 198
조중응(趙重應) 60, 84, 118, 143, 154, 161,
176, 534
조중현(趙重獻) 155
조진태(趙鎮泰) 161, 542
조한국(趙漢國) 57, 135
조희문(趙羲聞) 119, 218, 319, 536, 540, 549,
550, 551, 552, 553, 614
조희연(趙羲淵) 61, 74, 85, 113, 114, 156, 190,
534
종로기독교청년회 131
좌복위(佐復尉) 86
주영환(本城秀通) 453
중추원 70, 72, 74, 80, 88, 90, 93, 129, 132,
134, 153, 513, 525, 527, 530, 553, 556, 558,
600, 611, 612, 613
지방비법(地方費法) 568
진희규(秦喜葵) 546, 606

정병령 364, 502
【★】
차남진(德山南鎮) 500
창복회(昌福會) 153, 154, 185, 186, 187, 188,
191, 193, 195, 198, 199, 200
천장육(千章郁) 544
청일전쟁 71, 79, 83, 89, 90, 92, 94, 107, 113,
123, 131, 138, 143
최남선(崔南善) 295, 614
최린(崔麟) 254, 281, 317, 614
최상돈(崔相敦) 536
최석민(崔錫敏) 61, 122, 155
최석하(崔錫夏) 547
최양호(崔養浩) 284
최연국(崔演國) 232
최윤주(崔允周) 236
최익현(崔益鉉) 139
최재엽(高山在燁) 481
최정원(崔正源) 61, 155, 190, 198, 202
최준집(崔準集) 356, 394, 463, 614
최지환(崔志煥) 309, 351, 614
최형직(佳山定義) 502
추밀원(樞密院) 529, 612

【☞】
택지건물가격통제령 453
【▣】
평화협회(平和協會) 126
피성호(皮性鎬) 548

【ㅎ】

하기하라(萩原) 95, 112
 하야시 시게조(林繁藏) 187
 하준석(河本駿錫) 435
 학교조합령(學校組合令) 570
 한규복(韓圭復) 244, 263, 305, 344, 466, 487, 614
 한규설(韓圭商) 61, 84, 94, 123, 124, 156, 190
 한규직(韓圭稷) 59, 94, 123, 132
 한동리(韓東履) 538
 한미(韓米)전기회사 186
 한사빈(韓士斌) 228
 한상룡(韓相龍) 235, 542, 614
 한상봉(韓相鳳) 545
 한상억(韓相億) 155, 201, 202, 203, 204
 한성위생회(漢城衛生會) 569, 572
 한성은행(漢城銀行) 63, 168, 187
 한영원(韓永源) 544
 한일은행 108
 한일의정서 63, 75
 한장석(韓章錫) 111
 한진창(韓鎮昌) 542
 한창동(韓昌東) 545
 한창수(韓昌洙) 61, 111, 155, 161, 175, 177, 178, 179, 184, 186, 187, 189, 197, 535
 해동은행(海東銀行) 100
 허명훈(許命勳) 548
 허진(許璡) 536
 현곡전(獻穀田) 291
 현기봉(玄基奉) 605
 현운(玄槩) 543
 현준호(玄俊鎬) 415, 546, 549, 550, 551, 553, 566, 605, 614

현현(玄檮) 245, 339, 614
 홍성연(洪聖淵) 548
 홍순형(洪淳馨) 58, 61, 110, 156, 190
 홍승목(洪承穆) 535
 홍영식(洪英植) 71
 홍옥경 74
 홍우석(洪祐皙) 538
 홍운표(洪運杓) 537
 홍재룡(洪在龍) 58
 홍재하(洪在夏) 538
 홍종국(德山善彥) 490
 홍종석(洪鍾奭) 58
 홍종억(洪鍾億) 536
 홍종철(洪鍾轍) 546, 604
 홍치업(南陽致業) 376, 458
 화신무역주식회사 171
 화족령 152
 황민연성도장(皇民鍊成道場) 504
 황종국(黃鍾國) 292, 326, 614
 회령영림창(會寧營林廠) 173
 회령조선합동탄광주식회사 172
 후레자곤바니이노페이 124
 후지나미 요시츠라(藤波義貫) 185, 187
 후지이 히사코(藤井久子) 384
 휘문의숙(徽文義塾) 108
 흥사단(興士團) 126